

기획예산처

회계연도	예산	결산	추경
2026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일반회계·복권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2026. 1.

기
획
예
산
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일반회계
·
보통기금
·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2026. 1

기획예산처

I. 일반회계	1
1. 세 출	3
<경제정책>	5
(1)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1132-401)	7
<정책조정>	13
(1)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1331-302)	15
<재정운용>	19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 (2441-300)	21
(2) 국제 재정협력 강화 (2444-301)	26
(3)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31
(4)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2446-401)	36
(5)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2447-241)	43
<재정관리>	51
(1) 재정집행관리 (2643-300)	53
(2) 재정사업평가 (2644-300)	59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2645-300)	66
(4)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2646-301)	73
(5)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2646-402)	79
<재정기획>	87
(1)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89
(2) 재정교육 (2712-303)	99
(3)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2712-304)	104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2713 - 500)	110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2713-501).....	116
(6)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2713-504).....	122
(7) 재정정보분석 (2713-506).....	126
<예비비>	131
(1) 예비비 (3069-300).....	133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135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4110-880).....	137
<기획재정 행정지원>	143
(1) 인건비(기획예산처) (신규) (7101-103).....	145
(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예산실) (7111-216).....	147
(3)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미래전략국) (7111-220).....	149
(4)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재정혁신국) (7111-222).....	151
(5)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7111-227).....	153
(6)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 기획예산처) (신규) (7111-230).....	155
(7)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신규) (7111-232).....	157
(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 (신규) (7111-234).....	159
(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 (신규) (7111-236).....	161
(10)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 (7111-266).....	163
(11)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미래전략국) (7111-270).....	165
(12)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재정혁신국) (7111-272).....	167
(13)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7111-277).....	169
(14)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 기획예산처) (신규) (7111-279).....	171
(15)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신규) (7111-282).....	173
(16)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 (신규) (7111-284).....	175
(17)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 (신규) (7111-286).....	177
(18) 기획예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신규) (7131-303).....	179
(19) 기획예산 해외네트워크 구축 (신규) (7132-305).....	183
(20) 기획예산(정보화) (신규) (7134-504).....	187
(21)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신규) (7134-506).....	195

(22) 정책품질관리(기획예산처) (신규) (7135-312)	201
(23) 정책연구개발(기획예산처) (신규) (7135-314)	206
(24) 정책홍보사업(기획예산처) (신규) (7135-316)	210

<내부거래> 215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 (8010-801)	217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교통·에너지·환경세분) (8010-802) ...	222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8010-803)	227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전출 (8010-804)	232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전출 (8010-805)	237

II. 복권기금 243

(1) 지방자치단체지원 (5331-302)	245
(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5332-303)	249
(3) 기금관리비 (3578-201)	254
(4) 복권사업비 (5243-301)	258
(5)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5247-300)	262
(6)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8910-890)	266
(7)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8911-891)	270
(8)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8912-892)	275
(9) 주택도시기금 전출 (8913-893)	279
(1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8914-894)	284
(11)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전출 (8916-896)	288
(12) 보훈기금(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계정) 전출 (8916-897)	293
(13) 양성평등기금 전출 (8917-897)	298
(14)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8918-898)	302
(15)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8919-899)	306
(16)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8920-890)	310
(17) 응급의료기금 전출 (8923-891)	315
(18) 기후대응기금 전출 (8924-889)	319

(19) 영화발전기금 전출 (8925-841)	325
(20)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9021-891)	329
(21) 한국은행예치 (9704-970)	332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4-972)	335
(23)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9705-974)	339
(24)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9801-980)	343
(25)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6333-330)	348
(26)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6341-312)	353
(27)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6346-328)	361
(28)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6352-334)	367
(29) 재난적의료비 지원 (6362-344)	372
(30) 입양아동 가족지원 (6364-346)	378
(3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365-347)	384
(32)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6372-352)	389
(33)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6374-354)	396
(3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6440-311)	404
(3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6541-312)	410
(3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6642-313)	419

Ⅲ.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27

(1) 구상권관리비 (2032-301)	429
(2) 인프라보증대위변제 (2032-680)	433
(3)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 (2032-303)	437
(4) 맞춤형컨설팅 (2032-304)	441
(5) BTL 특별인프라펀드 (2032-461)	445
(6) 인건비 (2176-101)	449
(7) 기본경비 (2176-201)	452
(8) 선급법인세 (2176-202)	456
(9) 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460
(1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2)	464

I . 일 반 회 계

1. 세 출

경 제 정 책

사 업 명
(1)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1132-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401
명칭	경제정책	중장기경제전략 기획사업	중장기경제전략 기획사업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소관부처	성장기획정책관 미래전략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869	920	920	782	3,382	2,462	267.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 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이월액	제외 집행 액			
									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20	920	869	-	51	920	920	789	920	789	67	64	3,382
· 중장기경제전략 수립	330	330	328	-	2	330	330	258	330	258	67	5	1,230
· 중장기 화석연료 운영 및 중장기 전략국제협력 강화	410	380	349	-	31	410	410	383	410	383	-	27	812
·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90	90	84	-	6	90	90	88	90	88	-	2	190
· 미래비전 수립	-	-	-	-	-	-	-	-	-	-	-	-	1,000
· 기타정책연구	90	120	107	-	13	90	90	60	90	60	-	30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 대내외 여건과 위험요인을 점검·분석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기반 마련
- (중장기위 운영 및 간담회 개최) 미래전략포럼, 컨퍼런스운영 등을 통해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 및 작업반 운영을 통해 중장기전략 마련 지원
-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미래사회 관심 제고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미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미래비전 수립) 작업반 구성 및 용역 등을 통한 미래비전 수립
- (중장기전략 국제협력 강화) 한국의 중장기 국가비전정책과 추진 전략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해외 정부·국제기구등과 협업
- (기타정책연구) 탄소크레딧 시장구축 및 활성화 연구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3조(기획예산처)**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3항 제1호~제5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업무 총괄·조정,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협의·조정,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조정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조**: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1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2. 1. 장기전략국 신설
- '12. 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정
- '12. 4. 제1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
- '12. 5.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 '14. 11.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
- '15. 12.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보고서」 발간
- '16. 8.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
- '17. 3. 「중장기전략 주요과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발표
- '18. 1.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
- '21. 6.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 '23. 7.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 '25. 10.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재정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 : ('25) 330 → ('26) 1,230백만원
 - (요구) 최근 AI 기술성장, 마·중 공급망 재편 및 초고령사회 변화 등 중장기적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수행 필요
- ② 중장기 회의체 운영 및 중장기전략 국제협력 강화: ('25) 410 → ('26) 812백만원
 - (요구) 미래전략컨퍼런스·미래전략포럼 등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및 대국민 의견수렴, 논의의 場 마련 등 추진
 - *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년 ~)
- ③ 미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5) 90 → ('26) 190백만원
 - (요구)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신한 미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전년수준의 예산 요구
- ④ 미래비전 수립: ('25) - → ('26) 1,000백만원
 - (요구)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작업반 구성 및 용역 예산 요구
- ⑤ 기타정책연구 : ('25) 90 → ('26) 150백만원
 - (요구) 탄소크레딧 시장구축 및 활성화 등 기초 연구 추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미래전략포럼, 미래전략컨퍼런스,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개최 추진
2023	▸ 미래전략포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국제컨퍼런스,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등 개최 추진
2024	▸ 미래전략포럼·컨퍼런스, 미래세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개최 추진
2025	▸ 미래전략포럼·컨퍼런스, 미래세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개최 추진 중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및 미래대응 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중장기경제전략·미래비전 작업반 운영: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 사업 위탁 계약 체결 → 위원회 구성 → 작업반 논의·연구 → 정책보고서 발간
- 미래한국아이디어 공모전 :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 공모전 사전준비 → 공모전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결과 발표
- 정책연구용역 : 과제 선정 → 연구자 선정(소위원회 심의) → 계약 체결 → 연구 및 보고서 작성 → 검수 → 대금 지급 → 결과물 등록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5 기재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정확성 제고 : 예산 전용·조정 증액 후 불용 발생 (제도개선)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5 기재위) 예산 조정 사유 발생 시 예산 조정액을 면밀히 산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13	-	913	-	-	-	913	822	90.0	90.0	33	58
2023	1,085	-	1,085	33	-	-	1,118	1,032	95.1	92.3	-	86
2024	920	-	920	-	-	-	920	869	94.5	94.5	-	51
2025	920	-	920	-	-	-	920	789	85.8	85.8	67	6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25 기재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정확성 제고 : 예산 전용·조정 증액 후 불용 발생 (제도개선)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2.5.)	중장기경제전략 기획사업 (1132-401)	210-01	55	중장기경제전략 기획사업 (1132-401)	210-14	미래전략 포럼·컨퍼런스
조정 (2025.2.5.)	중장기경제전략 기획사업 (1132-401)	210-07	10	중장기경제전략 기획사업 (1132-401)	210-14	미래전략 포럼·컨퍼런스

정 책 조 정

사 업 명						
(1)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13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 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2
명칭	정책조정	경제정책조정지원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협동조합	소관부처	통합성장정책관 상생협력전략과
활성화사업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본예산(B)	(B-A)	(B-A)/A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1,584	1,580	1,580	3,130	2,930	1,350	85.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80	1,655	1,584	-	71	1,580	1,580	1,489	5	86	2,930
·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	1,100	1,100	1,100	-	-	1,100	1,100	1,100	-	-	2,450
· 협동조합시스템 운영	253	328	269	-	59	203	203	127	-	76	203
· 기타사업비	227	227	215	-	12	277	277	262	5	10	2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 및 건전한 생태계 육성을 통한 협동조합의 자주적 활동 촉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 사업(「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 * 전문상시자문 등 설립·운영 지원, 시장진입 등 판로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지원 등
 - (협동조합시스템 운영) 협동조합 신고·수리 등 효율적 업무 처리 및 관련 통계 생산·관리 등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기타사업비) 협동조합의 날 행사 개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연구 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협동조합기본법 제1조(목적),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의2(경영지원), 제10조의3(교육훈련지원), 제116조 제3항(출연금거)
- ② 추진경위
 - ('11.10월, 기재위) 민주당 손학규 의원 발의(의원 74명)로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
 - ('12.1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공포(법률 제11211호)
 - ('12.3월) 협동조합법 준비기획단 신설
 - ('12.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계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출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시행주체 :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협동조합 종사자 및 창업희망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구분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 (2025) 1,580백만원 → (2026) 2,930백만원

- 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5) 1,100백만원 → (2026) 2,450백만원
 -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사업 내실화 소요
- ②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2025) 203백만원 → (2026) 203백만원
 -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운영 및 사용자 지원, 기능개선 등
- ③ 기타사업비 : (2025) 277백만원 → (2026) 277백만원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협동조합의 날 행사 개최, 협동조합 정책연구 소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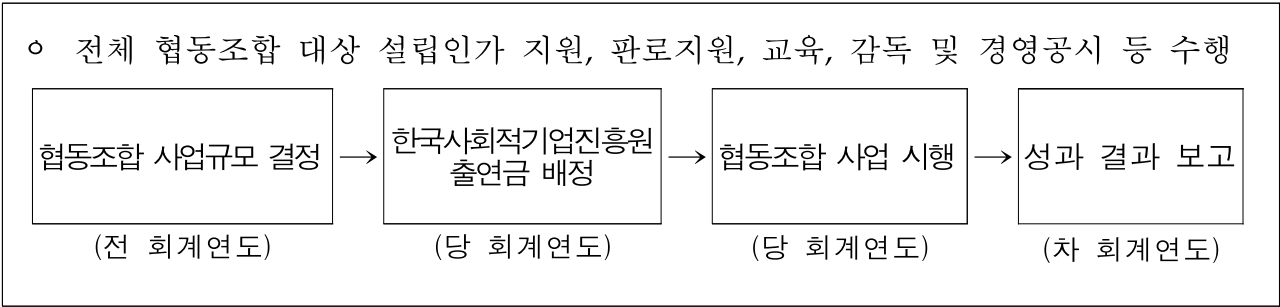
4)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2년말 기준 총 22,226개 협동조합 설립.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추진
2023	'23년말 기준 총 24,246개 협동조합 설립.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2024	'24년말 기준 총 26,180개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추진체계 개편 등
2025	'25년말 기준 총 28,093개 협동조합 설립.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

-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질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협동조합의 내실화 도모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대

5) 사업 집행절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364	△5	7,359	7,359	7,208	98.0	98.0	-
2023	7,508	-	7,508	7,508	7,201	96.0	96.0	75
2024	1,580	-	1,580	1,655	1,584	100.3	95.7	-
2025	1,580	-	1,580	1,580	1,489	94.2	94.2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40백만원(정책연구비→일반수용비): 우수 협동조합 등 사례집 제작을 위한 자체전용 - 불용 151백만원: 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이월 75백만원(관리용역비): 협동조합시스템 재구축 과업 일부 연장에 따른 이월 - 불용 232백만원: 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 70백만원: 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세목변경 50백만원(일반연구비→정책연구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기초연구 수행 - 불용 86백만원: 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재 정 운 용

사 업 명
(3)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5	401
명칭	재정운용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소관부처	예산실 예산소통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211	3,732	3,732	3,162	3,412	△320	△8.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32	2,827	2,211	45	571	3,732	3,777	3,388	-	389	3,412
· 예산홍보 등	607	622	401	-	221	1,607	1,607	1,417	-	190	1,107
· 협의기반구축	1,312	1,312	1,215	-	97	1,312	1,312	1,210	-	102	1,362
· 분야별 예산편성지원	813	893	595	45	253	813	858	761	-	97	9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각 분야 재정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산 편성 도모
- 적극적인 예산 홍보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 관련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협의 기반 확대 노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10조 (재정운용에 관한 의견수렴) 제1항
 -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7.1.1. : 국가재정법 제정 시행(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통합)
- '08.12.31. : 국가재정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09.3.25) 기금정책심의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능·목적이 변경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51	3,061	2,732	3,732	3,4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예산홍보 등 : 1,107백만원

- 광고송출비 170백만원, 홍보물제작비 175백만원, 예산홍보 등 용역비 829백만원

② 협의기반구축 : 1,362백만원

-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402백만원, 예산협의 지원 등 374백만원
지방재정협의회 운영 등 185백만원, 임차료 등 401백만원

③ 분야별 예산편성지원 : 943백만원

- 국내·외 재정 사례조사 등 594백만원, 예산편성관련 연구용역 130백만원(정책연구비), 예산편성 관련 물품구입(자산취득비) 20백만원, 편성 지원 공무원 채용 비용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對부처, 지자체, 국민과의 협의 및 소통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68	71	74	전년 목표('25년 회의 및 간담회 개최 건수, 71건)에서 4% 상승한 도전적인 목표치(74건) 설정	재정정책자문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협의·소통 건수	회의 및 간담회 등 개최 횟수
	실적	60	65	68	-	-			
	달성도	신규	신규	100.0	-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회계연도별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예산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 등에 반영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예산 불용 발생 방지 노력 필요 ('22결산 기재위)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 제고 필요('25결산 기재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290	△139	3,151	3,159	2,383	75.4	135	640
2023	3,061	-	3,061	3,196	2,746	85.9	95	355
2024	2,732	-	2,732	2,827	2,211	78.2	45	571
2025	3,732	-	3,732	3,777	3,388	89.7	-	38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사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
2023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로 정책연구비 이월
2024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로 정책연구비 이월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2.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10-01	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60-02	기획예산처 출범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추가 소요 비용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11.)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20-02	143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20-01	추경 편성에 따른 국회 대응 소요 국내 여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18.)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10-01	2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10-07	추경 편성에 따른 국회 대응 소요 임차료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2) 국제 재정협력 강화 (244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4	301
명칭	재정운용	국제 재정협력 강화	국제 재정협력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 재정협력 강화	소관부처	예산실 예산소통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국제 재정협력 강화	262	329	329	329	329	-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0	720	262	-	459	329	329	213	-	116	329
· 국제재정포럼 개최	200	200	178	-	22	200	200	182	-	18	200
· 주요국 재정당국과 교류협력	129	129	84	-	46	129	129	32	-	97	129
· 국제재정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분담금	391	391	-	-	391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적인 재정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해외 재정당국과 신속·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변국과 선진국의 재정 관련 대응경험과 Know-How에 대한 정보교류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13항
- 예산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제기구 등과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

② 추진경위

- '07.4. : 인도네시아 재무부,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와 지식협력에 관한 MOU 체결

- '07.8. : 한·일 재정당국간 국장급 회의 개최 및 양자협력에 관한 MOU 체결
- '07.12. : 필리핀 예산관리부와 지식협력에 관한 MOU 체결, 주요 국제기구와의 재정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 '08.4. : 개도국 공무원 재정연수
- '08.6. : OECD 고위예산당국자(SBO)회의 참석, G-20 주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워크숍 참석
- '09.7.1.~7.2. : 제1차 국제재정포럼 개최(격년 단위로 개최)
- '16.9.19.~9.20. : 제5차 국제재정포럼 개최(이후 매년 개최로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4	689	720	329	3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1) 국제재정포럼개최 : (2025) 200 → (2026) 200백만원
 - OECD와 글로벌 재정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행사로 연례적 집행액 수준
- (2) 주요국 재정당국과 교류협력 : (2025) 129 → (2026) 12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제10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 일시 : 9.29.~9.30. - 주제 : 코로나 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2023	○ 제11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 일시: 9.26~9.27
2024	○ 제46회 OECD SBO 연차 총회 참석 - 일시: 6.3~6.4 ○ 제12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 일시: 9.25~9.26
2025	○ 제47회 OECD SBO 연차 총회 참석 - 일시: 6.2~6.8 ○ 제13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예정 - 일시: 9.26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주요국 재정당국·국제기구와 재정 관련 이슈 상호 공유 ⇒ 실무의견 교환 ⇒ 재정 관련 공통 관심사항 도출 ⇒ 재정당국간 회의(방문)를 통한 정보 교류 ⇒ 재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공유 ⇒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재정협력 강화)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협력사업의 성과 및 조기종료 사유 등에 대한 정보 제출 필요 ('25결산 기재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89	△25	664	679	650	95.7	-	29
2023	689	-	689	689	668	97.0	-	21
2024	720	-	720	720	262	36.4	-	458
2025	329	-	329	329	213	64.7	-	1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사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
2023	- 전용 사유: 편성 대비 집행시 환율 상승으로 국제부담금 부족분 충당
2024	- 불용 사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협력사업 조기종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5	401
명칭	재정운용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소관부처	예산실 예산소통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211	3,732	3,732	3,162	3,412	△320	△8.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32	2,827	2,211	45	571	3,732	3,777	3,388	-	389	3,412
· 예산홍보 등	607	622	401	-	221	1,607	1,607	1,417	-	190	1,107
· 협의기반구축	1,312	1,312	1,215	-	97	1,312	1,312	1,210	-	102	1,362
· 분야별 예산편성지원	813	893	595	45	253	813	858	761	-	97	9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각 분야 재정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산 편성 도모
- 적극적인 예산 홍보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 관련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협의 기반 확대 노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10조 (재정운용에 관한 의견수렴) 제1항
 -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7.1.1. : 국가재정법 제정 시행(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통합)
- '08.12.31. : 국가재정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09.3.25) 기금정책심의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능·목적이 변경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51	3,061	2,732	3,732	3,4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예산홍보 등 : 1,107백만원

- 광고송출비 170백만원, 홍보물제작비 175백만원, 예산홍보 등 용역비 829백만원

② 협의기반구축 : 1,362백만원

-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402백만원, 예산협의 지원 등 374백만원
지방재정협의회 운영 등 185백만원, 임차료 등 401백만원

③ 분야별 예산편성지원 : 943백만원

- 국내·외 재정 사례조사 등 594백만원, 예산편성관련 연구용역 130백만원(정책연구비), 예산편성 관련 물품구입(자산취득비) 20백만원, 편성 지원 공무원 채용 비용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對부처, 지자체, 국민과의 협의 및 소통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68	71	74	전년 목표('25년 회의 및 간담회 개최 건수, 71건)에서 4% 상승한 도전적인 목표치(74건) 설정	재정정책자문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협의·소통 건수	회의 및 간담회 등 개최 횟수
	실적	60	65	68	-	-			
	달성도	신규	신규	100.0	-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회계연도별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예산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 등에 반영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예산 불용 발생 방지 노력 필요 ('22결산 기재위)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 제고 필요('25결산 기재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290	△139	3,151	3,159	2,383	75.4	135	640
2023	3,061	-	3,061	3,196	2,746	85.9	95	355
2024	2,732	-	2,732	2,827	2,211	78.2	45	571
2025	3,732	-	3,732	3,777	3,388	89.7	-	38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사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
2023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로 정책연구비 이월
2024	- 이월 사유: 계약기간 미도래로 정책연구비 이월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2.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10-01	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60-02	기획예산처 출범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추가 수요 비용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11.)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20-02	143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20-01	추경 편성에 따른 국회 대응 소요 국내 여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18.)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10-01	2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210-07	추경 편성에 따른 국회 대응 소요 임차료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4)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2446-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6	401
명칭	재정운용	연구개발예산편성 전략성 강화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연구개발예산 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소관부처	예산실
		과학기술혁신예산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618	750	750	1,200	620	△130	△17.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8	618	618	-	-	750	750	750	-	-	620
·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618	618	618	-	-	750	750	750	-	-	6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R&D 예산의 전략적 편성 및 관련 제도개선 지원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재정건전성 강화
 - 3대 게임체인저 등 선도 기술 분야의 시장선점 및 혁신도전형 연구수행 확대 등 선도형 R&D 추진에 부합하는 정부 R&D 예산편성에 관한 선제적 이슈 발굴·분석
 - 부처별 사업 예산 검토 및 유사·중복 사업 분석, 정책 이슈별 R&D예산 세미나 등을 통한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
 - (중기예산 심의지원)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총량규모 설정(연부액 검토 등),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지출한도 설정 지원, 중점 투자분야 정부지원 필요성 및 성과 분석 등

- (예산편성 심의지원) 부처별 사업 예산 및 전문위 사전기획 R&D사업 결과 검토, 유사 및 중복 사업 분석 등을 통한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 중점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 (예산 심의 관련 제도 개선) 25년도 예산편성 과정 내 제도개선 이슈 발굴 및 분석, 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진된 제도개선 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보완 과제 도출
- (대형 R&D사업 효율적 관리) 정부 R&D사업 연혁, 사업비 등 통계분석 자료 발간 및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개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권한에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의 편성) 기획예산처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정부안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출연)근거,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4항2호.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제4항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00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 실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 '05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 R&D예산에 대한 조정배분을 실시(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및 기획예산처에서 R&D예산 편성
- '08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 R&D예산에 대한 배분방향 설정(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기획예산처에서 R&D예산 편성
* '08.3월 과기부(과기혁신본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업무이관
- '11년 :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에 따라 세부사업 검토와 중기재정 총량, 차년도 지출한도 설정권한이 분리됨

- '13년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요R&D 예산배분·조정(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및 기획예산처 R&D예산 편성
 - * '13.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이관
- '18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주요R&D사업, 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예산 배분·조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 및 기획예산처 R&D예산 편성
 -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통합
- '21년 : '연구개발 예산 편성지원(R&D)'에서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로 사업명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0	618	618	750	62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20	100	- 국가재정법 제 32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 2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25) 750 → ('26) 620백만원, △17.3%
- (요구) 예산편성·심의지원 과정 내 지원 개월수 축소 등 효율화 노력을 통해 130백만원 감액
 - (산출) 1개 과제 × 620백만원 × 출연금 100% × 12/12개월(단년도)

- ① 중기예산 심의지원: ('25년) 125백만원 → ('26요구) 125백만원, (전년동)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총량규모 설정(연부액 검토 등),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지출한도 설정 지원, 중점 투자분야 정부지원 필요성 및 성과 분석 등
- ② 예산편성·심의지원: ('25년) 325백만원 → ('26요구) 195백만원, (△40%)
⇒ 부처별 사업 예산 및 전문위 사전기획 R&D사업 결과 검토, 유사 및 중복 사업 분석 등을 통한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 중점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 ③ 예산 심의 관련 제도개선: ('25년) 100백만원 → ('26요구) 100백만원, (전년동)
⇒ 24년도 예산편성 과정 내 제도개선 이슈 발굴 및 분석, 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진된 제도개선 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보완 과제 도출
- ④ 대형R&D사업 효율적 관리: ('25년) 200백만원 → ('26요구) 200백만원, (전년동)
⇒ 정부 R&D사업 연혁, 사업비 등 통계분석 자료 발간 및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개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대내·외 정책 여건 동향 분석, 신정부 국정과제 등 반영한 중점 투자 아젠다 발굴(초격차 전략기술, 미래적 도전 분야 등)
2023	· R&D사업 현황/이력 검토 및 파편화 문제 분석,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발굴, R&D 사업군 분석 및 개편방안 제시, 국회 지적사항 동향 및 분석 등
2024	· 선도형 R&D 대전환 관련 제도개선 및 개선방안 발굴, 제도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인터뷰 수행 및 이슈 도출, 중점 투자 아젠다 발굴 등
2025	·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중점 투자 아젠다 대상 사업 발굴 (AI 및 ABCDEF 등), End-Product 명확화 및 혁신도전적 R&D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이슈 도출 등 지속 추진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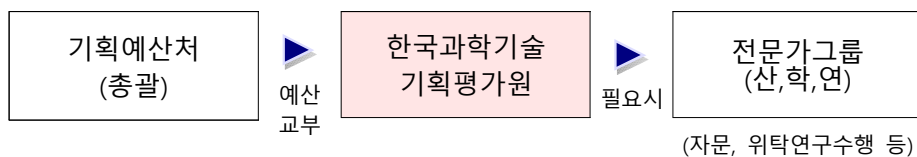
-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전략 도출
 - 3대 게임체인저 등 미래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및 중장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평가-예산 환류 체계 강화
 - 전문위 사전기획 검토결과, 신규 프로그램형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 투자 대비 효과성 제고 및 예산편성·집행·관리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R&D분야 이슈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실무자-전문가 협업 네트워크의 구축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슈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특정분야의 심층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시 전문가 그룹의 검토 및 자문 실시
 - R&D분야 이슈별 워킹그룹에서 다룰 이슈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이슈 특성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 또는 위탁연구 추진



- KISTEP 연구진은 사업별 분석자료·검토의견 제공, 워킹그룹 운영에 필요한 실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자문단·워킹그룹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50	-	-	650	650	100	-	-
2023	618	-	-	618	618	100	-	-
2024	618	-	-	618	618	100	-	-
2025	750	-	-	750	75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2022	- 정부 R&D 투자 방향 도출 등 연구 수행 및 회의비 절감 등으로 2백만원 불용, 반납
2023	- 정부 R&D 투자 방향 도출 등 연구 수행 및 회의비 절감 등으로 1백만원 불용, 반납
2024	- 정부 R&D 투자 방향 도출 등 연구 수행 및 회의비 절감 등으로 0.2백만원 불용, 반납
2025	- 시설비 및 외부인건비 절감 노력 통해 45백만원 불용 및 반납 예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5)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2447-241)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7	241
명칭	재정운용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투자성과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정보화)	863	863	-	960	960	97	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잔고·이월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3 (-)	863	863 [841]	-	-	863	863	863 [831]	863	863 [831]	-	-	960
· 정보화사업 투자방향 및 분석 연구	164 (-)	164	164 [152]	-	-	90	90	90 [87]	90	90 [87]	-	-	187
· ISP 검토 제도 운영	496 (-)	496	496 [496]	-	-	289	289	289 [278]	289	289 [278]	-	-	289
· 정보화 사업 검토 지원	- (-)	-	- [-]	-	-	324	324	324 [312]	324	324 [312]	-	-	324
· 정보화 총사업비 사업 관리 강화	103 (-)	103	103 [103]	-	-	63	63	63 [60]	63	63 [60]	-	-	63
· ISP검토지원시스템 운영	80 (-)	80	80 [70]	-	-	97	97	97 [94]	97	97 [94]	-	-	97
· 제도 운영지원 등	20 (-)	20	20 [20]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정보화전략마스터플랜(ISMP) 내실화와 대규모 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통해 신규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신규 지능 정보화 사업 투자 효율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지침 주요 내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정부안에 앞서 **ISP·ISMP 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예산처에 요청**
- 기획예산처는 ISP 산출물 검토 등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2021.7.)

<지침 주요 내용>

-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구축·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스템 구축 이전에 **ISMP**를 수립해야 하며, **ISMP** 수립이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구축 단계(분석, 설계, 개발 등)에서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되면 각 단계별로 계약체결 이전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비는 구축 완료 시점에 실제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재산정하여 기획예산처 정관과 협의한 후 발주하여야 함

○ 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ISP 검토 누락사업 지적)

<주요 내용>

- 정보화사업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업무재설계(BPR)가 수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국회의 심사단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SP산출물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추진경위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2015.3)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총괄) 검토보고 “19.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 주요 지적 내용 >

- 유사·중복시스템 구축 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 검토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8	813	863	863	9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출연	한국지능 정보사회 진흥원	960	10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보화 사업 투자방향 및 분석 연구 : (2025 본예산) 90백만원 → (2026 정부안) 187백만원, 97백만원 증액 - 정보화 투자관리 수요 조사 및 투자관리 제도 개선 위한 제반 연구 등
② ISP 검토 제도 운영 : (2025 본예산) 289백만원 → (2026 정부안) 289백만원, 전년동 - ISP 수립 타당성 및 산출물 검토, ISP 제도 설명회 등
③ 정보화 사업 검토 지원 : (2025 본예산) 324백만원 → (2026 정부안) 324백만원, 전년동 - 정보화 사업 투자관리 효율화를 위한 범부처 정보화 신규·계속 사업 분석 및 관리 업무 지원
④ 정보화 총사업비사업 관리 강화 : (2025 본예산) 63백만원 → (2026 정부안) 63백만원, 전년동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단계별 총사업비 조정 지원
⑤ ISP검토지원시스템 운영 : (2025 본예산) 97백만원 → (2026 정부안) 97백만원, 전년동 - ISP검토지원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클라우드 이용료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ISP·ISMP 수립 타당성 검토 : 298건 ◦ ISP·ISMP 산출물 검토 : 132건 ◦ 총사업비 검토 및 관리 : 9건
2023	◦ ISP·ISMP 수립 타당성 검토 : 223건 ◦ ISP·ISMP 산출물 검토 : 159건 ◦ 총사업비 검토 및 관리 : 8건
2024	◦ ISP·ISMP 수립 타당성 검토 : 285건 ◦ ISP·ISMP 산출물 검토 : 123건 ◦ 총사업비 검토 및 관리 : 13건
2025	◦ ISP·ISMP 수립 타당성 검토 : 269건 ◦ ISP·ISMP 산출물 검토 : 100건 ◦ 소규모 사업계획 검토 : 59건 ◦ 총사업비 검토 및 관리 : 1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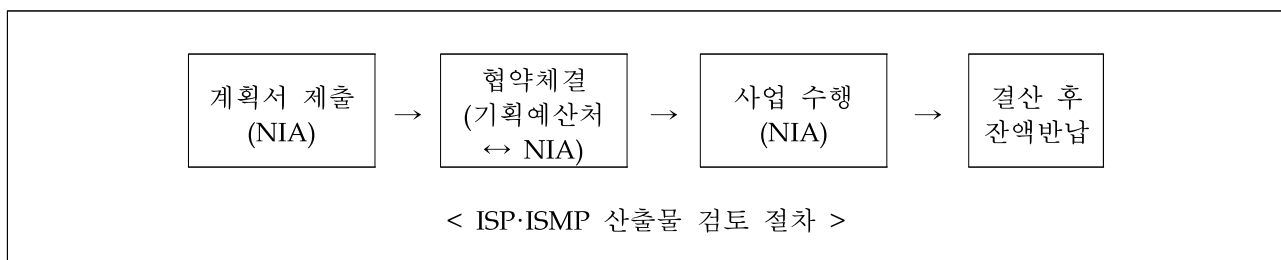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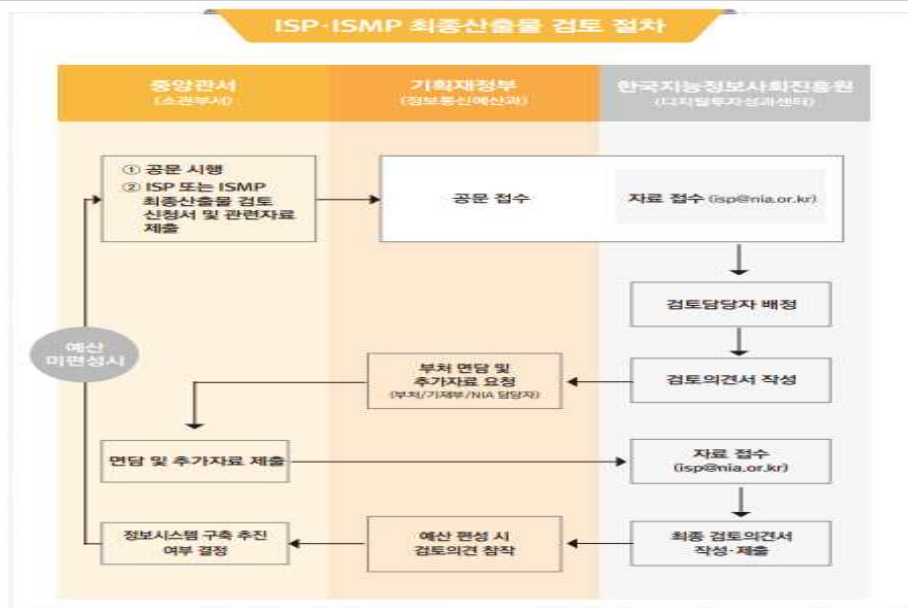
- (ISP 산출물, ISP 수립비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 일반재정, R&D 분야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ISP 수립 및 검토 의무화 확대(정보화 → 일반 및 R&D) 및 '24년부터 국방부·방사청 정보화 사업 대상 증가에 따라 지속적 증가 예상
- (총사업비 관리 강화) 정보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및 전문적인 검토 지원을 통한 투자관리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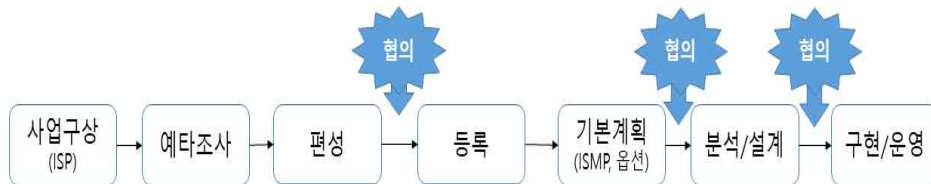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규모 정보화사업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협의·조정 절차>



8) 각종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88	-	788	-	-	-	788	788	100.0	100.0	-	-
2023	813	-	813	-	-	-	813	813	100.0	100.0	-	-
2024	863	-	863	-	-	-	863	863	100.0	100.0	-	-
2025	863	-	863	-	-	-	863	863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788	788	788	788	-	788	753	-	-	95.5
2023	813	813	813	813	-	813	741	-	-	91.2
2024	863	863	863	863	-	863	841	-	-	97.5
2025	863	863	863	863	-	863	831	-	-	96.3

2) 주요 결산사항

-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 해당없음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재 정 관 리

사 업 명						
(1) 재정집행관리 (264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010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43	300
명칭	재정관리	재정집행관리	재정집행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정집행관리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재정집행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재정집행관리	200	240	240	227	335	95	39.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8	278	200 [200]	-	78	240	235	221 [221]	235	221 [221]	8	6	335
·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111	111	72 [72]	-	39	83	83	79 [79]	83	79 [79]	-	4	200
· 집행관리	167	167	128 [128]	-	39	157	152	142 [142]	157	142 [142]	8	2	1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절약, 수입 증대 발굴을 촉진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며, 정부의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집행관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 효율화 체계 구축 및 재정집행 현장점검,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1.7월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재정집행 점검 실시
- '06.1월 (구)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정식 오픈
- '07.1월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재정관리점검단 설치·운영, 예산낭비대응 및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11년 「재정관리점검회의」, '23년 「재정집행점검회의」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8	318	278	240	3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재정집행관리 (2025 추경) 240백만원 → (2026 예산) 335백만원, +95백만원

(1)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 (2025 추경) 83백만원 → (2026 예산) 200백만원, +117백만원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111백만원
- 예산낭비점검단 운영 등 57백만원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12백만원
- 예산낭비신고자 포상금 20백만원

(2) 집행관리 : (2025 추경) 157백만원 → (2026 예산) 135백만원, △22백만원

-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영 등 65백만원
- 재정집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40백만원
- 재정포럼 개최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	목표	77.5	78.2	78.6	78.9	79.3	전년 목표치에 최근 5개년(2020~2024년) 증가율의 평균값(0.49%)을 적용	○ 측정방법 -재정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실적	78.0	78.4	79.1	-	-			
	달성도	100.6	100.2	100.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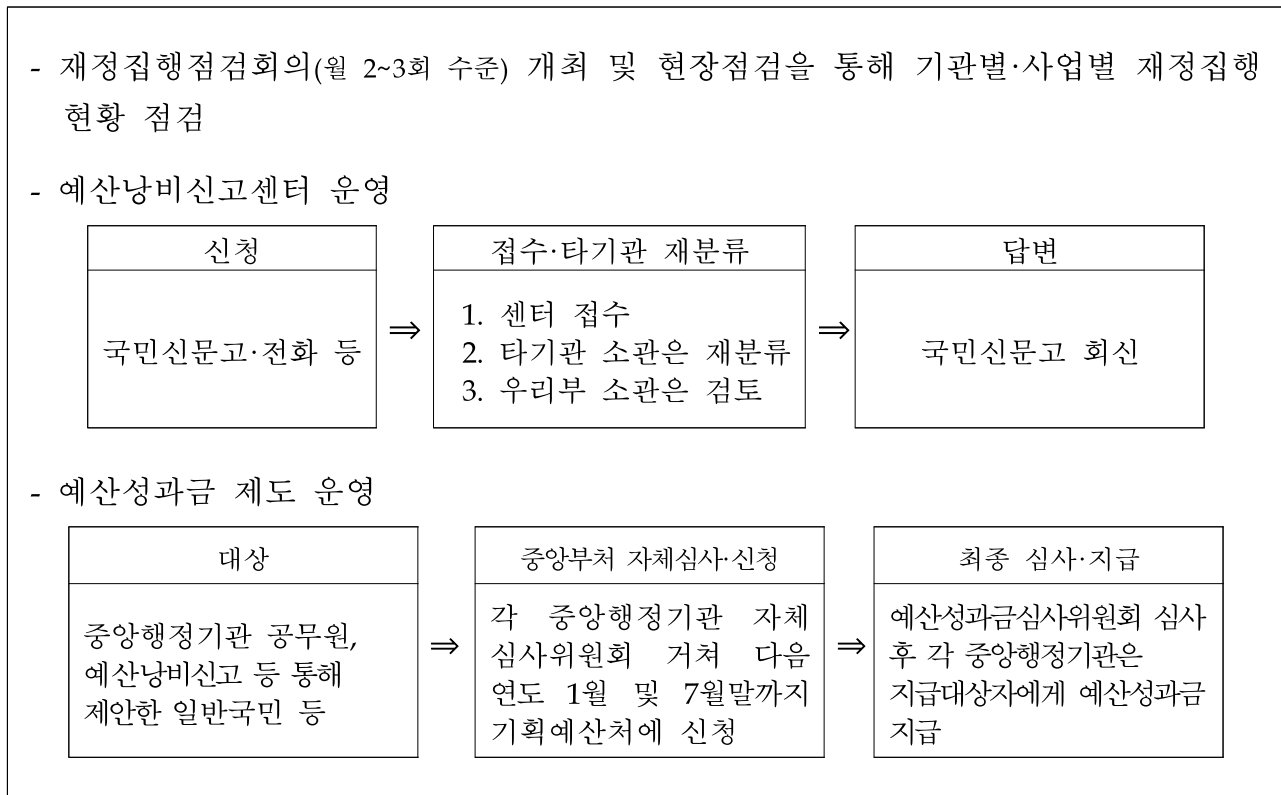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18회) 및 수시 실무 점검회의 등 개최 · 2022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상, 하반기 2회)
2023	· 매월 재정집행점검회의(27회) 및 수시 실무 점검회의 등 개최 · 2023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상, 하반기 2회)
2024	· 매월 재정집행점검회의(30회) 및 수시 실무 점검회의 등 개최 · 2024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상, 하반기 2회) · 2024년도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2025	· 매월 재정집행점검회의(29회) 및 수시 실무 점검회의 등 개최 · 2025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상, 하반기 2회) · 2025년도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정관리점검회의, 실무점검회의 운영 및 재정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성과금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예산낭비 최소화 및 재정건전성에 기여

5) 사업 집행절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8	-	278	-	△50	-	228	176	63.4	77.4	12	40
2023	318	-	318	12	-	-	330	162	50.9	49.1	-	168
2024	278	-	278	-	-	-	278	200	71.9	71.9	-	78
2025	240	-	240	-	△5	-	235	221	92.1	94.0	8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인쇄비 절감 및 포상금 심의결과 미지급 결정 등 집행잔액 -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23.2..21.) 미도래
2023	- (불용) 인쇄비 절감 및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24	- (불용) 인쇄비 절감 등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민간투자활성화, 국가회계제도운영 지원을 위한 여비 부족분 충당 - (불용) 여비 미집행분 -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26.2.28.) 미도래

사 업 명						
(2) 재정사업평가 (264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44	300
명칭	재정관리	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평가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사업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재정사업평가	2,943	3,311	3,311	2,398	5,229	1,918	57.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57	3,321	2,943	116	262	3,311	3,462	2,948	90	424	5,229
· 재정사업 성과관리	815	815	734	-	81	734	740	740	-	-	3,943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480	480	480	-	-	514	514	451	-	63	468
· 보조사업 연장평가	533	533	533	-	-	533	533	533	-	-	-
· 기금 및 부담금 평가	413	413	411	-	2	453	453	453	-	-	-
· 재정사업 심층평가	688	758	534	116	108	720	836	420	76	340	-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등 연구용역	100	100	50	-	50	100	205	188	14	3	100
·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비	228	222	201	-	21	257	181	163	-	18	7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사업 성과관리) 성과계획서·보고서 확인·점검 등을 통해 성과 중심 재정운용 제고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핵심재정사업을 전주기적으로 집중관리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 및 정책환류 강화
- (보조사업평가)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조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 재정운용에 활용
- (기금·부담금평가) 기금·부담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함으로써 기금·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
- (재정사업 심층평가) 주요재정 사업 운영 성과 심층분석·평가하여 제도 개선 및 재정운용에 반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제85조의2)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제85조의8(재정사업의 성과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3)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1조)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예산처
3. 조직·정보화부문: 행정안전부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5. 삭제 <2008. 7. 3.>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관과 연장평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제8조)

-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⑤**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

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관리·유통·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7	2,399	3,257	3,331	5,2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등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1) 재정사업 성과관리 : (2025) 734 → (2026확정) 3,943백만원, +3,209백만원
- 성과목표관리, 통합재정사업 평가 및 AI활용 성과관리 등 성과관리 업무 운영
- (2)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 (2025) 514 → (2026확정) 468백만원, △46백만원

- 핵심재정사업 전주기 집행 점검

(3)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등 연구용역 : (2025) 100 → (2026확정) 100백만원 전년동

(4)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제도 운영비 : (2025) 257 → (2026확정) 718백만원 +461백만원

-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수용비 및 여비, 일반용역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	목표	77.5	78.2	78.6	78.9	79.3	전년 목표치에 최근 5개년(2020년~2024년) 증가율의 평균값(0.49%)을 적용	○ 측정방법 -재정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실적	78.0	78.4	79.1	-	-			
	달성도	100.6	100.2	100.6	-	-			

< 재정사업 성과관리 >

2022	○ 총 58개 부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680개 중 521개 달성(76.6%)
2023	○ 총 58개 부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047개 중 811개 달성(77.5%)
2024	○ 총 58개 부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068개 중 821개 달성(76.9%)
2025	○ 총 60개 부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507개 중 415개 달성(81.9%)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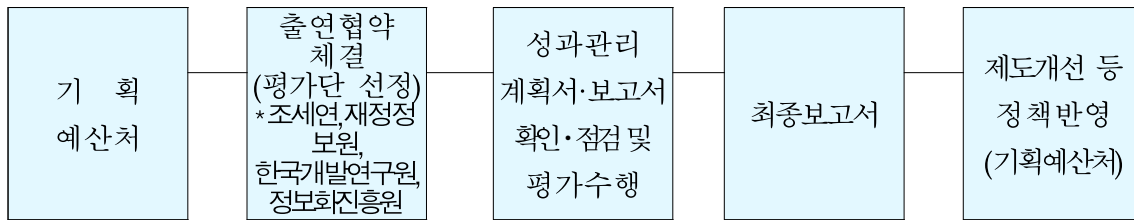
-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포함한 성과관리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관리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성과계획서·보고서 확인점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97	-	1,997	-	50	-	2,047	2,000	100	97.7	45	2
2023	2,399	-	2,399	45	-	-	2,444	2,368	98.7	96.8	-	75
2024	3,257	-	3,257	70	-	-	3,327	2,943	90.3	88.4	-	-
2025	3,311	-	3,311	116	-	-	3,427	2,948	89.0	86.0	90	42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이/전용, 세목조정)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및 재정성과관리 기본계획('22.8월)에 따른 부처별 대표성과지표 인포그래픽 제작 관련 소요 비용 충당 (이월)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23	(불용) 영상회의 적극활용 등으로 대면회의 예산절감, 국회출장 미실시에 따른 국외여비 불용 및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24	(이/전용) 재정사업평가 관련 용역 추진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사유로 전용 (이월) 재정사업 심층평가 출연사업의 협약기간('24.7월~'25.6월)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25	(이/전용) 성과목표관리 우수 프로그램 포상급 지급 사유로 전용

사 업 명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264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45	300
명칭	재정관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민간투자사업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333	330	330	230	230	△100	△3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및 제44조의 3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임
-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한국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행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제협력 기반 유지, 보다 나아가 지속적인 교류 활동과 행사를 통해 민자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 공고화하는 것임
- (민자활성화 연구용역) 민간투자사업 도입 30여년이 지남에 따라 관리운영권 만료사업의 증가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제23조, 제51조의3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3.13., 경제활력대책회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 ('19.3.14.,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민간투자 제도·운영 합리화
- ('20.1.14.,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민간투자 활성화(포괄주의 및 신규 추진방식 등)
- ('20.2.13.,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민간투자 활성화(신규사업 발굴 등)
- ('20.7.9.,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민간투자 활성화(금융업계 참여방안 등)
- ('21.4.28.,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민간투자 활성화(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등)
- ('22.6.9,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민간투자 활성화(대상시설 다양화 등)
- ('23.3.27 비상경제장관회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민자 추진 단계별 혁신방안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442	373	336	330	23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사회기반시설을 이용 및 향유하는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	목표	77.5	78.2	78.6	78.9	79.3	전년 목표치에 최근 5개년(2020년~2024년) 증가율의 평균값(0.49%)을 적용	○ 측정방법 -재정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실적	78.0	78.4	79.1	-	-			
	달성도	100.6	100.2	100.6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금액(조원)	목표	1.8	-	-	-	-	-	-	-
	실적	2.6	-	-	-	-			
	달성도	144.4	-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비율(%)	목표	신규	26.2	-	-	-	-	-	-
	실적	신규	38.7	-	-	-			
	달성도	신규	147.7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제도 개선 권고 건수(건)	목표	347	398	-	-	-	-	-	-
	실적	441	423	-	-	-			
	달성도	127.1	106.3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및 풍부한 유동성을 적극 활용하여
민자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및 민간주도 성장에 기여
- * 새로운 대상시설 민간투자사업 발굴, 민자사업 조기착공 및 민자 활성화 방안 마련

4) 사업 집행절차

- 민간투자제도 운영지원 :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개최, 유관기관 간담회 진행
-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 민간투자 관련 국제행사·세미나 개최
- 민자활성화 연구용역 : (1~2월) 계획 수립 → (3~5월) 발주 및 계약 체결 →
(5~12월) 용역 수행 및 중간점검(8월) → (12월) 최종점검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36	330	302	302	302	
2025~2029		330	230	230	230	230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기재위 결산) 민간투자사업활성화지원 사업 정기적 집행부진 주의 필요
 - ('23 예정처 결산 분석보고서) 연례적 이·전용 등으로 집행 부진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연례적 이·전용 등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국제행사 사업의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편성 및 집행소요의 면밀한 점검을 통한 집행을 제고 노력 지속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민자 관련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조기집행 등을 통하여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
-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을 통한 제도 학습, 전수 및 국내기업 해외 진출기반 마련하며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대상시설 다양화(포괄주의) 및 민자사업 관리운영 강화 등 참여유인제고·정부고시,민간제안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민자 활성화

8)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42	-	442	14	△156	-	300	199	45.0	66.3	24	77
2023	373	-	373	24	△136	-	261	181	48.5	69.3	30	50
2024	336	-	336	30	6	-	372	333	99.1	89.5	36	3
2025	330	-	330	36	4	-	370	338	102.4	91.3	-	3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9	49	49	49	-	49	49	-	-	100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규모 각각 기재 :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사업 국제협력의 일반용역비(210-14) 136백만원과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의 일반용역비(210-14)20백만원을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지 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으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5-301)에 전용(총 156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으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5-301)에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불용 사유 - (일반수용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로 대관료·참석자수당 등 지급감소(54백만원) - (정책연구비) 용역규모 축소로 인한 절약금액(20백만원), 용역 정산에 따른 집행반납액(3백만원) 불용 ○ 이월 사유 - (정책연구비) 연구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24백만원) 이월
2023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규모 각각 기재 :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사업 국제협력의 일반용역비(210-14) 136백만원을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으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2645-301)에 전용(총 136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으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5-301)에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불용 사유 - (정책연구비) 용역 정산에 따른 집행반납액(3백만원) 불용 ○ 이월 사유 - (정책연구비) 연구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30백만원) 이월
2024	- 이·전용 등 사유 :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재정사업평가 (2644-300)에서 6백만원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이월 사유 - (정책연구비) 연구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36백만원) 이월 ○ 불용 사유 - 수용비·용역비·국외여비 집행잔액 (3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재정집행관리 (2643-300)에서 4백만원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 해당없음 ○ 불용 사유 - 수용비·용역비·국외여비 등 집행잔액 (32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6.)	재정집행관리 (2643-300)	220-02	4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지원 (2645-300)	220-02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총당

사 업 명						
(4)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264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46	301
명칭	재정관리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사업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타당성심사과
타당성조사	사업시행주체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8,444	12,937	12,937	1,702	1,702	△11,235	△86.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이월액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71	8,600	8,571 [8,571]	26	131	12,937	12,964	12,932 [12,932]	12,938	12,906 [12,906]	32	-	1,702
· 예타조사 사업비	8,151	8,151	8,151 [8,151]	-	-	12,517	12,517	12,517 [12,517]	12,517	12,517 [12,517]	-	-	1,212
· 예타제도 연구용역	160	189	89	26	75	160	187	155	161	129	32	-	160
· 예타제도 운영지원	260	260	204	-	56	260	260	260	260	260	-	-	3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타당성 조사 및 제도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하게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38조, 제50조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⑤ 생략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국가재정법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2.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 4~7 생략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9.3월)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증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 ('99.5월) 예산회계법시행령(제9조의2)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법제화
- ('00년~) 예타 조사 총괄 수행 및 조사결과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KDI 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KDI 출연금(총리실) 편성
- ('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기본 운영 틀 법제화
 - * '07년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12년) 출연금 예산 소관이 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13년 예산부터 적용)
- ('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거버넌스 개편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92	7,973	8,571	12,937	1,70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 타 조 사 사업비	출연	한국개발 연구원,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1,212	100%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38조, 제5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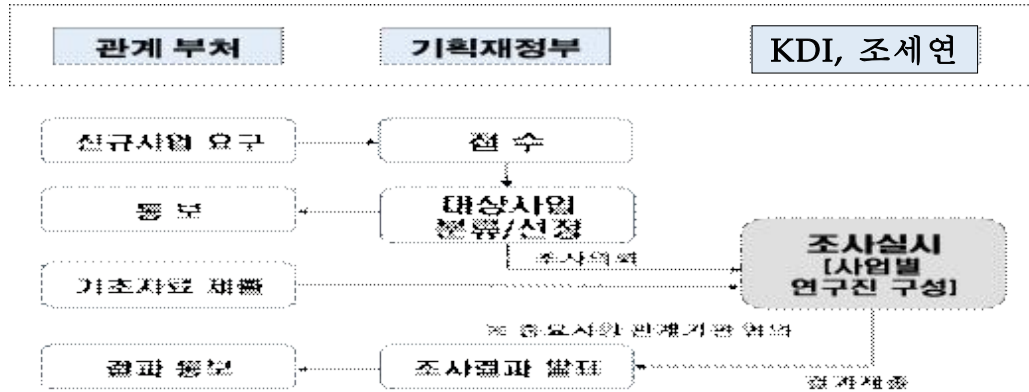
- (예타조사 제도 운영지원) 예타조사 운영에 필요한 자료·안전인쇄, AHP 유지보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운영 330백만원
- (예타제도 등 연구용역) 예타 조사 관련 연구용역 160백만원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500억원 이상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타재 등 포함)와 예타조사 방법론 및 분석지침 연구 수행을 위한 사업비 12,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



-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각부처 장관이 예타조사 정부안서 제출(분기별 1회, 연4회)
- 외부 전문가 포함 연구진을 선정하여 예타 수행
- 조사결과 통보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예산편성시 반영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292	-	7,292	-	156	-	7,448	7,434	101.9	99.8	-	14
2023	7,973	-	7,973	-	362	-	8,335	8,254	103.7	99.2	29	39
2024	8,571	-	8,571	29	-	-	8,600	7,088	82.7	82.4	-	-
2025	12,937	-	12,937	26	1	-	12,964	12,932	99.9	99.8	32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기획예산처는 반복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과소 편성한 후 타 사업 및 비목의 전용을 통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것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5)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2646-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46		402	
명칭	재정관리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연구개발 사업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타당성심사과
타당성조사 (R&D)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R&D)	121	220	220	198	198	△22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 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이월액	제외 집행 액			
									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4	274	121 [118]	-	153	220	239	184 [87]	239	184 [87]	-	-	198
· 예타조사 사업비	274	274	121 [118]	-	153	220	239	184 [87]	239	184 [87]	-	-	1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규모 국가 R&D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적정 사업규모 검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38조, 제50조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⑤ 생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 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생략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예산처 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2.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 4~7 생략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국가재정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7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수행(9개 사업)
- (~'08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조사 수행
- (~'08.2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의뢰하여 예타 수행
- ('12년) R&D 사업 예타 조사기관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일원화
- ('18년)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개정으로 R&D 예타는 과기정통부에서 수행,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기존대로 기재부에서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6	281	274	220	19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 타 조 사 사업비	출연	한국과학 기술기획 평가원	198	100%	-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38조, 제50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제4항 및 제6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R&D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수행을 위한 사업비 = 19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	목표	77.5	78.2	78.6	78.9	79.3	전년 목표치에 최근 5개년(2021~2025) 증가율의 평균값(0.49%)을 적용	○ 측정방법 -재정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실적	78.0	78.4	79.1	-	-			
	달성도	100.6	100.2	100.6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금액(조원)	목표	1.8	-	-	-	-	-	-	-
	실적	2.6	-	-	-	-			
	달성도	144.4	-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비율(%)	목표	신규	26.2	-	-	-	-	-	-
	실적	신규	38.7	-	-	-			
	달성도	신규	147.7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제도 개선 권고 건수(건)	목표	347	398	-	-	-	-	-	-
	실적	441	423	-	-	-			
	달성도	127.1	106.3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1건
2023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0건
202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5건
2025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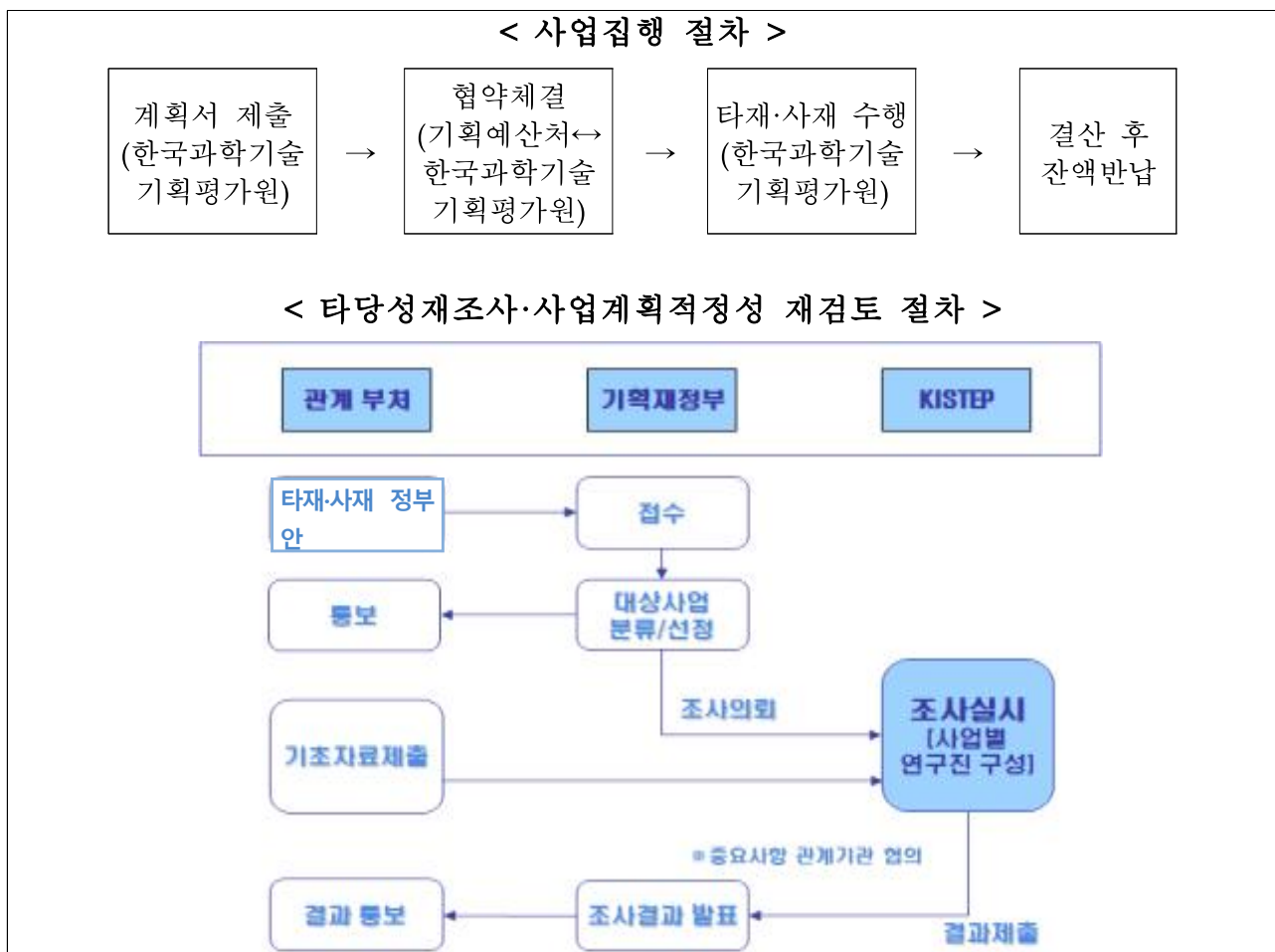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규모 국가 R&D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과제 성격(건축 포함 등)에 따라 필요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수행(관련절차는 동일)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96	-	296	-	-	-	296	296	100.0	100.0	-	-
2023	281	-	281	-	△226	-	55	55	100.0	100.0	-	-
2024	274	-	274	-	-	-	274	121	44.2	44.2	-	153
2025	220	-	220	-	+19	-	239	239	108.6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2022	- R&D분야 타당성재조사·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수요가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실적행률이 부진
2023	- 재정사업타당성조사로 전용 실시
2024	-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수행의 수요 예측이 미흡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
2025	- 특이사항 없음

재 정 기 획

사 업 명 (1)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010	014
명칭			재정혁신정책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2	301
명칭	재정기획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26년 정부안 편성 시 과목구조개편 완료 (5개 세부사업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재정혁신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내역사업)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재정분석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내역사업)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재정혁신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내역사업)		지속가능재정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국제재정협력과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재정지표관리팀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1,939	2,202	2,202	1,961	3,561	1,359	6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94	2,405	1,938	59	408	2,202	2,261	1,669	71	521	3,561
· 재정전략기획 수립 및 제도연구	969	1,049	734	41	274	897	897	633	71	192	1,358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932	932	930	-	2	997	997	760	-	238	997
·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161	161	110	15	36	153	168	86	-	82	153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132	152	91	-	61	121	121	113	-	8	978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100	111	73	3	35	75	78	77	-	1	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국가 재정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재정전략 과제 관리를 위해 재정운용계획 수립, 제도연구, 재정지속성 관리 및 국내외 재정협력 강화
-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국가 재정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재정전략 시책 수립 및 제도 연구 추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간담회 개최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제작 등을 위한 것임
-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장기재정전망, 재정위험 관리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주요기관 및 주요국,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 8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등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 기획예산처 직제시행규칙 제 7조 제15항, 제16항

<기획예산처 직제시행규칙 제15조>

⑮ 재정기획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2. 해외 주요 재정정책 동향의 분석
3. 해외 재정제도의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재정 관련 보고서 분석·협의
5.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분석
6.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민부담률 전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분석
8.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재고를 위한 계획 수립 관련 협의

⑩ 지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효율화 등 지출혁신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2. 중장기 재정지출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법」의 해석·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정법제의 범위와 체계개편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6. 국가재정운용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7. 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제도화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8. 재정사업 전달체계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재정지출·조세지출 간 연계·통합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10.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11.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 및 정부조달사업·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항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を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 기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재정법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5항: 지속가능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의 작성·통보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홍보
3.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의 작성 및 목표 설정·관리
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 및 협의·총괄
5.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조정
6. 국내 월간 재정동향의 발간
7. 주요국의 국가 채무 및 재정지표 관련 조사·분석
8. 국세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가보증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분석
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및 관리
10.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 총괄
11.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12. 국가채무 관련 대외 협력

13. 국가채무와 관련된 대응자산의 분석·관리
 14. 국고의 관리·운영 및 국채에 관한 정책의 협의
 15.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16.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관련 협의
 17.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관련 협의
 18. 그 밖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현황 분석·협의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9항:**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 기획예산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9항: 국제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해외 주요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 분야 양자 협력에 관한 사항
3.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 분야 다자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5. 국제재정협력 관련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외 재정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 분야 국제 협력과 관련하여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 ①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장기재정전망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 방법, 절차, 관련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검토·종합에 관한 사항
 4. 장기재정전망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계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장기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국가재정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임직원
 3. 중장기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이 된다.
-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중장기 재정전략) 중장기 재정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기획국을 신설('14.12.30)하고 업무 추진
- (국내외 재정협력)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국, 국제기구,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해 재정정책협력과를 신설('22.12.6.)하고 업무 추진
- (과목구조개편) '26년 정부안 편성 시, 재정정책국 내 5개 세부사업*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화 추진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통합)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66	3,118	2,294	2,202	3,56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중앙행정기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 (2025) 2,202백만원 → (2026) 3,561백만원, 전년대비 1,359백만원 증액(61.7%)

- (요구) '26년 예산안 편성 시, 5개 세부사업'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예산 증액(1,359백만원) 요구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통합)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 (산출) (재정전략기획 수립 및 제도연구) : ('25년) 856백만원 → ('26) 1,358백만원(전년대비 +502백만원 증액)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25년) 997백만원 → ('26) 997백만원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 ('25년) 153백만원 → ('26) 153백만원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 ('25년) 121백만원 → ('26) 978백만원 (전년대비+857백만원 증액)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 ('25년) 75백만원 → ('26) 75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만족도(점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6.8	예산 및 재정분야 업무담당자, 민간 재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척도 만족도 (100점 만점) 조사	측정대상기간: '26년 -평가 시점: 연도말 -수행관: KMC 등	자체수집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	-	-	-	-			
②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30,000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연도말 -측정수행기관 :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열린재정
	실적	신규	176,055	391,184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과제(3개) 평가 완료 ◦ '22~'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 '21년 재정사업 심층평가과제(6개) 평가 완료 ◦ 월간 재정동향 발간 및 '20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 발간
2023	◦ '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과제(3개) 평가 완료 ◦ '23~'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 '2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과제(3개) 평가 완료 ◦ '22년 의무·경직성 지출 주요 과제 도출 및 예비검토(4개) ◦ 월간 재정동향 발간 및 '2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 발간
2024	◦ '24~'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 월간 재정동향 및 '22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책자 발간
2025	◦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방향 및 재정총량 목표(시안) 수립 중 ◦ '25~'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추진 중 ◦ 월간 재정동향 및 '23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책자 발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재정정책 개혁방향 수립 등을 위한 재정전략기획 시책수립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 재정 부문 국내외 주요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방안에 대한 국제적지지 확보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수립 이행 등을 통해 사회보험 건전성 제고
-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PEMNA 활동 등을 통해 국제기구 회의참석·발표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성과 창출과 한국의 우수 재정제도 홍보·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정책연구용역 : 과제 선정 → 연구자 선정(소위원회 심의) → 계약 체결 → 연구 및 보고서 작성 → 검수 → 대금 지급 → 결과물 등록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연례적 이·전용에 따라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성 면밀히 검토(기재위, 예정처, 23결산)
 - 구체적인 성과지표 필요(23결산 기재위)
 - 프로그램 내 사업 통폐합 필요(24결산 기재위)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당초 예산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 조정 및 전용 지양하는 방향으로 집행('24년 이후 전용 0건)
 - '26년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만족도,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 '26년 정부안 편성 시 프로그램 내 5개의 세부사업을 1개의 단일사업으로 통폐합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880	△14	2,866	3,068	2,736	89.1	265	67
2023	3,118	-	265	3,386	2,610	77	111	665
2024	2,294	-	111	2,405	1,938	80.5	59	408
2025	2,202	-	59	2,261	1,669	73.8	71	5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세부사업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과다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재위, 예결위)
2023	연례적 이·전용에 따라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성 면밀히 검토(기재위,예정처)
2024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등의 사업을 통폐합하여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기재위)
2025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2) 재정교육 (271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2	303
명칭	재정기획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재정교육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교육	소관부처	재정참여정책관 재정협력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재정교육	676	655	655	735	1,035	380	58.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5	695	676	-	19	655	655	652	-	3	1,035
· 재정교육 운영	606	606	595	-	11	606	606	603	-	3	646
· 재정교육 관리	29	29	24	-	5	29	29	29	-	-	29
· 재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60	60	57	-	3	20	20	20	-	-	60
· 직무교육 및 융복합교육 운영	-	-	-	-	-	-	-	-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주요 재정제도(예산, 기금, 집행 등)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 101조에 따라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 ('15.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 효율화 를 위해 재정교육체계 강화 결정
- ('16년~) 기존 교육 정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신규사업 추진
- ('26년~) 국민의 재정이해력을 증진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의 직무역량 제고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0	740	695	655	1,03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재정교육 운영 : ('25) 606 → ('26) 646백만원

- 재정교육 운영 일반용역비 : ('25) 526 → ('26) 566백만원
- e-재정배움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 ('25) 80 → ('26) 80백만원

② 재정교육 관리 : ('25) 29 → ('26) 29백만원

- 재정교육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출장여비

③ 재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 ('25) 20 → ('26) 60백만원

- 신규 과목 교재 및 콘텐츠 개발 연구비

④ 직무교육 및 융복합교육 운영 : ('25) 0 → ('26) 300백만원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용비 및 여비, 일반연구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만족도(점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6.8	예산 및 재정분야 업무담당자, 민간 재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점 리 커트척도 만족도 (100점 만점) 조사	측정대상기간: '26년 -평가 시점: 연도말 -수행관: KMAC 등	자체수집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②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30,000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연도말 -측정수행기관 :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열린재정
	실적	신규	176,055	391,184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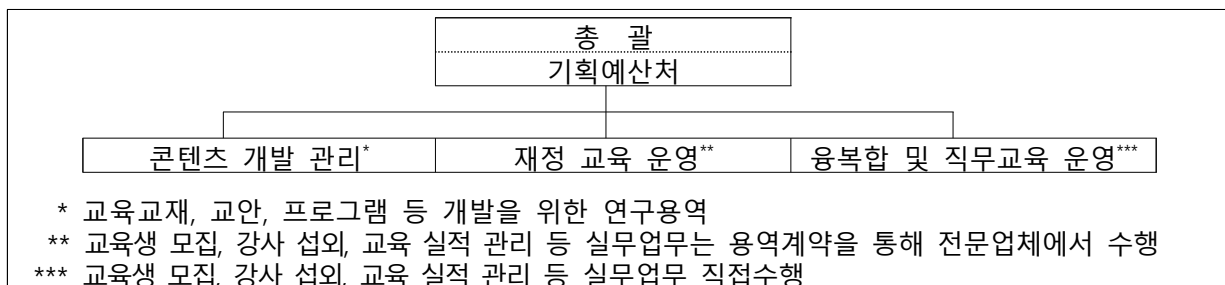
2022	- 이수자수 : 5,173명 - 교재개발 연구 : 3건
2023	- 이수자수 : 5,145명 - 교재개발 연구 : 3건
2024	- 이수자수 : 6,663명 - 교재개발 연구 : 3건
2025	- 이수자수 : 7,105명 - 교재개발 연구 : 1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40	-	740	729	713	96.4	-	16
2023	740	-	740	740	724	97.8	-	16
2024	695	-	695	695	676	97.3	-	19
2025	655	-	655	655	652	99.5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16백만원) ◦ 이/전용 사유 - 금리인상에 따른 디브레인 전산장비 임차료 추가소요 발생으로 재정교육 사업의 일반수용비 11백만원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의 임차료로 전용(△11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16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19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2712-304)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2	304
명칭	재정기획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재정협력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490	592	592	1,130	1,130	538	9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6	516	490	-	26	592	592	577	-	15	1,130
· 참여예산제도 운영	316	291	269	-	22	291	291	282	-	9	490
· 제도관리 및 연구	-	-	-	-	-	-	-	-	-	-	40
· 홈페이지 관리	200	225	221	-	4	301	301	295	-	6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재정운용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 (참여예산제도 운영)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제도관리 및 연구)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대외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 활성화
 - (홈페이지 관리) 국민의 사업제안 및 참여예산 관련 정보제공 등을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17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참여와 분권을 위한 재정혁신과제의 하나로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논의('17.7월)
- 기재부 직제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 기획·운영을 위한 조직(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신설
-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7.12월)
- '18.3월부터 국민제안사업 접수 등 제도 본격 도입 및 운영 중
- 직제 개정을 통해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로 부서 명칭 변경('22.1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76	1,762	516	592	1,1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재정참여국 재정협력총괄과
- 사업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참여예산제도 운영: ('25) 291백만원 → ('26) 490백만원, +199백만원(+68.4%)
② 제도관리 및 연구: ('25) -백만원 → ('26) 40백만원, 순증
② 홈페이지 관리: ('25) 301백만원 → ('26) 600백만원, +299백만원(+99.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만족도(점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6.8	예산 및 재정분야 업무담당자, 민간 재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점 리 커트척도 만족도 (100점 만점) 조사	측정대상기간: '26년 -평가 시점: 연도말 -수행기관: KMAC 등	자체수집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②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30,000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연도말 -측정수행기관 :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열린재정
	실적	신규	176,055	391,184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산사업의 제안, 사업숙성 및 검토, 선호도 조사
과정 등에 국민 참여를 지속 확대하여 재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민제안 접수(연중) 및 제안사업 숙성(4~5월)	▶ 국민 사업제안 연중 상시 접수 ▶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 (4~5월) ▶ 각 부처의 예산 정부안 (5월말)
② 참여단 논의 및 선호도 조사(6~7월)	▶ 예산국민참여단 사업검토 및 숙의 (6월) ▶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7월)
③ 정부안 확정(~8월)	▶ 기재부(예산실) 예산 심의 (~8월) ▶ 국무회의에서 예산 확정
④ 국회심의·확정(9~12월)	▶ 국회에서 정부예산 심의·확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년, 기재위·예결위)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국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의 내실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한 제도 운영 예산을 반영할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5년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국민제안”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예산 관련 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적정 제도 운영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276	-	2,276	2,276	1,949	85.6	-	327
2023	1,762	-	1,762	1,759	1,539	87.3	-	220
2024	516	-	516	516	490	95.0	-	26
2025	592	-	592	592	577	97.5	-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발생 사유 - 용역 낙찰차액 292백만원 및 연구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 35백만원
2023	◦ 불용액 발생 사유 - 용역 낙찰차액 188백만원 및 국외여비 불용 등 집행잔액 32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일반용역비 25백만원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 부족분 충당을 위한 관리용역비로 세목조정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2713 - 500)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3	500
명칭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열린재정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재정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정보화)	21,763	20,770	20,770	21,941	22,317	1,547	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240	22,240	21,763	-	317	20,770	20,930	20,688	-	242	22,317
·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	22,240	22,240	21,763	-	317	20,770	20,930	20,688	-	242	22,3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의 통합적 수행을 지원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의 지속적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조(목적), 제5조(사업), 제11조(출연금)

② 추진경위

- '04.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결정
- '04. 8월 ~ 12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전략계획(BSP : Business Strategy Planning) 수립
- '05. 2월 ~ 9월: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 '05. 10 ~ '07. 2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

- '07. 1월 ~ 계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 '16. 3월: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3.22)
- '16. 5월 ~ 7월: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5.23) 및 개원(7.1)
- '16. 11월 : 한국재정정보원-미주개발은행* 재정정보시스템 MOU 체결
* 미주개발은행 :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17. 11 ~ '18. 4월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마스터 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수립
- '19. 12 ~ '21. 12월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
- '22. 1월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면 개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957억원(전액 국고)
※ '23년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2713-502)」 세부 사업과의 사업 통합으로 인한 총사업비 대상으로 신규 지정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665	17,196	22,240	20,770	22,3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기획예산처 / (출연)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재정부문 예산, 집행, 회계, 결산업무 담당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운영(정보화)	출연	한국재정정보원	22,317	100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출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1) 시스템 운영관리 : (2025) 698 → (2026) 698백만원(전년동)
- 안정적인 dBrain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회선료, 수수료 등
- (2) dBrain 보안 강화 : (2025) 2,299백만원 → (2026) 2,621백만원(322백만원), +14.0%
- 망 통합 및 문서보안솔루션, SW 품질관리 등 dBrain 보안강화를 위한 비용
- (3) 사용자 지원 및 홍보 : (2025) 2,673 → (2026) 5,403백만원(+2,730백만원), +102.1%
 - (요구) 사용자 교육 및 소통 강화, 재정정보 공개, 국제협력 등 사용자 지원
 - (산출) dBrain 교육 및 소통 강화 : 852 → 852백만원(전년동)
국가결산지원 : 70 → 70백만원(전년동)
재정정보 공개 및 홍보 : 125 → 2,163백만원(+2,038)

재정정보화 국제협력 : 340 → 680백만원(+340)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1,286 → 1,638백만원(+352)
(4) dBrain 유지관리 및 고도화 : (2025) 15,100 → (2026) 13,595백만원(△1,505백만원), △10%
- (요구) 차세대 구축 이후 유지관리와 기능 고도화를 위한 비용(총사업비 관리 대상)
- (산출) dBrain상담센터 위탁운영 : 3,349 → 3,349백만원(전년동)
dBrain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 6,222 → 6,767백만원(+545백만원)
dBrain시스템 장비임차료 : 2,862 → 3,479백만원(+617백만원)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구축 : 2,667 → 0백만원(순감, 25년 종료사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수	목표	-	-	-	-	430,000	열린재정 이용자 증가추세 반영	연간 열린재정 이용자 수	열린재정 시스템 이용자 접속 기록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21.1.1.)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시스템 성능 개선
2023	재외동포청 등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조직의 조속한 예산집행을 밀착지원하고,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국가결산 최초 수행에 차질 없도록 일정별·단계별 지원
2024	정부 조직 개편 및 연계기관 차세대 시스템 개통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시스템 적기 반영
2025	국가 결산의 현금흐름표 도입, 재무제표 구조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이 국가 결산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스템 개편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산편성·집행, 자금·자산 및 부채관리, 회계·결산 등 국가 재정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고 재정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조사기간 : '14. 5월 ~ '15. 7월
- 조사결과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으로 10년간 비용편익 약 4,600억원, B/C(편익-비용 비율) 1.01 발생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19~'26	1,348	134	184	154	137	-	1,957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사업계획 수립 →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 일상감사 의뢰 → 공개경쟁 입찰 공고 → 제안서(기술)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수행
- (출연금)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 이사회 의결 → 기획예산처 승인 → 분기별 출연금 교부 요청 → 출연금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665	-	15,665	-	11	-	15,676	15,641	99.8	99.8	-	35
2023	17,196	-	17,196	-	-	-	17,196	17,136	99.7	99.7	-	60
2024	22,240		22,240	-	-	-	22,240	21,763	97.9	97.9	160	317
2025	20,770	-	20,770	160	-	-	20,930	20,688	99.6	98.8	-	2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사유) - 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으로 임차료 11백만원 증액 - GIS시스템 SW 라이선스가 국가(기재부)자산으로 등록되어야 함에 따라 227백만원 비목 사업출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조정 ◦ (불용사유) - 장비 낙찰가 예측 어려움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27백만원 불용 - 코로나로 인한 국외여비 및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8백만원
2023	◦ (이·전용사유) -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외여비 집행잔액 6백만원 국내여비로 세목조정 ◦ (불용사유) - 리스료 변동에 따른 임차료 39백만원, 장비 낙찰가 예측 어려움에 따른 자산취득비 16백만원 불용 - 국외여비 절감노력 등으로 여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백만원
2024	◦ (이·전용사유) - 재정정보화 업무 수행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외여비 집행잔액을 국내여비로 세목 조정(3백만원) ◦ (이월사유) - 조달 외자구매 지연으로 개인정보 노출차단 솔루션 구매사업 자산취득비 이월(160백만원) ◦ (불용사유) - 국가결산체계 개편 구축사업 관련 조달 용역계약 낙찰차액(172백만원), 전산장비 리스료 변동 등에 따른 임차료 140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사유) -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솔루션이 국가(기재부) 자산으로 등록되어야 함에 따라 348백만원 비목 사업출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조정 ◦ (불용사유) - 국가결산체계 개편 구축사업 관련 조달 용역계약 낙찰차액(121백만원), 전산장비 리스료 변동 등에 따른 임차료(114백만원), 장비 낙찰가 예측 어려움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7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18)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운영 (정보화) (2713-500)	사업출연금 (350-02)	348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운영 (정보화) (2713-500)	자산취득비 (430-01)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솔루션 장비구매를 위한 비목에 맞게 조정

사 업 명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2713-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010	014
명칭			부정수급관리단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3	501
명칭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소관부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한국재정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운영	17,877	19,303	19,303	18,188	20,068	765	4.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64	17,964	17,877	-	87	19,303	19,303	19,230	-	73	20,068
· 국고보조금통합 관리망구축운영	17,964	17,964	17,877	-	87	19,303	19,303	19,230	-	73	20,0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고보조금의 **소**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 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추진경위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14.12.4.)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5.3.30.~9.26.)
-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3호, '15.10.1.)에 따라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15.10.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차 개통 ('17.1.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체 개통('17.7월)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21.1월)
-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개통('24.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415	20,832	17,964	19,303	20,06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국고보조금 업무담당자 및 전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303	○ 일반수용비(210-01) : 50,000천원 가. 전문가 자문료(12백만원) 나. 인쇄비(30백만원) 다. 소모성 물품 구입(8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4,928천원 가. 25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9,072천원 가. 사업추진관련 업무협약 ○ 사업출연금(350-02) : 17,860,000천원 가. 부정수급 현장점검 위탁(1,030백만원) 나. 기능개선 및 고도화(1,265백만원) 다. 시스템 운영·유지보수(3,985백만원) 라. 사용자지원센터 운영(4,332백만원) 마. 고객만족도 조사(24백만원) 바. 사용자교육 운영(5,642백만원) 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통합컨설팅(533백만원) 아. e나라도움 운영망 유지보수(184백만원) 자.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 및 점검체계 구축(493백만원) 차. 기타 운영관련(37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359,000천원 가. e나라도움 운영 관련 SW 도입(1,359백만원)	18,188	○ 일반수용비(210-01) : 30,000천원(전년 대비 20백만원 감액) 가. 전문가 자문료(4백만원) 나. 인쇄비(20백만원) 다. 소모성 물품 구입(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2,928천원(전년 대비 12백만원 감액) 가. 1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9,072천원(전년 동) 가. 사업추진관련 업무협약 ○ 일반연구비(260-01) : 1,880,000천원(순증) 가. 차세대 e나라도움 BPR/ISP ○ 사업출연금(350-02) : 17,391,000천원(전년 대비 469백만원 감액) 가. 부정수급 현장점검 위탁(1,260백만원) 나. 기능개선 및 고도화(256백만원) 다. 시스템 운영·유지보수(3,985백만원) 라. 사용자지원센터 운영(4,448백만원) 마. 사용자교육 운영(6,133백만원) 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통합컨설팅(533백만원) 사. e나라도움 운영망 유지보수(184백만원) 아.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 점검체계 운영(300백만원) 자. 부정수급 탐지패턴 고도화 연구용역(40백만원) 차. 기타 운영관련(25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745,000천원(전년 대비 614백만원 감액) 가. e나라도움 운영 관련 SW 도입(98백만원) 나.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 및 점검체계 구축(467백만원) 다. e나라도움 ITSM 고도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	-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실적	-	-	-	-	-			
	달성도	-	-	-	-	-			

* '22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단위가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성과지표에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 시스템 1차 개통('17.1월) 및 완전 개통('17.7월)
2024	-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 개통('24.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산절감) 보조금 유용 등 부정수급 방지로 예산절감
- (업무 효율성 증대)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기존 수작업 업무의 온라인 처리로 업무편의 제고
- (대국민 인식 개선)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제공하여 대국민 맞춤형 보조금정보 제공 및 투명한 공개로 서비스 개선 및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수립→ 사업제안서 작성→ 원가산정 및 일상감사 의뢰→ 공개경쟁입찰 공고→ 제안서(기술)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사업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기재위) - (지적내용) 일반수용비 예산 8,000만원의 97.5% 및 정책연구비 예산 4,000만원 100% 불용 - (조치결과) 일반수용비 감액편성('23년 8,000만원→ '24년 7,000만원→ '25년 5,000만원), '23년 이후 정책연구비 미편성 ○ '23년 결산(예결위) - (지적내용) 보조사업 정보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국회에서 보조사업별 집행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일자별 집행명세서도 공시대상에 포함 - (조치결과)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과 양식을 신설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호 '정보공시 사항'에 「실적보고서」 및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신설하여 보조사업별 집행세부내역을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425	△10	18,415	18,415	18,259	99.2	-	156
2023	20,832	-	20,832	20,832	20,739	99.6	-	93
2024	17,964	-	17,964	17,964	17,877	99.5	-	87
2025	19,303	-	19,303	19,303	19,230	99.6	-	7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정책연구비 등 156백만원 불용
2023	◦ (불용사유) - 일반수용비 등 93백만원 불용
2024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87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사유) - 개인정보점검솔루션(SW) 도입 관련하여 사업출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비목변경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73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 3.1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구축 운영(2713-501)	350-02	49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구축 운영(2713-501)	430-01	개인정보점검솔루션(SW) 도입 관련하여 사업출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비목변경

사 업 명 (6)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2713-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3	504
명칭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재정 정보원운영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열린재정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재정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40,356	37,050	37,050	40,530	40,530	3,480	9.4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356	40,356	40,356	-	-	37,050	37,050	37,050	-	-	40,530
·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40,356	40,356	40,356	-	-	37,050	37,050	37,050	-	-	40,5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조(목적), 제5조(사업), 제11조(출연금)
- ② 추진경위 :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16.3.22.) 및 시행('16.5.23.) → 한국재정정보원 개원('16.7.1.) → 기타공공기관 지정('17.1월) → 준정부기관 지정('18.1월) → 기타공공기관 지정('23.1월) → 준정부기관 지정('25.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399	36,593	40,356	37,050	40,53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국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대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재정 정보원 운영	출연	한국재정정보원	40,530	100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출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건비 : ('25) 28,158 → ('26) 30,953백만원(+2,795백만원)
- '26년 정원 341명에 대한 인건비
□ 운영비 : ('25) 8,872 → ('26) 9,577백만원(+705백만원)
- 사무실 임차료, 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 일반연구비 : ('25) 20 → ('26) 0 (△20백만원)
- 준정부기관 전환에 따른 기재부 정보과의 자체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차세대 dBrain 성공적 개통 및 조기 안정화로 국가 재정업무 연속성 확보
2023	차세대 dBrain을 통한 국가결산 최초 수행 안정적 지원 및 보조금 통합대민포털 구축
2024	dBrain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속 및 기능개선 수행
2025	dBrain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 이사회 의결 → 기획예산처 승인 → 분기별 출연금 교부 요청 → 출연금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년 결산-상임위) 장애인 고용률 제고 필요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4,399	-	34,399	34,399	34,399	100.0	-	-
2023	36,593	-	36,593	36,593	36,593	100.0	-	-
2024	40,356	-	40,356	40,356	40,356	100.0	-	-
2025	37,050	-	37,050	37,050	37,05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7) 재정정보분석 (2713-506)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13	506
명칭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재정정보분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정정보 분석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열린재정정보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재정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재정정보분석	565	565	565	3,515	3,515	2,950	522.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5	565	565	-	-	565	565	565	565	565	3,515
· 재정정보분석	565	565	565	-	-	565	565	565	565	565	3,5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정보분석) 동 내역사업은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조(목적), 제5조(사업), 제11조(출연금)
- ② 추진경위: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16.3.22.) 및 시행('16.5.23.) → 한국재정정보원 개원('16.7.1.) → 재정정보연구본부(現재정정보분석센터) 설립('16.10월)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5	565	565	565	3,51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정정보 분석	출연	한국재정정보원	3,515	100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출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재정정보분석: ('25년) 565백만원, → ('26년) 3,515백만원, 2,950백만원 증액

- 통계자료 관리: ('25) 261백만원→ ('26요구) 246백만원, 15백만원 감액
 - 재정통계자료집 발간: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재정정보를 분석·활용하여 국민, 재정당국, 전문가 대상으로 통계자료집, 해설서 등 제공
- 재정정보 분석·진단: ('25년) 192백만원 → ('26년안) 157백만원, 35백만원 감액
 -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dBrain, e나라도움시스템 내의 재정정보를 분석해 재정당국 정책 지원 및 재정시스템 개선에 활용
- 재정통계 관리 지원: ('25) 112백만원→ ('26요구) 112백만원, 전년동
 - 학술 및 통계 DB 및 SW구매 : 신뢰도 높은 재정정보분석 및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국내외 학술 DB 활용, 재정분석 관련 국내외 참고서적 구입
- 경제·재정동향 조사 및 분석 지원: ('26요구) 3,000백만원, 신규
 - 각종 국내·외 경제 관련 지표, 언론 등 동향 조사를 통해, 신설 기획예산처의 재정정책 수립,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재정통계자료집 및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월간 「나라재정」 및 「재정통계 BRIEF」 발간 · 2022년 FIS 세미나 개최
2023	· 재정통계자료집 및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월간 「나라재정」 및 「재정통계 BRIEF」 발간 · 「FIS 재정동향」 발간
2024	· 재정통계자료집 및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월간 「나라재정」 및 「재정통계 BRIEF」 발간 · 재정동향 분석, 재정교육 모니터링 및 지원 등
2025	· 재정통계자료집 및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월간 「나라재정」 및 「재정통계 BRIEF」 발간 · 재정동향 분석, 통합공시 점검 지원 등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e나라도움)에서 산출된 재정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요자 대상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정보의 활용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 이사회 의결 → 기획예산처 승인 → 분기별 출연금 교부 요청 → 출연금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재정정보분석센터의 연구실적 증진 및 연말에 편중되는 보고서 발간 시점 개선 필요(국정감사, '24.10)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65	-	565	565	565	100	-	-
2023	565	-	565	565	565	100	-	-
2024	565	-	565	565	565	100	-	-
2025	565	-	565	565	565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특이사항 없음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예 비 비

사 업 명						
(1) 예 비 비 (3069-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9	300
명칭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예비비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경리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예비비	638,300	2,400,000	3,800,000	4,200,000	4,000,000	1,600,000	6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00,000	3,183,828	638,300	-	2,545,528	2,400,000	1,231,410	688,900	-	-	4,000,000
· 예비비	4,200,000	3,183,828	638,300	-	2,545,528	2,400,000	1,231,410	688,900	-	-	4,000,000

나. 사업설명자료

- 1) 사업목적·내용
- 정부예비비의 배정(타부처 포함) 및 국가안전보장 활동 지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900,000	1,600,000	5,500,000	1,188,509	576,000	48.5	-	612,509
2023	4,600,000	-	4,600,000	3,866,048	607,200	15.7	-	3,258,848
2024	4,200,000	-	4,200,000	3,183,828	638,300	20.0	-	2,545,528
2025	2,400,000	1,400,000	3,800,000	1,231,410	688,900	55.9	-	542,5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 해당없음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사 업 명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4110-8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10	880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산업기반신용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보증기금 출연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신용보증기금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 출연	10,000	10,000	10,000	50,000	50,000	40,000	4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충하여 민간투자사업 자금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 공급을 뒷받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

제31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추진경위

- '94. 8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설치
(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 '95. 5월 : 정부출연 및 업무개시
- '99. 1월 : 관리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단일화
- '05. 1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 개정
- '08. 12월 : 민간선투자사업을 보증대상에 포함
- '11. 11월 :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제도 신설
- '14. 5월 : 브릿지파이낸싱보증제도(토지등 선보상) 신설
- '16. 6월 : 재정지원보증 신설
- '19. 8월 : 투자위험분담형보증 신설
- '22. 11월 : 보증한도 확대(5,000억원 → 7,000억원)
- '23. 12월 : 보증한도 확대(7,000억원 → 10,000억원)
- '24. 10월 : 보증한도 확대(10,000억원 → 20,000억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5,000	10,000	10,000	10,000	5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제1항제1호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신용보증 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	-			
	달성도	100.5	115.4	13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6개 사업에 2조 3106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2023	6개 사업에 2조 6543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2024	16개 사업에 3조 1,399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2025	13개 사업에 3조 1,599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으로 안정적인 보증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 '26년 3조원의 신용보증 공급 계획으로 민간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

4) 사업 집행절차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25~2029		10,000	50,000	10,000	10,000	10,000

6)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부 재정지출 가용 범위와 기금의 안정적 운용배수를 고려하여 출연

7)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4년 기금존치평가)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자 등의 금전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그에 적합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으로의 전환이 어려우며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성도 없어 존치가 타당함.
-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적정함.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소한 상태로 기본재산 확보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과소 상태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중기가용자산(‘23년)	적정 중기자산규모	부족액
941,041	1,108,065	167,024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000	-	15,000	-	-	-	15,000	15,000	100.0	100.0	-	-
2023	10,000	-	10,000	-	-	-	10,000	10,000	100.0	100.0	-	-
2024	10,000	-	10,000	-	-	-	10,000	10,000	100.0	100.0	-	-
2025	10,000	-	10,000	-	-	-	10,000	10,0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5,000	15,000	15,000	15,000	-	15,000	15,000	-	-	100.0
2023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	-	100.0
2024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	-	100.0
2025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	-	100.0

기 획 재 정 행 정 지 원

사 업 명
(1) 인건비(기획예산처) (신규) (7101-1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3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인건비(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건비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경리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인건비 (기획예산처)	-	-	-	-	44,379	44,379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44,379
· 공무원 보수	-	-	-	-	-	-	-	-	-	-	44,379

나. 사업설명자료 : 기획예산처 인건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예산실) (7111-2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6
명칭	기획재정·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예산실)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실)	소관부처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실)	916	1,085	1,085	1,056	1,056	△29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이월액 예산 현액	제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85	1,085	916	-	-	1,085	1,085	583	1,085	929	-	-	1,0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예산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86	△10	1,176	-	-	-	1,176	1,069	90.9	90.9	-	107
2023	1,185	-	1,185	-	-	-	1,185	926	78.1	78.1	-	259
2024	1,185	-	1,185	-	-	-	1,185	916	77.3	77.3	-	269
2025	1,085	-	1,085	-	-	-	1,085	113	57.5	57.5	-	156

사 업 명
(3)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미래전략국) (7111-2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010	014
명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20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미래전략국)	소관부처	실·국·과(팀)
		성장기획정책관
		미래전략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미래전략국)	78	89	89	93	93	4	4.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예 산 현 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총액인건비 대상 (미래전략국)	86	86	78	-	8	89	89	77	89	77	-	12	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미래전략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	-	40	-	-	-	40	30	75.5	75.5	-	10
2023	42	-	42	-	-	-	42	29	69.2	69.2	-	13
2024	86	-	86	-	-	-	86	78	90.7	90.7	-	8
2025	89	-	89	-	-	-	89	77	86.5	86.5	-	1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내역변경: 7111-220-210-05(장기전략국 기본경비 특근매식비)에서 7111-220-210-16(장기전략국 기본경비 기타운영비)로 내역변경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내역변경: 7111-220-210-05(장기전략국 기본경비 특근매식비)에서 7111-220-210-16(장기전략국 기본경비 기타운영비)로 내역변경
2025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4)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재정혁신국) (7111-2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총괄과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22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재정혁신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대상		재정혁신정책관
기본경비	사업시행주체	재정혁신총괄과
(재정혁신국)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재정혁신국)	128	156	156	153	153	△3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1	161	128	-	33	156	156	124	-	32	153
· 기본경비	161	161	128	-	33	156	156	124	-	32	1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혁신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 ~ 7)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9	-	169	169	142	86.0	-	27
2023	169	-	169	169	134	79.3	-	35
2024	161	-	161	161	128	79.5	-	33
2025	156	-	156	156	124	79.5	-	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기타운영비 부족으로 특근매식비에서 세목 조정(1.1백만원)
2023	- 기타운영비 부족으로 특근매식비에서 세목 조정(1.8백만원)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5)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7111-22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27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소관부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37	47	47	49	49	2	4.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8	58	37	-	21	47	47	43	-	4	49
· 기본경비	58	58	37	-	21	47	47	43	-	4	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58	-	58	58	37	63.8	-	21
2025	47	-	47	47	43	91.5	-	4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 기획예산처) (신규) (7111-2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30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경리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기획예산처)	-	-	-	-	3,478	3,478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3,478

나. 사업설명자료 : 기획예산처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7)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신규) (7111-2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32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 기획예산처)	-	-	-	-	158	158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158

나. 사업설명자료 :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 (신규) (7111-2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34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재정 관리국,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	-	-	-	-	50	5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 (신규) (7111-23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대변인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36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대변인,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대변인실
	사업시행 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	-	-	-	-	11	11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 월 액 제 외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1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	-	-	-	-	-	-	-	-	-	-	-	-	11

나. 사업설명자료 : 기획예산처 대변인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 (7111-26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66
명칭	기획재정·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실)	소관부처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실)	2,152	2,530	2,530	2,585	2,685	155	6.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 산액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 정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15	2,515	2,152	-	363	2,530	2,530	2,480	2,249	2,480	2,249	-	231	2,6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예산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89	△94	2,095	-	-	-	2,095	1,855	88.5	88.5	-	240
2023	2,465	-	2,465	-	-	-	2,465	2,300	93.3	93.3	-	165
2024	2,515	-	2,515	-	-	-	2,515	2,152	85.6	85.6	-	363
2025	2,530	-	2,530	-	△50	-	2,480	2,249	88.9	90.7	-	231

사 업 명
(11)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미래전략국) (7111-2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010	014
명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70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미래전략국)	소관부처	실·국·과(팀)
		성장기획정책관
		미래전략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미래전략국)	222	307	307	316	287	△20	△6.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예 산 현 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총액인건비 비대상 (미래전략국)	300	280	222	-	58	307	310	270	310	270	-	40	2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미래전략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1	-	221	-	4	-	225	213	96.4	96.4	-	12
2023	238	-	238	-	-	-	238	197	82.8	82.8	-	41
2024	300	-	300	-	20	-	280	222	74.0	79.2	-	58
2025	307	-	307	-	3	-	310	270	87.9	87.1	-	4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정부안사항

2022	- 내역변경 : 기관운영 총액인건비비대상 업무추진비(7111-251-240-02)에서 장기국 총액인건비비대상업무추진비(7111-270-240-02)로 4백만원 내역변경
2023	- 해당없음
2024	- (내역변경) 비대상 기본경비(미래전략국)에서 비대상 기본경비(경제정책국) (20백만원) - (세목조정) 국외업무여비(220-02)에서 국내여비(220-01) (0.21백만원)
2025	- 내역변경 : 기관운영 총액인건비비대상 업무추진비(7111-251-240-02)에서 미래국 총액인건비비대상업무추진비(7111-270-240-02)로 3백만원 내역변경

사 업 명
(12)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재정혁신국) (7111-2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010	014
명칭			재정혁신정책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72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재정혁신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미래전략기획실
비대상		재정혁신정책관
기본경비		재정혁신총괄과
(재정혁신국)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재정혁신국)	292	318	318	328	325	7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7	319	292	-	27	318	322	308	-	14	95.6
· 기본경비	317	319	292	-	27	318	322	308	-	14	9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혁신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77	-	277	277	262	94.6	-	15
2023	294	-	294	294	251	85.4	-	43
2024	317	-	317	319	292	91.5	-	27
2025	318	-	318	322	308	95.6	-	1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에서 세목 조정(2.1백만원)
2023	-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에서 세목조정(7.4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세목조정(4.9백만원)
2024	-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에서 세목조정(7.4백만원) - 안정적 관서업무추진비 지출위해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에서 내역변경(2백만원)
2025	-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에서 세목조정(6.6백만원) - 안정적 관서업무추진비 지출위해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에서 내역변경(4백만원)

사 업 명						
(13)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7111-27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010	014
명칭			부정수급관리단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77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소관부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56	97	97	94	94	△3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2	102	56	-	46	97	99	73	-	26	94
· 기본경비	102	102	56	-	46	97	99	73	-	26	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102	-	102	102	56	54.9	-	46
2025	97	-	97	99	73	73.7	-	26

2) 주요 결산사항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2.19)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경제구조개혁국 (7111-274))	220-01	2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 관리단)(7111-277)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14)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 기획예산처) (신규) (7111-27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79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경리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기획예산처)	-	-	-	-	10,007	10,007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0,007
· 기관운영경비	-	-	-	-	-	-	-	-	-	-	10,007

나. 사업설명자료 : 기획예산처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5)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신규) (7111-28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82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 기획예산처)	-	-	-	-	974	974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974
· 비공무원 급여	-	-	-	-	-	-	-	-	-	-	-	-	-	-
· 직무수행경비	-	-	-	-	-	-	-	-	-	-	-	-	-	-
· 기관운영경비	-	-	-	-	-	-	-	-	-	-	-	-	-	974
· 고용부담금	-	-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6)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 (신규) (7111-28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대변인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84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 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대변인실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	-	-	-	-	368	368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 산 현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368
· 기본경비	-	-	-	-	-	-	-	-	-	-	-	-	-	368

나. 사업설명자료 : 기획예산처 대변인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7)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 (신규) (7111-28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86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재정 관리국,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	-	-	-	-	526	526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8) 기획예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131-303)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3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기획예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획예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청년인턴 운영)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인사팀
	사업시행부처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기획예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	-	-	1,156	1,156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156
· 직원역량개발	-	-	-	-	-	-	-	-	-	-	283
· 조직 소통·융합	-	-	-	-	-	-	-	-	-	-	177
· 조직혁신	-	-	-	-	-	-	-	-	-	-	160
· 청년인턴 운영	-	-	-	-	-	-	-	-	-	-	411
· 연구·조사용역등	-	-	-	-	-	-	-	-	-	-	1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원 역량 개발) 직급별 교육 등을 통한 직원 전문성 강화 및 비업무적 자기계발 지원
- (조직 소통·융합) 조직 소통 및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 시너지 창출
- (조직혁신)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일·가정양립 조직문화 정착 지원
- (청년인턴 운영) 청년들의 정부 조직·정책 참여 활동 기회 제고를 위한 인턴 운영
- (연구·조사 등) 성과·능력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한 내부성과평가 제도 구축 및 기타 행정지원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무원인재개발법(법률 제13696호) 제13조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04.09.14., 제14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 민간부문 위탁을 통한 공무원 교육훈련 도입·추진
- 2005년부터 각 부처 공무원 교육훈련 도입 및 추진을 위한 기본사업비와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사업 시작
- 기획예산처 조직개편('26.1.2)에 따른 예산 분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년 신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15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기획예산처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	'26예산
☐ 기획예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	1,156
① 직원 역량 개발	-	-	283
② 조직 소통·융합	-	-	177
③ 조직 혁신	-	-	160
④ 청년인턴 운영	-	-	411
⑤ 연구·조사 용역 등	-	-	125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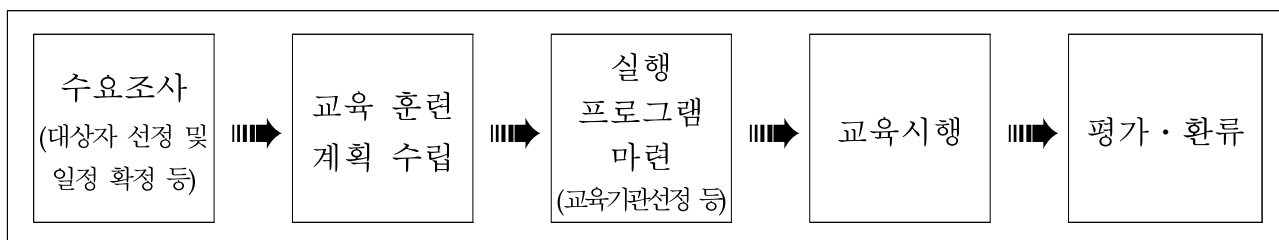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기획예산처 직원들의 정책 및 실무역량 강화
- 부서 간, 직급 간 소통 장려,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9) 기획예산 해외네트워크 구축 (신규) (7132-305)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5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획예산 해외네트워크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획예산 해외네트워 크 구축	소관부처	운영지원과(인사팀)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기획예산 해외네트워크 구축					501	501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501
· 해외기관파견	-	-	-	-	-	-	-	-	-	-	148
· 해외훈련	-	-	-	-	-	-	-	-	-	-	3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외기관 파견 등) 대외경제분야 전문가 육성 및 국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외기관 직무파견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지원
- (해외훈련) 한·영 양국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및 유럽 선진정책의 도입을 위해 공무원 유학훈련 시행구축 및 기타 행정지원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
-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외교통상부)
- 공무원여비규정 / 재외공관차량관리규정
- 한·영 정부간 양해각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파견명령 등 집행)

② 추진경위

- 해외기관 파견 : 매년 해외기관과 협의하여 인사혁신처 승인을 얻어 인원 파견
- 해외훈련 : 한·영 양국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경제기획원과 영국 외무성간 MOU가 체결된 후 시작('93년 7월~)
- 기획예산처 조직개편('26.1.2)으로 사업 분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1

- 기타: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해외기관 직무파견자, 해외훈련 파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해외파견) 해외기관 직무파견 직위(2개)에 대하여 재외공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귀·부임료, 주택임차료 및 의료보험료 지원
 - * 해외기관 파견직위(2개) × 약 74백만원 ≒ 148백만원
- ② (해외훈련) 교육훈련 파견 귀·부임에 따른 항공료 등 지급경비와 학비 등 소요자금
 - * 해외훈련자 수(6명) × 약 59백만원 ≒ 353백만원
 - ※ 실제 파견직위 및 해외훈련자 수 변동 가능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경제정책, 국제금융 등 선진기법 습득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경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 한영자금 재원에 의한 공무원 유학훈련으로 관련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한영양국 간 선린우호관계 증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외기관 파견 : 정원협의(행정안전부) → 국제기구와의 파견협의(외교부 파견협의)
→ 인사혁신처 파견승인 → 파견 발령
- 해외훈련 : 정원협의(인사혁신처) → 후보자 선발 및 추천 → 영국대사관 면접
및 어학시험 → 최종선발 → 파견발령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0) 기획예산(정보화) (신규) (7134-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4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정보화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획예산 (정보화)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기획예산(정보화)	-	-	-	-	15,831	15,831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5,831
· 응용시스템 구축	-	-	-	-	-	-	-	-	-	-	12,547
· 기반시스템 구축	-	-	-	-	-	-	-	-	-	-	2,006
· 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739
· 기타 운영 지원	-	-	-	-	-	-	-	-	-	-	139
· 기획예산처 AX 대전환 지원	-	-	-	-	-	-	-	-	-	-	400
○ 기능·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15,831
· 응용시스템 구축	-	-	-	-	-	-	-	-	-	-	12,547
· 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5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획예산(정보화)) 기획예산처 내부 직원용 정보시스템의 기획, 개발,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응용시스템 구축) 응용시스템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시스템 고도화·개발 수행
- (기반시스템 구축) 기반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개발 수행
-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등
- (기타 운영 지원) 운영 중인 시스템의 연간 라이선스 사용 비용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기획예산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5,83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기획예산처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획예산(정보화) (2026 요구) 15,831백만원, 순증

가. 응용시스템 구축 : (2026 요구) 12,547백만원, 순증

- (요구) 대표 홈페이지, 내부 업무포털 및 메신저 고도화,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제도 정비 (200백만원, 순증)

- (내용)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 평가 대응 및 우리부 정보시스템 DB의 데이터 품질 진단·인증 획득을 용역을 통해 수행

2) 업무포털 개편 (321백만원, 순증)

- (내용) 기획예산처 출범(26.1.2.) 시 긴급 이관·구축한 업무포털을 기획예산처 환경에 맞게 고도화

3)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844백만원, 순증)

- (내용) 다양한 기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영문 반응형 홈페이지(임시→최종)를 2단계로 구축

4) 기획예산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300백만원, 순증)

- (내용) 기획예산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 업무를 분석하여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5) 메신저 개편 사업 (424백만원, 순증)

- (내용) 노후화된 메신저('04년 도입)를 개편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이용 편의성 증대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6)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67백만원, 순증)

- (내용) 우리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진단 도구 도입

7) 데이터플랫폼 구축 (5,899백만원, 순증)

- (내용) 업무효율성 제고 및 지능형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예산처 전용 데이터플랫폼·생성형 AI」 구축

8) 문서작성 효율화 체계 구축 (857백만원, 순증)

- (내용) 업무망에서 한글SW에 AI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문서작성 환경 구축

9) DLP존 구축 (1,370백만원, 순증)

- (내용) 업무망에서 외부 상용AI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 구축

10) 모바일 근무환경 도입 (1,900백만원, 순증)

- (내용) 기획예산처의 모바일 근무환경 도입을 위한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11) 기획예산처 자료실 시스템 구축 (365백만원, 순증)

- (내용) 기획예산처 업무자료 저장 및 사용자간 공유를 위한 자료실 구축

나. 기반시스템 구축 : (2026 요구) 2,006백만원, 순증

- (요구) PC 및 모니터 도입,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이전·구축,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직원 업무 생산성 증대 및 개인정보 보호

1) PC, 모니터 도입 (139백만원, 순증)

- (내용) 청년인턴, 서울집무실에 필요한 PC, 모니터 도입

2) 전산장비 이전 (287백만원, 순증)

- (내용) 임시전산실(중앙동)에서 기획예산처 전산실(5동)로 전산장비 이전

3)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260백만원, 순증)

- (내용) 부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을 설치하고, 신규 오픈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추진

4) 전산장비 구축 (94백만원, 순증)

- (내용) 영상회의를 위한 전산장비 구매

5) 네트워크 구축 (208백만원, 순증)

- (내용) 기획예산처 청사(5동) 리모델링 후 네트워크 케이블 공사 및 서울청사 연계장비 구매

6) 5G 정부망 (1,018백만원, 순증)

- (내용) 업무망 및 인터넷망 이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5G 정부망 도입

다. 시스템 유지관리 : (2026 요구) 739백만원, 순증

- (요구) 기획예산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철저한 장애대응을 위해 청사내 상주 근무할 전문업체와 장기 계약 체결

1)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584백만원, 순증)

- (내용) 부내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2)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관리 (114백만원, 순증)

- (내용) 정보시스템의 보안점검 및 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 인건비

3) 기반시스템 유지보수 (41백만원, 순증)

- (내용) 정보시스템 HW, SW, PC, 영상장비 등의 유지보수비

라. 기타 운영 지원 : (2026 요구) 139백만원, 순증

- (요구) 전산소모품 구매,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정보화 운영지원 비용

1) 전산소모품 구매 (6백만원, 순증)

2) 각종 수수료 (62백만원, 순증)

3) 협의회 등 운영 (8백만원, 순증)

4) 전용회선 사용료 (63백만원, 순증)

마. 기획예산처 AX 대전환 지원 : (2026 요구) 400백만원, 순증
- (요구) 기획예산처 AI 전환을 위한 전문기관(NIA) 출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애발생시간 (단위: 분)	목표	-	-	-	-	738	기획예산처의 최근 3년('22~'24) 평균 실적의 3% 상향 설정	연간 총 장애발생시간	장애관리대장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획예산 관련 정보의 적기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수립 및 궁극적으로 조직에 기여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수준 향상
- 사용자 친화적 업무환경 구축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
- 인공지능 혁신(AX)에 발맞추어 데이터플랫폼 · 생성형 AI 구축을 통해 지능형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완 → 입찰 공고 → 제안서(기술)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 사업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없음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1)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신규) (7134-5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재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6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정보화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구축 운영(정보화)	사업시행주체	재정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	-	-	-	835	835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835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	-	-	-	-	-	-	-	-	-	835
○ 기능·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835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	-	-	-	-	-	-	-	-	-	8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기획예산 부문의 보안관제를 총괄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사전 예방
 - 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분석 등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관제
 -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 취약점 점검 등 침해 예방 활동
 - 보안 교육, 연계 기관 협의회, 위협 정보 공유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 1항

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정보·분석체계 운영

④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13.9.2) 대통령훈령 제316호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국가 통합보안관제체계 구축 계획*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추진과제(국정원, '09.3.9 통보)

② 추진경위

- '국가 통합보안관제체계 구축 계획' 발표('09.3)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방안 수립('09.3)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정보화전략 수립('09.10)
- 사이버안전센터 오픈('10.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835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산하 유관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획예산 사이버안전 센터 구축 (정보화)	출연	한국재정 정보원	835	100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④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 (2025 본예산) 해당없음 → (2026) 835백만원

가.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용역비(504.6백만원)

1) 보안관제 운영(379.2백만원)

- (내용) 전문업체를 통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운영

2)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125.4백만원)

- (내용) '10~'24년에 도입한(H/W·S/W)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 125.4백만원

나. 노후보안장비 교체 및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도입-임차료(111.8백만원)

1)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도입 임차(84백만원)

- (내용)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관제 대상 확대 및 대응 역량 강화

2)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성능개선 임차(27.8백만원)

- (내용) 안정적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장비 교체

다. 정보보호 컨설팅-일반연구비(15백만원)

- (내용) 정보보호 관리 현황분석, 인증 유지,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라. 노후 사무용 PC 교체-자산취득비(10.8백만원)

- (내용) 개원('16년) 시 도입하여 사용 중인 노후된 사무용 정보화기기 교체를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마. 기타운영비(192.8백만원)
1) 일반수용비(61.4백만원)
- (내용) 보안솔루션 라이선스 사용, 소모품 구매, 조달수수료 납부 등
2) 업무추진비(6백만원)
- (내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 공공요금및제세(111.4백만원)
- (내용) 전기료, 회선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 여비(9백만원)
- (내용) 연계기관 보안 컨설팅, 훈련 지원 등을 위한 출장비
5) 일반용역비(5백만원)
- (내용) 연계기관 협의회 운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관제시스템 안전가동률 (단위: %)	목표	-	-	-	-	99.9	전년과 동일 (최대 목표)	(가동계획시간 - 서비스중단시간) /가동계획시간 * 100	시스템의 가동 상태 및 시스템로그 검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탐지전파 신속도 (단위: %)	목표	-	-	-	-	99.9	전년과 동일 (최대 목표)	탐지 신속 전파 건수/ 전체 탐지 전파 건수 * 100	시스템 탐지 등록 자료 및 시스템로그 검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보안컨설팅, 사이버 모의훈련 및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제거 등을 통해 10개 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를 통해 실시간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각 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예산교부(출연금)	피출연기관
기획예산처	⇨	한국재정정보원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2) 정책품질관리(기획예산처) (신규) (7135-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12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 정책지원	정책품질관리(기획예산처)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책품질 관리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정책품질관리 (기획예산처)	-	-	-	-	127	127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 산 현 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127
· 정책품질관리	-	-	-	-	-	-	-	-	-	-	-	-	-	1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한 경제정책의 품질을 상시적으로 관리·개선
- 우리부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인 평가 및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관련회의 및 보고회 개최
- 국정과제와 협업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적시성 있는 정책동향 분석보고
- 협업·소통, 현장중심 정책집행을 통한 정책성과 향상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2호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2085호) 제4조6항

⑥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기획예산처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3.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4. 기획예산처 소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차관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5.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6. 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7. 처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8. 성과관리를 위한 장·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 업무평가 총괄
9. 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1.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12.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조정
1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이양 업무의 총괄
15. 처 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최초 사업 시작년도 : '82.10월(경제기획원)

- 추진배경 : 정부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으로써 정책실패 및 정책 불량품을 방지하는 총체적인 정보의 노력 및 활동

- 「정책품질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62호, '05.2.16) 제정 이후 : 정부정책의 형성·집행 및 평가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성과를 높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을 제고

- 정책변화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책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추세
- 개방·공유·소통·협력 가치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2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127	(1) 인건비(상용임금) : 41.3백만원 • 정책관리연구원(1인) 인건비 (2) 복리후생비 : 0.5백만원 (3) 일반수용비 : 49백만원 • 정부업무평가 운영 등 (4) 특근매식비 : 4.2백만원 •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등 (5) 임차료 : 1.2백만원 • 정책성과평가위 간담회 등 현안 회의 및 워크숍 (6) 기타운영비 : 9백만원 • 정책 MVP 우수 실·국 포상 등 (7) 국내여비 : 1.8백만원 • 국정현안점검회의 자료 보고, 국회 등 현안회의 참석 (8) 국외여비 : 2.4백만원 • 혁신 해외사례 조사연구 (9) 업무추진비 : 4.2백만원 • 정책품질관리 간담회 등 (10) 일반연구비 : 4.2백만원 •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11) 민간이전(고용부담금) : 8.2백만원 • 상용임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적립금 (12) 유형자산(자산취득비) : 1백만원 • 사무기기 등 구입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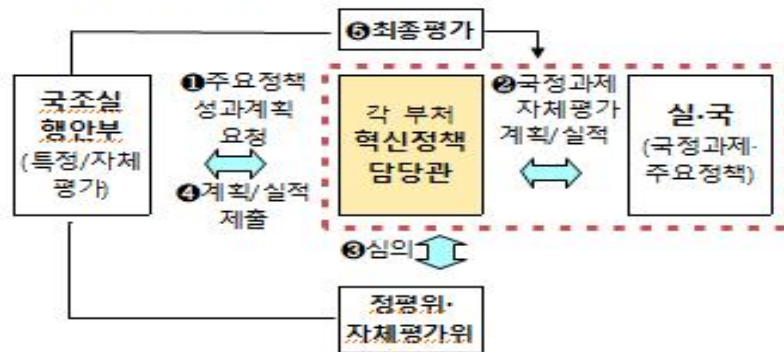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 확정(정평위) → 실국 성과지표 설정 → 세부 실행계획 이행 → 실적점검(국정과제/월별, 자체평가/반기별) → 연말 최종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자료 제출

※ 정부업무평가 체계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3) 정책연구개발(기획예산처) (신규) (7135-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14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 정책지원	정책연구개발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책연구개발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정책연구개발 (기획예산처)	-	-	-	-	653	653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이월액	제 외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653	
· 정책연구개발 (기획예산처)	-	-	-	-	-	-	-	-	-	-	-	-	6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정책품질을 개선
- 추진정책에 대한 사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 마련 가능
-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정책의 효과분석 가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절
- ② 추진경위 - 정부 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 정부 출연기관 기본사업비 일부를 소관부처의 정책연구비로 전환시킴('98.5.13., 기획예산위원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65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책연구비(주요 현안 관련): ('26) 540백만원
- (요구) 주요 현안 관련 정책연구
- (산출) 12건 × 45백만원(건당 연구용역수행비) = 540백만원
② 정책연구비(기타 현안 관련): ('26) 105백만원
- (요구) 기타 현안 관련 정책연구
- (산출) 3건 × 35백만원(건당 연구용역수행비) = 105백만원
③ 조정 : 8백만원
- 연구용역수행 사업 기간 등 조정 목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	-	-	-	88.3	보통과 만족 중간점수	기획재정 정책지원 만족도 설문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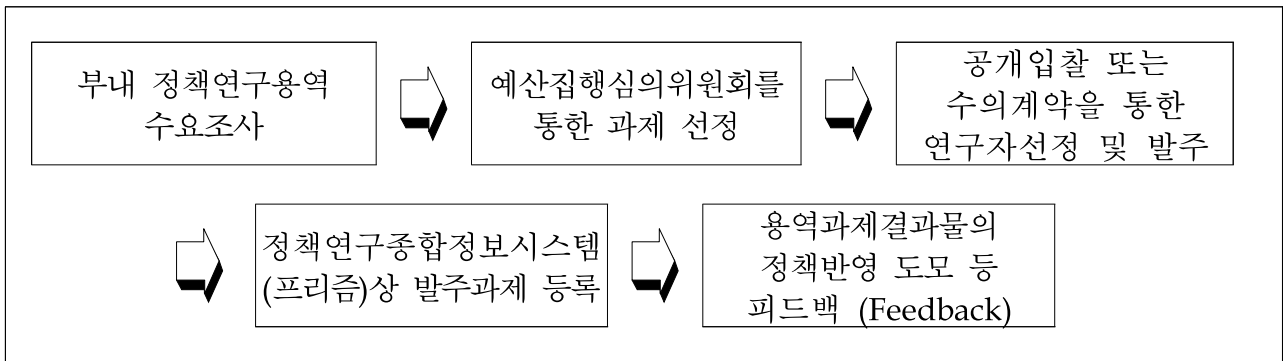
- 기획예산처 주요 정책개발 및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포괄적 연구개발비 편성

- 연구용역결과 활용도의 향상을 통해 정부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4) 정책홍보사업(기획예산처) (신규) (7135-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대변인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16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 정책지원	정책홍보사업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책홍보사업	소관부처	대변인실 디지털미디어기획팀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정책홍보사업 (기획예산처)	-	-	-	1,920	1,920	1,92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 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920
· 정책홍보사업	-	-	-	-	-	-	-	-	-	-	-	-	1,9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요 경제정책 등의 효과적·전문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및 소통 활성화 등 정책홍보 강화를 통한 정책신뢰도, 정책수용도 및 대외 신인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948호) 제5조제2항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2085호) 제2조제3항

② 추진경위

-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정부와 국민 간 정책소통’ 및 ‘쌍방향 정책 홍보’의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신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9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상용임금(110-03): 94백만원(연구원 2명 기본급 및 수당, 46백만원*9개월+43백만원*12개월)
- 일반수용비(210-01): 563백만원(온라인 매체광고, TV등 방송매체광고, KTX·지하철·옥외전광판 등), 홍보물 제작 115백만원(홍보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제작 등)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백만원(책자배송, 온라인모니터링 등)
- 특근매식비(210-05): 5백만원(홍보물 기획 및 제작, 뉴미디어 모니터링 등에 따른 특근매식비)
- 복리후생비(210-12): 1백만원(연구원 복리후생비)
- 일반용역비(210-14): 820백만원(소셜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270백만원, 유튜브 채널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촬영 및 송출 지원 550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250백만원(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디자인 개선등)
- 기타운영비(210-16): 2백만원(홍보콘텐츠 영상출연등 제작참여자 지급)
- 국내여비 및 해외업무여비(220-01, 220-02): 4백만원(영상촬영 및 회의참석 등)
- 사업추진비(240-01): 4백만원(홍보콘텐츠 발굴 및 기획 등)
- 고용부담금(320-09): 18백만원(연구원 상용임금에 따라 지급)
- 자산취득비(430-01): 19백만원(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 촬영·편집장비 구입 등)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신규)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각 SNS(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등) 특성에 맞게 홍보하여 홍보효과 상승
 - 수혜자 반응을 담은 콘텐츠(유튜브, 카드뉴스 등)를 적극 제작·확산 시켜 정책효능감 제고
 -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흥미·공감(共感) 유발 영상 확산으로 대(對)국민 정책 실감 효과 증대
 - 최신 홍보 트렌드 반영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이 경제 정책을 어려움 없이 접하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홍보 환경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자체추진

8) 각종 평가: 해당없음(신규)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쌍방향 소통) 실시
-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흥미·공감(共感) 유발 영상 확산으로 대(對)국민 정책 실감 효과 증대
- 청년·소상공인 등 정책 타겟별 맞춤형 메시지를 제작하고 정책수혜자의 반응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내 부 거 래

사 업 명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 (8010-801)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8010	801
명칭	명칭	회계간거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 자율계정) 전출	소관부처	지역예산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	-	-	-	4,878,032	4,878,032	4,878,032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제외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878,032
· 지특회계전출금	-	-	-	-	-	-	-	-	-	-	-	-	4,878,0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도별 자체수입 및 특별회계전입금 전망치를 제외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의 세출대비 세입 부족분 충당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추진경위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기획예산처 일반회계에서 지원
- '09.4.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역개발계정'으로 변경
- '14.1.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지역개발계정'에서 '생활기반계정'으로 변경
- '18.2.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생활기반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
- '23.6.9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23.7.10일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	-	-	-	4,878,03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5,206,275백만원중 교통에너지환경세분(328,243백만원) 차액분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9)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세입 부족분 지원

10)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1)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교통·에너지·환경세분) (8010-8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8010	802
명칭	명칭	회계간거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교통·에너지·환경세분)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 자율계정) 전출	소관부처	지역예산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교통·에너지· 환경세분)	306,516	634,194	634,194	328,243	328,243	△ 305,951	△ 48.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 산 현 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6,516	306,516	306,516	-	-	634,194	634,194	411,758	634,194	411,758	-	-	
· 지특회계전출금	306,516	306,516	306,516	-	-	634,194	634,194	411,758	634,194	411,758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추진경위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기획예산처 일반회계에서 지원
- '09.4.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역개발계정'으로 변경
- '14.1.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지역개발계정'에서 '생활기반계정'으로 변경
- '18.2.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생활기반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
- '23.6.9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23.7.10일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307,610	222,942	306,516	634,194	328,24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 2%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9)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세입 부족분 지원

10)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1)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07,610	-	307,610	-	-	-	307,610	307,610	100.0	100.0	-	-
2023	222,942	-	222,942	-	-	-	222,942	185,786	83.3	83.3	-	37,156
2024	306,516	-	306,516	-	-	-	306,516	102,172	33.3	33.3	-	-
2025	634,194	-	634,194	-	-	-	634,194	411,758	64.9	64.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8010-8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8010	803
명칭	명칭	회계간거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 자율계정) 전출	소관부처	지역예산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5,340,044	4,986,707	6,224,587	6,723,858	7,038,984	2,052,277	4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 산 현 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24587	6224587	5340044	-	-	6,723,858	6,723,858	3,594,510	6723888	3,594,510	-	-	7,038,984
· 지특회계전출금	6224587	6224587	5340044	-	-	6,723,858	6,723,858	3,594,510	6723888	3,594,510	-	-	7,038,9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도별 자체수입 및 특별회계전입금 전망치를 제외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의 세출대비 세입 부족분 충당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추진경위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기획예산처 일반회계에서 지원
- '09.4.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광역발전계정'으로 변경
- '14.1.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광역발전계정'에서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
- '18.2.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변경
- '23.6.9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23.7.10일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61,183	4,560,966	5,590,044	6,224,587	7,038,9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7,038,984백만원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9)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 세입 부족분 지원

10)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1)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551,256	9,927	3,561,183	-	-	-	3,561,183	3,561,183	100.0	100.0	-	-
2023	4,560,966	-	4,560,966	-	-	-	4,560,966	4,177,247	91.6	91.6	-	383,719
2024	5,590,044	-	5,590,044	-	-	-	5,590,044	4,658,279	83.3	83.3	-	-
2025	4,986,707	1,237,880	6,224,587	-	-	-	6,224,587	3,594,510	57.7	57.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전출 (8010-8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8010	804
명칭	명칭	회계간거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 자율계정) 전출	소관부처	지역예산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전출	255,596	282,902	282,902	403,914	403,914	121,012	42.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 산 현 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5,596	255,596	255,596	-	-	282,902	282,902	183,652	282,902	183,652	-	-	403,914
· 지특회계전출금	255,596	255,596	255,596	-	-	282,902	282,902	183,652	282,902	183,652	-	-	403,9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도별 자체수입 및 특별회계전입금 전망치를 제외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대비 세입 부족분 충당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추진경위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06.12.3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신설 ('07 회계연도부터 적용)
 - '09.4.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14.1.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18.2.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23.6.9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23.7.10일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253,525	233,754	255,596	282,902	403,91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403,914백만원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9)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세입 부족분 지원

10)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1)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3,525	-	253,525	-	-	-	253,525	253,525	100.0	100.0	-	-
2023	233,754	-	233,754	-	-	-	233,754	233,754	100.0	100.0	-	-
2024	255,596	-	255,596	-	-	-	255,596	212,997	83.3	83.3	-	-
2025	282,902	-	282,902	-	-	-	282,902	183,652	64.9	64.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전출 (8010-8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8010	804
명칭	명칭	회계간거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 자율계정) 전출	소관부처	지역예산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 정) 전출	44,856	49,521	49,521	64,403	64,403	14,882	3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 산 현 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4,856	44,856	44,856	-	-	49,521	49,521	32,178	49,521	32,178	-	-	64,403
· 지특회계전출금	44,856	44,856	44,856	-	-	49,521	49,521	32,178	49,521	32,178	-	-	64,4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도별 자체수입 및 특별회계전입금 전망치를 제외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대비 세입 부족분 충당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 추진경위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09.4.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14.1.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신설 ('15 회계연도부터 적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명칭 변경
- '18.2.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23.6.9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23.7.10일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584	52,332	44,856	49,521	64,40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계정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64,403백만원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9)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계정 세입 부족분 지원

10)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1)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1,584	-	71,584	-	-	-	71,584	71,584	100.0	100.0	-	-
2023	52,332	-	52,332	-	-	-	52,332	52,332	100.0	100.0	-	-
2024	44,856	-	44,856	-	-	-	44,856	37,380	83.3	83.3	-	-
2025	49,521	-	49,521	-	-	-	49,521	32,178	65.0	65.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Ⅱ. 복 권 기 금

사 업 명						
(1) 지방자치단체지원 (5331 - 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31	302
명칭	복권기금운영 (지자체법정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구분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복권기금협의회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지방자치단체 지원	169,863	190,639	190,639	206,199	206,199	15,560	8.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9,863	169,863	169,863	-	-	190,639	190,639	190,639	-	-	206,199
· 지방자치단체지원	169,863	169,863	169,863	-	-	190,639	190,639	190,639	-	-	206,1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7.267%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7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2,750	176,062	169,863	190,639	206,19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17개 시도
- 사업 수혜자 : 소외계층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자치 단체지원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206,199	법정배분 사업	복권법상 보조금법 미적용(복권법 제23조 5항)에 따라 보조율 등 재원분담, Matching 등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5위)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복권수익금 206,199백만원(①+②+③+④)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7.267%인
198,096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24년 성과평가 결과 가감조정 해당없음

* 성과평가 결과(5위)에 따라 기본배분액 가감 없음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697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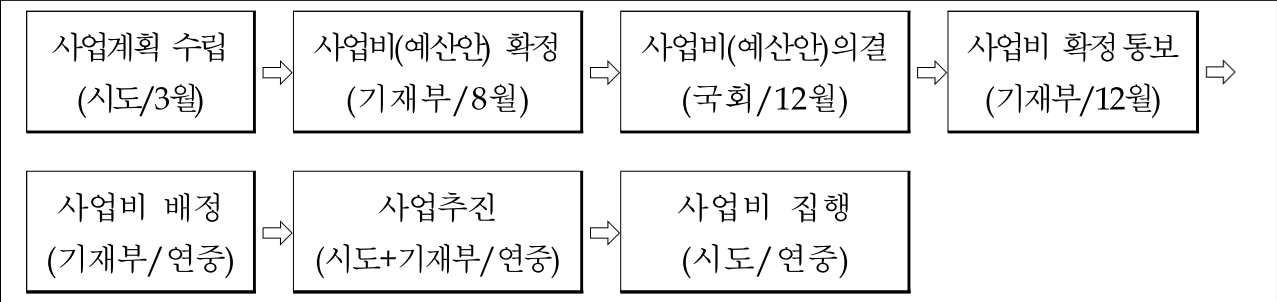
④ 추가배분 : 지역균형발전, 전년도 배분액 등을 감안하여 8,800백만원 추가배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152,750	-	152,750	152,750	152,750	100.0	-	-
2023	176,062	-	176,062	176,062	175,329	99.6	-	733
2024	169,863	-	169,863	169,863	169,863	100.0	-	-
2025	190,639	-	190,639	190,639	190,639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3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4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5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5332 - 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32	303
명칭	복권기금운영 (지자체법정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지원	179,600	190,825	190,825	197,336	197,336	6,511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600	179,600	179,600	-	-	190,825	190,825	190,825	-	-	197,336
·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저금리 융자지원	17,000	17,000	17,000	-	-	20,500	20,500	20,500	-	-	22,080
·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38,000	38,000	38,000	-	-	41,500	41,500	41,500	-	-	39,000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5,000	15,000	15,000	-	-	19,000	19,000	19,000	-	-	19,000
·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지원	31,000	31,000	31,000	-	-	26,529	26,529	26,529	-	-	28,551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49,964	49,964	49,964	-	-	55,463	55,463	55,463	-	-	66,97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9,636	9,636	9,636	-	-	11,754	11,754	10,036	-	-	12,024
· 희망제주 맞춤형 주거지원	9,000	9,000	9,000	-	-	10,036	10,036	11,754	-	-	9,060
· 영세관광사업체 저금리 융자지원	7,000	7,000	7,000	-	-	6,043	6,043	-	-	-	-
· 고령화 대응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3,000	3,000	3,000	-	-	-	-	6,043	-	-	-
· 제주 미래인재 육성 장학사업	-	-	-	-	-	-	-	-	-	-	6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7.267%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8호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7,851	176,999	179,600	190,825	197,3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주도개발 사업 특별회계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197,336	법정배분 사업	복권법상 보조금법 미적용(복권법 제23조 5항)에 따라 보조율 등 재원분담, Matching 등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197,336백만원(①+②+③) 배분
-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7.267%인 **198,097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 ② **가감조정** : **△24백만원**
-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737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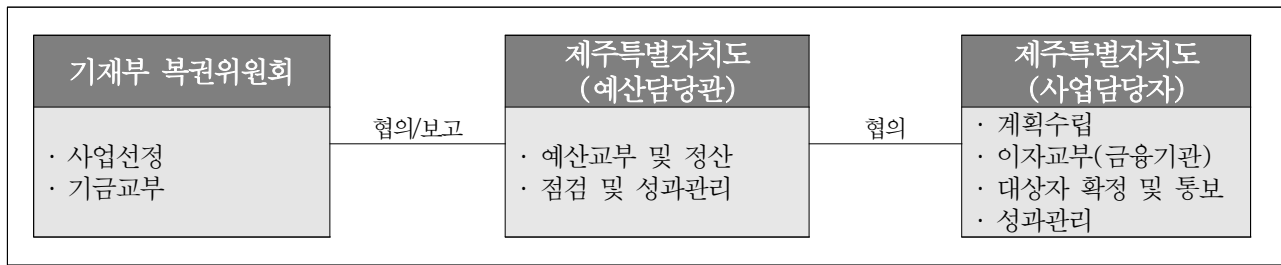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167,851	-	167,851	167,851	167,851	100.0	-	-
2023	176,999	-	176,999	176,999	176,999	100.0	-	-
2024	179,600	-	179,600	179,600	179,600	100.0	-	-
2025	190,825	-	190,825	190,825	190,82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3	- 계획변경 :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 1)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 (당초) 47,000백만원 ⇒ (변경) 48,170백만원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 (당초) 8,700백만원 ⇒ (변경) 7,950백만원 3) 생활환경 취약지구개선 일자리사업 : (당초) 27,160백만원 ⇒ (변경) 26,740백만원 * 복권위원회 변경승인 : 기금사업과-616(2023.11.24)호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4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5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기금관리비 (3578-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78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복권기금)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기금관리비	936	727	727	727	516	△211	△29.0

□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합계)	1,034	1,034	936	-	98	727	727	680	-	47	516
· 일 반 수 용 비 (210-01)	615	605	571	-	34	308	327	327	-	-	176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3	0.2	-	2.8	3	3	-	-	3	1
· 특 근 매 식 비 (210-05)	17	17	7	-	10	17	10	9	-	1	10
· 임차료(210-07)	26	26	18	-	8	26	17	17	-	-	21
· 유류비(210-08)	1	1	0.3	-	1	1	1	-	-	1	1
· 일 반 용 역 비 (210-14)	20	20	18	-	2	20	20	18	-	2	20
· 관 리 용 역 비 (210-15)	79	69	69	-	-	79	79	69	-	10	79
· 기 타 운 영 비 (210-16)	12	12	9	-	3	12	9	9	-	-	12
· 국내여비(220-01)	54	54	42	-	13	54	54	40	-	15	54
· 국외업무여비 (220-02)	48	48	24	-	24	48	48	33	-	14	48
· 사 업 추 진 비 (240-01)	44	44	44	-	-	44	44	43	-	-	44
· 관 서 업 무 비 (240-02)	14	14	14	-	-	14	14	14	-	-	14
· 정 책 연 구 비 (260-02)	30	50	50	-	-	30	30	30	-	-	30
· 출연금(350-01)	65	65	65	-	-	65	65	65	-	-	-
· 자 산 취 득 비 (430-01)	4	4	4	-	-	4	4	4	-	-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기금의 원활한 운영 및 복권위원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제④항
 -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7	1,999	1,034	727	5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6년 편성지침에 따라 '25년 기금운영비를 준용하되 완료소요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26계획	비고
<합 계>	516,000	
□ 운영비	321,812	
□ 여비	102,428	
□ 업무추진비	57,760	
□ 연구용역비	30,000	
□ 자산취득비	4,000	-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본 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77	-	1,077	1,077	1,019	94.6	-	58
2023	1,999	-	1,999	1,999	1,990	99.5	-	9
2024	1,034	-	1,034	1,034	936	90.6	-	98
2025	727	-	727	727	680	93.5	-	4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 복권사업비 (524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43	301
명칭	복권기금운영(일반)	복권판매사업	복권사업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복권사업비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수탁사업자 선정)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복권사업비	4,324,099	4,555,768	4,555,768	4,806,289	4,806,289	250,521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23,397	4,361,265	4,324,099	-	37,166	4,555,768	4,626,925	4,639,371	-	-	4,806,289
· 복권당첨금	3,784,577	3,819,523	3,790,460	-	29,063	3,994,610	4,054,134	4,065,789	-	-	4,218,712
· 판매수수료	423,623	429,373	425,263	-	4,110	446,208	457,671	458,058	-	-	471,247
· 위탁수수료	81,381	81,572	80,515	-	1,057	82,289	82,459	83,575	-	-	83,153
· 발행경비	33,786	30,767	27,840	-	2,927	32,630	32,630	31,928	-	702	33,149
· 자문단 운영비	30	30	21	-	9	31	31	21	-	10	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발행 및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금, 각종 수수료 등 관련 제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 ② 추진경위
 - 기관별 자율적 복권발행
 - 복권발행협의회('00.3), 복권발행조정위원회('02.3) 등 발행기관간 의견조정 기구 설립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04.1.29)
 - 복권위원회로 복권발행기관 일원화('04.4.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59,779	4,043,355	4,323,397	4,555,768	4,806,28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수탁사업자 선정)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복권당첨금: 4,218,712백만원
 - 복권 예상판매금액에 각 복권상품별 당첨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
- ② 판매수수료: 471,247백만원
 - 상품별 예상판매액의 복권판매점에 지급하는 경비로, 판매금액의 5.5~10.0%
- ③ 위탁수수료: 83,153백만원
 -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약정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
- ④ 발행경비: 33,149백만원
 - 인쇄·결합복권의 인쇄비용 및 복권감사시스템 운영(신규시스템 감리 포함) 등
 - 온라인복권과 결합복권 공개추첨을 위한 방송 비용
- ⑤ 복권시스템 및 복권사고 검증자문단 경비: 28백만원
 - 검증자문단 관련 수당 등

4) 사업효과: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복권의 발행·판매업무 위탁 : 복권위원회 → 수탁사업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여 사업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본 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788,501	-	3,788,501	3,859,779	3,765,371	97.6	-	94,407
2023	4,003,172	-	4,003,172	4,043,355	3,971,718	98.2	-	71,637
2024	4,323,397	-	4,323,397	4,361,265	4,324,099	99.1	-	37,166
2025	4,555,768	-	4,555,768	4,626,925	4,639,371	100.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복권발행계획」 상 예상판매금액과 실제판매금액간 차이에 따른 불용액(2.4%) 발생
2023	▪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복권발행계획」 상 예상판매금액과 실제판매금액간 차이에 따른 불용액(1.7%) 발생
2024	▪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복권발행계획」 상 예상판매금액과 실제판매금액간 차이에 따른 불용액(0.9%) 발생
2025	▪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획대비 판매가 더 이루어져 초과지출분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6.12.19.)	당첨금, 수수료	320	02	71,157	판매액 증가 예상에 따른 연동 지출분 증가
합 계				71,157	

사 업 명						
(5)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524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47	300
명칭	복권기금운영(일반)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9,131	11,048	11,112	11,634	11,634	586	5.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합계)	11,016	11,016	9,131	-	1,885	11,048	11,112	11,112	11,112	11,112	11,112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1,016	11,016	9,131	-	1,885	11,048	11,112	11,112	11,112	11,112	11,1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매출액의 일부를 도박중독예방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으로 납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
- ② 추진경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중독치유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13년부터 사행산업자는 순매출액의 0.5% 범위내('25년 현재 0.35%)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담금 납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3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991	9,693	11,016	11,048	11,6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사행산업 중독·치유 대상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사행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의2에 따라 순매출액의 0.5% 범위 내('25년 현재 0.35%)에서 사행산업 중독의 예방·치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담금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납부
 - '25년 복권 판매추이 및 향후 감면사항을 감안, '24년 대비 +5.3% 증액 요구
 - '25년 복권 예상 순매출액* 36,933억원 × 시행령 0.35% × 90%(10%감면)
- * 복권 예상 순매출액 = 예상 매출 76,879억원 - 당첨금 39,946억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7,790백만원 집행 및 1,201백만원 불용
2023	8,717백만원 집행 및 976백만원 불용
2024	9,131백만원 집행 및 1,885백만원 불용
2025	전액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행산업 중독치유사업에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복권위원회사무처 직접 시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본 예산	추 경 증 감 액	추 경					
2022	8,991	-	8,991	8,991	7,790	86.6	-	1,201
2023	9,693	-	9,693	9,693	8,717	89.9	-	976
2024	11,016	-	11,016	11,016	9,131	82.9	-	1,885
2025	11,048	-	11,112	11,112	11,112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1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202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2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202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3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202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4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 획 변 경 사 유
(2025.8.28)	사행 산업 중독 예방 부담금 (56247-300)	210	02	11,11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확정· 통보('25.5월)한 “2025년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반영 필요
합 계				11,112	

사 업 명
(6)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8910-89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0	890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과학기술 진흥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과학기술 진흥기금 전출	125,055	137,447	137,447	114,974	114,974	△22,473	△1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 월 액 제 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5,055	125,055	125,055	-	-	137,447	137,447	137,447	137,447	137,447	137,447	-	-	114,974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25,055	125,055	125,055	-	-	137,447	137,447	137,447	137,447	137,447	137,447	-	-	114,9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2.583%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100분의 12.583

-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0,527	109,957	125,055	137,447	114,9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114,974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2.583%인 **144,359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28,872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513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과학기술진흥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복권기금 (114,974백만원)	=> (114,974 백만원)	과학기술진흥기금 (114,974백만원)	=> (114,974 백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114,974백만원)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0,527	-	130,527	-	130,527	101,244	77.6	77.6	-	29,283
2023	109,957	-	109,957	-	109,957	109,957	100.0	100.0	-	-
2024	125,055	-	125,055	-	125,055	125,055	100.0	100.0	-	-
2025	137,447	-	137,447	-	137,447	137,447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과학기술진흥기금전출사업 중 여유자금운용으로 편성된 29,283백만원 미전출 불용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7)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8911-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1	89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국민체육 진흥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총괄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국민체육 진흥기금 전출	91,954	92,044	92,044	94,808	94,808	2,764	3.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계 획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예 산 현 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91,954	91,954	91,954	-	-	92,044	92,044	92,044	92,044	92,044	-	-	94,808
· 국민체육진흥 기금 전출	91,954	91,954	91,954	-	-	92,044	92,044	92,044	92,044	92,044	-	-	94,8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0.371%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2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100분의 10.371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3,814	91,450	91,954	92,044	94,8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94,808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0.371%인 **118,982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23,796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377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9)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0)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3,814	-	93,814	-	93,814	93,814	100.0	100.0	-	-
2023	91,450	-	91,450	-	91,450	91,450	100.0	100.0	-	-
2024	91,954	-	91,954	-	91,954	91,954	100.0	100.0	-	-
2025	92,044	-	92,044	-	92,044	92,044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8)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8912-8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2	892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근로복지 진흥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 진흥기금 전출	63,513	61,699	61,699	60,628	60,628	△1,071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당 초	수 정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63,513	63,513	63,513	-	-	61,699	61,699	61,699	61,699	61,699	61,699	-	-	60,628
· 근로복지진흥 기금 전출	63,513	63,513	63,513	-	-	61,699	61,699	61,699	61,699	61,699	61,699	-	-	60,6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5.31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 100분의 5.310

-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9,758	64,400	63,513	61,699	60,6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60,628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5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5.310%인 **60,919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30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261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근로복지진흥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9)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0)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59,758	-	159,758	-	159,758	159,758	100.0	100.0	-	-
2023	64,400	-	64,400	-	64,400	64,400	100.0	100.0	-	-
2024	63,513	-	63,513	-	63,513	63,513	100.0	100.0	-	-
2025	61,699	-	61,699	-	61,699	61,69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사 업 명						
(9) 주택도시기금 전출 (8913-89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3	893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주택도시기금 전출	주택도시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주택도시 기금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주택도시기금 전출	450,040	450,040	450,040	400,000	400,000	△50,040	△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0,040	450,040	450,040	-	-	450,040	450,040	450,040	-	-	400,000
· 주택도시기금 전출	450,040	450,040	450,040	-	-	450,040	450,040	450,040	-	-	4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1호,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 ② 추진경위

- '05. 4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 발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
- '06. 8 :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확대, 전세임대 40,300호(연간 5,800호)
- '08. 5 : '08년 주택종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 : '08~'12년까지 총 46,800호 공급
- '10. 9 : 「8·15 경축사 후속조치」,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10년~'12년까지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
- '11. 1 :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 '12년 주택종합계획,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16년 2.7만호 → 3.1만호)

- '16. 4 :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17. 4 :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 '17. 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8~'22년간 임차형 17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22. 8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3~'27년간 전세임대 15만호 이상 공급
- '24. 8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25~'26년간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 1만호 공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0,397	450,040	450,040	450,040	400,000

- 기타: '26년 전세임대 4.5만호 공급 추진 중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주택도시기금 전출 '26 요구금액 : 400,000백만원, △11.1 %>

① 다가구 매입임대 : ('25) 135,000→ ('26요구) -, △100 %

- (요구) 매입임대 공급을 위한 지원 예산을 전세임대 공급 지원으로 일원화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 : ('25) 315,040→ ('26요구) 400,000백만원, 26.9%

- (요구) 매입임대 공급 지원 예산을 전세임대 공급 지원으로 일원화하여, 전세임대 공급 지원(물량) 확대
- (산출) 4,300호 × 93백만원/호 × 1.00(지원율)
 - * 사업물량 : ('25년) 3,388호 → ('26요구) 4,300호(912호 증)
 - * 지원단가 : ('25년) 93백만원/호 → ('26요구) 93백만원/호(-%)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다가구매입 취약계층 입주율 (단위: %)	목표				80		당해연도 LH 매입임대 일반유형 입주 물량 중 취약계층(1순위 및 저소득 장애인) 입주 물량	LH 일반유형 1순위 및 저소득 장애인 입주 물량 / LH 일반유형 입주 물량	국토부 내부자료 (LH 월별 실적보고자료)
	실적				-	-			
	달성도				-	-			
전세임대 취약계층 입주율 (단위: %)	목표				89	89	당해연도 LH 전세임대 일반유형 입주 물량 중 취약계층(1순위 및 저소득 장애인) 입주 물량	LH 일반유형 1순위 및 저소득 장애인 입주 물량 / LH 일반유형 입주 물량	국토부 내부자료 (LH 월별 실적보고자료)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다가구매입 19,453호, 전세임대 44,804호 지원
2023	◦ 다가구매입 10,673호, 전세임대 38,886호 지원
2024	◦ 다가구매입 47,398호, 전세임대 44,609호 지원
2025	◦ 다가구매입 65,000호, 전세임대 48,000호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지속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기관별 요청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 → 최종적으로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400,000백만원)	=> (400,000백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00,000백만원)	=> (400,000백만원)	LH, 지자체 등 약 40개 기관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50,397	-	550,397	550,397	550,397	100.0	-	-
2023	450,040	-	450,040	450,040	450,040	100.0	-	-
2024	450,040	-	450,040	450,040	450,040	100.0	-	-
2025	450,040	-	450,040	450,040	450,04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8914-89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 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4	894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예산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전출	72,752	82,620	82,620	83,308	83,308	688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계 획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예 산 현 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이월액 제외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752	72,752	72,752	-	-	82,620	82,620	82,620	82,620	82,620]	-	-	83,308
· 중소기업 창업및진흥 기금 전출	72,752	72,752	72,752	-	-	82,620	82,620	82,620	82,620	82,620]	-	-	83,3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6.356%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5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100분의 6.356

-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666	78,907	72,752	82,620	83,3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및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83,308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6.356%인 72,919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10,687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298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4,666	-	74,666	-	74,666	74,666	100.0	100.0	-	-	-	-
2023	78,907	-	78,907	-	78,907	78,907	100.0	100.0	-	-	-	-
2024	72,752	-	72,752	-	72,752	72,752	100.0	100.0	-	-	-	-
2025	82,620	-	82,620	-	82,620	82,620	100.0	100.0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1)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전출 (8916-89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6	896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보훈기금 전출	보훈기금(국가유공자 지원자금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훈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보훈기금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계정) 전출	7,276	6,886	6,886	9,518	9,378	2,492	36.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월액 제외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76	7,276	7,276	-	-	6,886	6,886	6,886	6,639	6,886	6,639	-	247	9,378
· 보 훈 기 금 (국 가 유공자지원자금 계정) 전출	7,276	7,276	7,276	-	-	6,886	6,886	6,886	6,639	6,886	6,639	-	247	9,3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2호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② 추진경위

- (중상이자보조기기 지급) '11년부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해 보행 기능이 상실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로 있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휠체어 등 보조기기 지급
- (보훈복지시설 건립) '06년부터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전주보훈요양원 등 8개소 건립)
-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 '24년부터 국가안보 및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제복 근무자의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54	8,498	7,276	6,886	9,3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중상이자 보조기기 지급 : 2,472백만원
- ② 보훈복지시설 건립 : 6,031백만원
- ③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 875백만원
- ※ 복권기금 조성 비율 100% 사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복권기금 (9,378백만원)	=> (9,378 백만원)	보훈기금(국가 유공자지원자금 계정) 전출 (9,378백만원)	=> (8,503* 백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8,503백만원)

* 9,378백만원 중 국가보훈부 직접 사업인 875백만원(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사업)을 제외한 8503백만원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출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154	-	2,154	-	2,154	2,154	100.0	100.0	-	-
2023	8,498	-	8,498	-	8,498	8,498	100.0	100.0	-	-
2024	7,276	-	7,276	-	7,276	7,276	100.0	100.0	-	-
2025	6,886	-	6,886	-	6,886	6,639	96.4	96.4	-	24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보훈복지시설 건립 사업 : 247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2) 보훈기금(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계정) 전출 (8916-89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6	897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보훈기금 전출	보훈기금(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훈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보훈기금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계정) 전출	14,800	14,667	14,667	13,684	13,684	△983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800	14,800	14,800	-	-	14,667	14,667	14,667	14,667	14,667	14,667	-	-	13,684
· 보 훈 기 금 (참 전 유공자·제대군인 지 원 자 금 계 정) 전출	14,800	14,800	14,800	-	-	14,667	14,667	14,667	14,667	14,667	14,667	-	-	13,6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2호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② 추진경위

- '15년부터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이상 복합질환자에게 주 3회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개시(사회복지사 26명, 재가보훈실무관 378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015	14,421	14,800	14,667	13,6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참전유공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 13,684백만원
※ 복권기금 조성 비율 100% 사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복권기금 (13,684백만원)	=> (13,684 백만원)	보훈기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계정계정) 전출 (13,684백만원)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154	-	2,154	-	2,154	2,154	100.0	100.0	-	-
2023	8,498	-	8,498	-	8,498	8,498	100.0	100.0	-	-
2024	7,276	-	7,276	-	7,276	7,276	100.0	100.0	-	-
2025	6,886	-	6,886	-	6,886	6,639	96.4	96.4	-	24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3) 양성평등기금 전출 (8917 - 89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7	897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양성평등기금 전출	양성평등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양성평등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양성평등기금 전출	737,764	776,926	776,926	805,290	806,586	29,660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합계)	740,303	740,303	737,764	-	2,539	776,926	776,926	776,589	-	337	806,586
· 양성평등기금 전출	740,303	740,303	737,764	-	2,539	776,926	776,926	776,589	-	337	806,5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3항 3호

-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6,340	678,630	758,242	776,926	806,5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572,246백만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2,301백만원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4,667백만원
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 151,379백만원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21,137백만원
6.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지원 : 46,261백만원
7.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 8,59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595,617	-	595,617	595,617	595,576	99.9	-	41
2023	680,446	△4,814	675,632	675,632	630,008	93.3	-	45,624
2024	758,242	△17,939	740,303	740,303	737,764	99.7	-	2,539
2025	776,926	-	776,926	776,926	776,589	100.0	-	3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41백만원/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3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45,624백만원/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4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2,539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5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337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8918-89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8	898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문화예술진흥 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문화예술진흥 기금전출	248,786	267,707	267,707	280,871	280,871	13,164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8,786	248,786	248,786	-	-	267,707	267,707	267,707	-	-	280,871
· 문화예술진흥 기금 전출	248,786	248,786	248,786	-	-	267,707	267,707	267,707	-	-	280,8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3,868	235,674	248,786	267,707	280,87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전국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280,871백만원>

① 통합문화이용권 : 276,516백만원

- 카드사업비 : 271,624백만원
 - (전체지원금) 15만원 x 2,558,324명 x 70% = 268,624백만원
 - (청소년기·생애전환기 대상 추가 지원금) 1만원 x 428,571명 x 70% = 3,000백만원
- 운영비 : 4,892백만원

②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4,355백만원

- 사업비 : 3,575백만원
- 운영비 : 7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복권기금 (280,871백만원)	=> (280,871 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80,871백만원)	=> (280,871 백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17개 시도 (280,871백만원)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3,868	-	173,868	173,868	173,868	100.0	-	-
2023	243,896	-	243,896	243,896	235,674	96.6	-	8,222
2024	248,786	-	248,786	248,786	248,786	100.0	-	-
2025	267,707	-	267,707	267,707	267,70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5)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8919 - 89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9	899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양성평등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양성평등기금 전출	148,383	151,259	151,259	128,052	129,012	△22,247	△1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합계)	149,596	149,596	148,383	-	1,213	151,259	151,259	150,507	-	752	129,012
· 청소년육성 기금 전출	149,596	149,596	148,383	-	1,213	151,259	151,259	150,507	-	752	129,0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채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3항 3호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7,638	149,473	149,596	151,259	129,0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교육 : 5,097백만원
- ②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74,419백만원
- ③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 36,755백만원
- ④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12,74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137,638	-	137,638	137,638	135,750	98.6	-	1,888
2023	149,817	-	149,817	149,817	149,473	99.8	-	344
2024	149,596	-	149,596	149,596	148,383	99.2	-	1,213
2025	151,259	-	151,259	151,259	150,507	99.5	-	75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1,888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3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344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4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1,213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5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752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6)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8920-89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20	890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국가유산 보호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유산 보호기금 전출	152,611	144,815	144,815	170,646	170,646	25,831	17.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월액 제외		이 월 예산액	불 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2,611	152,611	152,611	-	-	144,815	144,815	144,815	144,815	144,815	144,815	-	-	170,646
·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152,611	152,611	152,611	-	-	144,815	144,815	144,815	144,815	144,815	144,815	-	-	170,6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4.286%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6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 100분의 14.286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0,643	158,339	152,611	144,815	170,64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170,646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4.286%인 **163,897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7,375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626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국가유산보호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40,643	-	140,643	-	140,643	140,643	100.0	100.0	-	-
2023	158,339	-	158,339	-	158,339	158,339	100.0	100.0	-	-
2024	152,611	-	152,611	-	152,611	152,611	100.0	100.0	-	-
2025	144,815	-	144,815	-	144,815	144,815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7) 응급의료기금 전출 (8923 - 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23	89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응급의료기금 전출	응급의료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응급의료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소방청 119구급과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응급의료기금 전출	1,610	6,440	6,440	5,635	5,635	△805	△12.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10	1,610	1,610	-	-	6,440	6,440	6,440	-	337	5,635
· 응급의료기금 전출	1,610	1,610	1,610	-	-	6,440	6,440	6,440	-	337	5,6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 제17조제5항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17조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50	5,635	1,610	6,440	5,6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자연 및 사회재난에 피해가 있는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 응급의료기금 전출(특수목적 구급차량 구입 지원)
5,635백만원 = 230백만원x49대x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5,750	-	5,750	5,750	5,750	100.0	-	-
2023	5,635	-	5,635	5,635	5,635	100.0	-	-
2024	1,610	-	1,610	1,610	1,610	100.0	-	-
2025	6,440		6,440	6,440	6,44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8) 기후대응기금 전출 (8924-88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24	898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기후대응기금 전출	기후대응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후대응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기후대응기금 전출	108,333	107,593	107,593	106,893	106,893	△700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333	108,333	108,333	-	-	107,593	107,593	107,593	-	-	106,893
· 기후대응기금 전출	108,333	108,333	108,333	-	-	107,593	107,593	107,593	-	-	106,8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에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 ② 추진경위
 - '23년 : 기금운용계획 변경*(+86억원)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 추진
 - '24년 : 사회복지시설 대상 냉방지원(에어컨 보급) 신규 추진
 - '25년 : 「국정과제(39-3) 햇빛·바람연금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개선」 포함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3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95,646	108,333	107,593	106,893

- 기타: '26년 저소득 취약계층 56,000가구 등 지원 목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등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2025 당초 계획) 107,593백만원 → 106,893백만원, 700백만원 감액

① 시공·물품지원 : ('25) 90,230백만원 → ('26요구) 90,075백만원 (△155백만원)

- (산출) 가구 : 3.7만 가구 × 평균 시공단가 243백만원 = 89,910백만원
- 시설 : 15개소 × 평균 시공단가 11백만원 = 165백만원

② 냉방지원 : ('25) 14,760백만원 → ('26요구) 14,058백만원 (△702백만원)

- (산출) 가구 : 1.9만가구 × 0.72백만원 = 13,680백만원
- 시설 : 105개소 × 3.6백만원 = 378백만원

③ 사업운영비 : ('25) 1,023백만원 → ('26요구) 1,028백만원 (+5백만원)

④ 에너지진단 : ('25) 500백만원 → ('26요구) 500백만원 (전년 同)

⑤ 인건비 : ('24) 1,080백만원 → ('25요구) 1,232백만원 (+15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에너지효율개선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tCO ₂ eq)	목표	신규	35,506	-	17,526*	19,739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성과분석 보고서(3개년 (‘22~’24) 평균) 및 ’26년 지원 목표 가구	단위면적당 에너지절감량 × 표준면적 × 연료별 온실가스 환산계수	에너지진단 및 기술지원 연구용역
	실적	36,511	40,032	-	-	-			
	달성도	-	112.7%	-	-	-			
에너지사용량 절감률 (단위: %)	목표	-	신규	21%	-	-	-	사업 전·후 단위 면적당 연간 난방에너지 소요량 절감률을 분석	에너지진단 및 기술지원 연구용역
	실적	22.5%	22.4%	22.6%	-	-			
	달성도	-	-	107.6%	-	-			
에너지효율개선 난방지원 가구 수 (단위: 가구)	목표	-	신규	36,000	36,000	37,000	지원 목표 가구 수	에너지효율 개선 난방지원 가구 수	사업관리시스 템을 통한 집계
	실적	29,444	35,386	36,977	-	-			
	달성도	-	-	102.7%	-	-			

* ’23년까지는 전력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으나, ’25년부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료별(도시가스 및 등유) 감축효과를 산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 시공·물품지원 5.1만 가구 지원 - 사회복지시설 202개소 지원, 에어컨 15,140가구 지원 - 연말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한 지원 소요에 대응하는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24.3월까지로 연장 및 1,528가구 지원
2024	- 에어컨 1.8만대(가구, ’24.7월 완료) 및 500개소(시설, ’24.8월 완료) 적기 지원 목표 달성 - 저소득가구 난방 36,977가구 및 냉방 18,034가구, 사회복지시설 난방 272개소 및 냉방 532개소 지원 완료 - 연말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한 지원 소요에 대응하는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25.2월까지로 연장 및 676가구 지원
2025	- 에어컨 1.8만대(가구, ’25.7월 완료) 및 500개소(시설, ’25.6월 완료) 목표 달성 - 냉·난방 신청서 통합 등을 통해 저소득가구 난방 36,592가구 및 냉방 18,073가구, 사회복지시설 난방 321개소 및 냉방 534개소 연내 적기 지원 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에너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고효율 보일러·에어컨 교체(보급)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및 사용량 절감 등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복권기금 (106,893백만원)	=> (106,893 백만원)	기후대응기금 (106,893백만원)	=> (106,893 백만원)	한국에너지재단 (106,893백만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 저소득층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것
 - (조치)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통해 냉난방기 단독 신청 가구에도 단열·창호 등을 적극 연계 지원 추진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본 예산	추 경 증 감 액	추 경					
2022	-	-	-	-	-	-	-	-
2023	90,975	4,671	95,646	95,646	95,646	100.0	-	-
2024	108,333	-	108,333	108,333	108,333	100.0	-	-
2025	107,593	-	107,593	107,593	107,59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9) 영화발전기금 전출 (8925-8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25	84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영화발전기금 전출	영화발전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영화발전 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영화발전 기금 전출	5,400	4,497	4,497	1,300	1,300	△3,197	△71.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400	5,400	5,400	-	-	4,497	4,497	4,497	-	-	1,300
· 영화발전기금 전출	5,400	5,400	5,400	-	-	4,497	4,497	4,497	-	-	1,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

② 추진경위

- 2024년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복권기금 최초 전출
- 2025년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복권기금 2년 연속 전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5,400	4,497	1,3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 (2025 당초 계획) 4,497백만원 → (2026 계획) 1,300백만원, 3,197백만원 감액
- (요구)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글자막·화면해설영화 제작에 필요한 적정예산 요구
 - (산출) 한글자막·화면해설 영화 제작 1,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복권기금 (1,300백만원)	=> (1,300 백만원)	영화발전기금 (1,300백만원)	=> (1,300 백만원)	영화진흥위원회 (1,300백만원)

8) 각종 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5,400	-	5,400	5,400	5,400	100.0	-	-
2025	4,497	-	4,497	4,497	4,49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9021 - 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계정명	010	014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21	891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탁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0,000	158,231	158,231	300,000	300,000	141,769	89.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000	70,000	70,000	-	-	158,231	158,231	158,231	-	-	3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0,000	70,000	70,000	-	-	158,231	158,231	158,231	-	-	3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부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2) 사업개요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② 추진경위 : '12년부터 공자 예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355,493	74,016	70,000	158,231	3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 300,000백만원 예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85,493	△30,000	355,493	355,493	298,693	84.0	-	56,800
2023	74,016	-	74,016	74,016	74,016	100.0	-	-
2024	70,000	-	70,000	70,000	70,000	100.0	-	-
2025	158,231	-	158,231	158,231	158,231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해당없음

사 업 명
(21) 한국은행예치 (9704 - 9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계정명	010	014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4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은행 예치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한국은행 예치	1,950	100	100	100	1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9,825	149,825	205,411	-	-	155,341	130,032	59,507	-	-	211,817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49,825	149,825	205,411	-	-	155,341	130,032	59,507	-	-	211,8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기금 수입·지출을 위한 한국은행 계좌 운용
 - 연말 기금지원사업비 반납액 등 한국은행 예치금 잔액

2) 사업개요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00	100	100	100	1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12월 29일 이후에 한국은행 계좌에 반납되어 인출하지 못하는 불용액 예상 잔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0	-	100	100	342	342.0	-	-
2023	100	-	100	100	269	269.0	-	-
2024	100	-	100	100	1950	1,950.0	-	-
2025	100	-	100	100	185	185.0	-	-

2) 주요 결산사항: 해당없음

사 업 명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4 - 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계정명	010	014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4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5,411	155,341	130,032	215,933	211,817	56,476	36.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9,825	149,825	205,411	-	-	155,341	130,032	59,507	-	-	211,817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49,825	149,825	205,411	-	-	155,341	130,032	59,507	-	-	211,8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기금 여유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기금 여유자금 관리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여유자금 운용

2) 사업개요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21,343	54,874	160,191	137,771	215,9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6년도 수입-지출 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본 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8,354	△37,011	21,343	21,343	95,921	449.4	-	-
2023	39,311	15,563	54,874	54,874	169,314	308.6	-	-
2024	160,191	△10,366	149,825	149,825	205,411	137.1	-	-
2025	155,341	△25,309	130,032	130,032	209,159	160.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승인 (2025.5.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	03	△15,000	- 햇살론유스 사업 보증채원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
국회승인 (2025.7.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	03	△2,570	-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
협의변경 (2025.8.2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	03	△38,464	- 재난적의료비 지원 조건확대 및 사업 홍보 강화 등에 따른 소요 급증으로 '25.8월 중 사업비 부족 예상 및 시행 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확정·통보('25.5월)한 “2025년 시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반영 필요
자체변경 (2025.12.1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	03	△1,696	- 연말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증액 변경 필요
자체변경 (2025.12.1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	03	+32,421	- 복권판매수입 증가에 따라 연동되는 복권사업비 및 여유자금운용 규모 조정
합 계				△25,309	

사 업 명	
(23)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9705 - 97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계정명	010	014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5	974
명칭	여유자금운용	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637,729	685,219	685,219	759,970	759,970	74,751	10.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1,955	631,955	637,729	-	-	685,219	685,219	717,928	-	-	759,970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631,955	631,955	637,729	-	-	685,219	685,219	717,928	-	-	759,9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 연금식 복권 도입('11)에 따른 당첨금 지급 준비금은 자금 성격상 일반 여유자금과 엄격히 구분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항목으로 분리하고 외부전문운용기관에 위탁 운영

- 수탁사업자는 향후 지급해야 할 총 당첨금(1등 20년간 16.8억원, 2등및보너스 10년간 1.2억원)의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복권위원회에 예탁

* 최근 3개월('24.1~3월) 국고채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평균
: 1등 1,224백만원, 2등및보너스 102백만원

** 연금복권당첨금의 안정적 장기운용을 위해 복권위원회(복권기금)가 예수

*** 1등 20년간 16.8억원(월 7백만원), 2등및보너스 10년간 1.2억원(월 1백만원) 지급

※ '20년 연금복권제도 개편('20.4.24)에 따라 연금복권 720⁺ 추첨 시작('20.5.7)

1등 : 매월 5백만원 → 매월 7백만원 / 2등및보너스 등위 신설 : 매월 1백만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당첨금 등)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당첨금의 분할 지급) ②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연금식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4조
기금 재무관은 수탁사업자가 납부한 지급준비금을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함

② 추진경위 : '11.7.1 연금식 복권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2,374	571,750	631,955	685,219	759,9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6년말 예상 연금당첨금 지급준비금은 685,219백만원
(= '25년말 예상 운용액 685,219백만원 + '25년 예상 적립금 165,958백만원
- '26년 예상 교부금 93,204백만원 + '26년 예상 운용 수익금 1,99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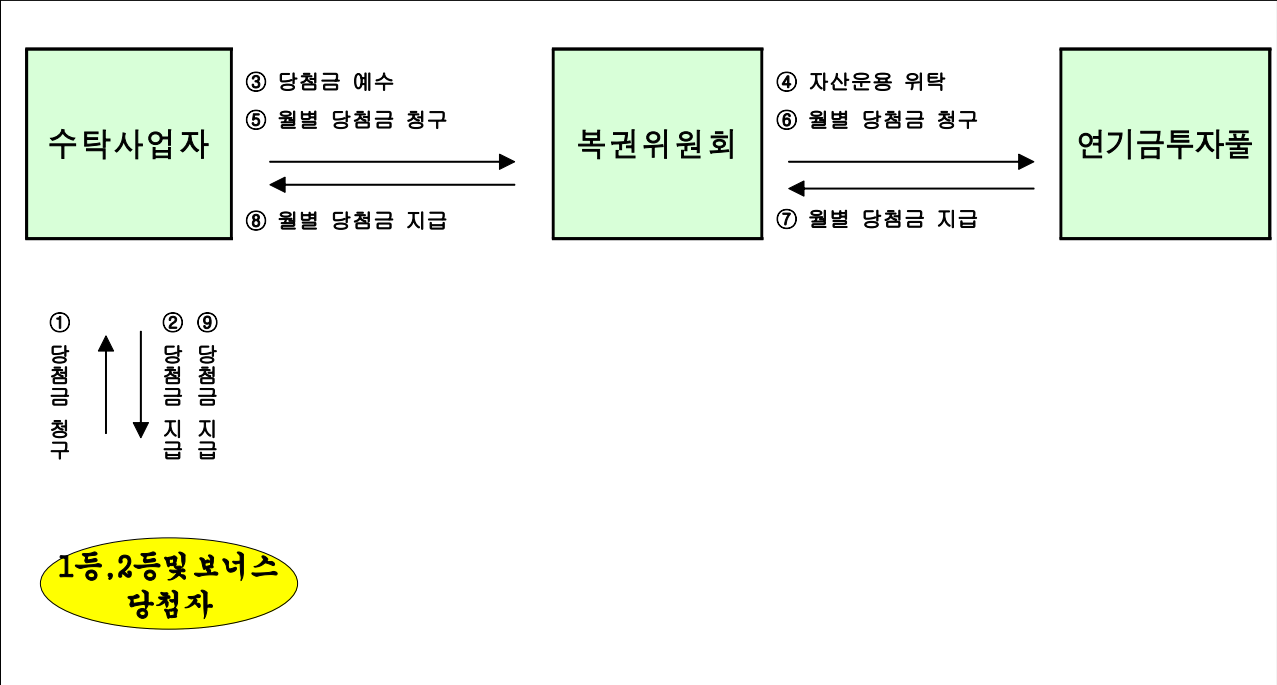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32,374	-	532,374	532,374	479,556	90.1	-	52,818
2023	571,750	-	571,750	571,750	548,857	96.0	-	22,893
2024	631,955	-	631,955	631,955	637,789	100.9	-	-
2025	685,219	-	685,219	685,219	717,928	104.8	-	-

2) 주요 결산사항: 해당없음

사 업 명 (24)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9801 - 980)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계정명	010	014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800	9801	980
명칭	차입금원금상환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복권기금)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65,853	76,998	78,694	93,204	93,204	16,206	21.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6,282	66,282	65,853	-	429	76,998	78,694	78,588	-	106	93,204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66,282	66,282	65,853	-	429	76,998	78,694	78,588	-	106	93,2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 복권위원회(복권기금)가 수탁사업자로부터 예수한 연금식 복권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수탁사업자에게 매월 교부

* ('20.5월 개편) 1등 20년간(16.8억원) 매월 7백만원, 2등및보너스 10년간(1.2억원) 매월 1백만원

- 복권위원회는 당첨금 지급일정에 맞춰 국고채를 매입하고 상환되는 수익금을 수탁 사업자에게 교부

※ '20년 연금복권제도 개편('20.4.24)에 따라 연금복권 720⁺ 추첨 시작('20.5.7)

1등 : 매월 5백만원 → 매월 7백만원 / 2등및보너스 등위 신설 : 매월 1백만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당첨금 등)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 지급)
- ② 추진경위 : '11.7.1 연금식 복권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240	54,222	66,282	76,998	93,2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 총 93,204

① 연금복권 1등 당첨자에게 51,468백만원 지급 :

25년말 예상청구 337명×60(12개월, 5백만원) + 335명×84
(12개월, 7백만원) + 26년 예상당첨자 74명×42백만원 (6개월, 7백만원)
∴ 51,468 = 20,220 + 28,140 + 3,108

② 연금복권 2등및보너스 당첨자에게 총 41,736백만원 지급 :

25년말 예상청구 3,143명×12백만원(12개월, 1백만원) +
26년 예상당첨자 670명×6백만원(6개월, 1백만원)
∴ 40,980 = 31,776 + 4,020

* 연금복권 판매율(예상)은 '26년 71.54% 예상 ('24년 61.3%, '25년 69.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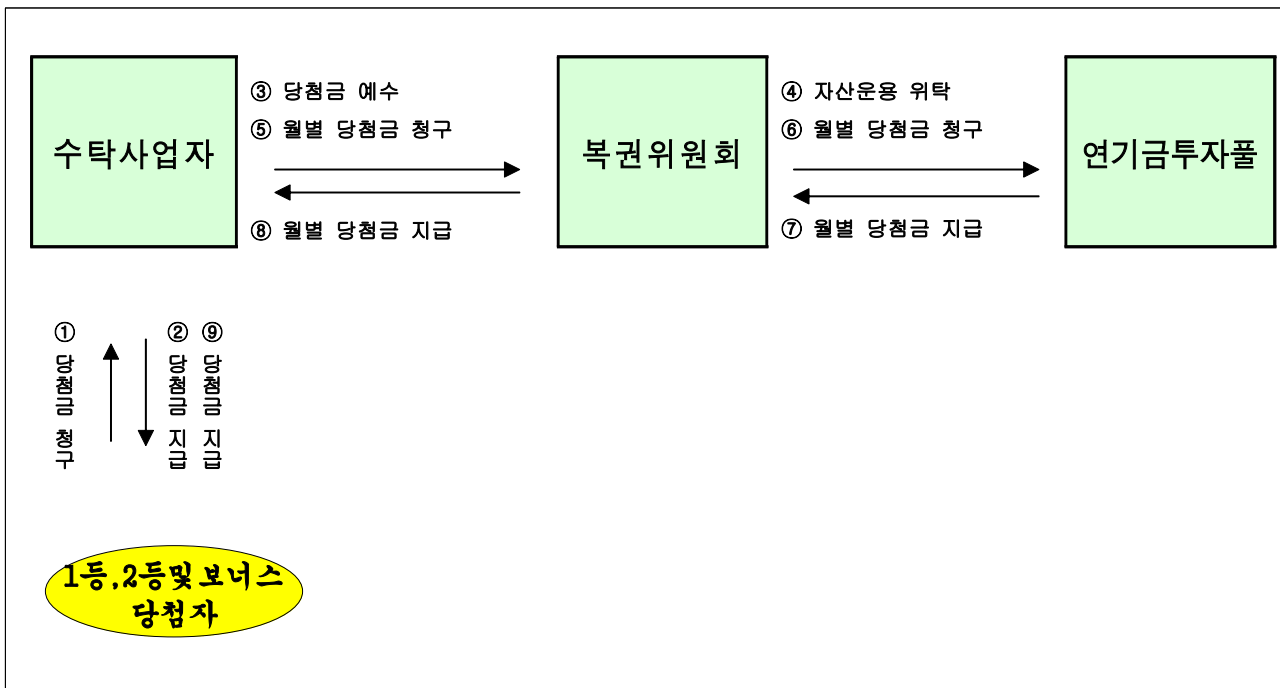
2022	· 1등 당첨자 53, 청구자 53명 / 2등및보너스 당첨자 522, 청구자 505명
2023	· 1등 당첨자 58, 청구자 58명 / 2등및보너스 당첨자 573, 청구자 561명
2024	· 1등 당첨자 71, 청구자 71명 / 2등및보너스 당첨자 596, 청구자 574명
2025	· 1등 당첨자 68, 청구자 65명 / 2등및보너스 당첨자 612, 청구자 576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본 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5,240	-	45,240	45,240	42,490	93.9	-	2,750
2023	54,222	-	54,222	54,222	53,239	98.2	-	983
2024	66,282	-	66,282	66,282	65,853	99.3	-	429
2025	76,998	1,696	78,694	78,694	78,588	99.9	-	106

2) 주요 결산사항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 획 변 경 사 유
자체변경 (2025.12.10.)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470	03	+1,696	- 연말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부족 분에 대한 증액 변경 필요
합 계				+1,696	

사 업 명 (25)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6333-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3	330
명칭	복권기금운영(재해재난긴급구호)	기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서천특화 시장 재건축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 사회재난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충청남도, 서천군 (충남개발공사 위탁)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	5,000	5,000	3,000	5,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도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당초	수정			이 월 계 획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5,000
· 서천특화시장재 건축지원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천특화시장 화재('24. 1. 22(월) 23:08)로 대부분의 점포가 전소*됨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시장 재건 필요
 - * 292개 점포중 227개 점포 전소, 간접피해 65개점포(농산물동 47, 먹거리동 6)
- 임시시장을 개장('24.4.25.~ 227개 점포 입점)하여 운영중이나 간이 시설물로 장기간 운영 및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 시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3항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5항

② 추진경위

- '24.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292개 점포 중 227개 소실, 영업중단 53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화재피해 통합지원센터 운영
- '24.2월 화재 건축물 해체 및 임시특화시장 조성공사 착공
- '24.3~10월: 재건축 기획 용역 추진 및 각종 심의 추진
- * 서천군-충남개발공사 업무대행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입찰공고
- '24.4월: 임시상설시장 개장 운영
- '25.3~5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 완료 및 우선시공 착공 및 실시설계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3,200백만원
- 사업기간 : '24. 1. ~ '27. 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8,500(지방비)	5,000(기금), 5,000(지방비)	5,000(기금), 19,700(지방비)

- 기타: 대지면적 16,545㎡, 연면적 9,785.66㎡, 지하 1층~지상 2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서천군
- 사업 수혜자 : 서천특화시장 영세상인, 시장 이용 군민 및 관광객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5,000	정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700백만원(3년차 사업비) × 20.2%(지자체 보조율) × 1개 시도= 5,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축 공정률 (단위: %)	목표	-	-	신규	50	50	설계공정률 지표 + 공사공정률 지표 + 국비집행률 지표	- 설계공정률 (기본설계+실시설계) * 30% - 공사공정률 * 40% - 국비집행률 (국비집행액/50억원) * 30%	관련 공문, 착공서류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입점상인 및 주민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 방문객 만족도 * 50% - 상인 만족도 * 50%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각 지표 가중치: 설계공정률 30%, 공사공정률 40%, 국비집행률 30%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24.1.22.) * 292개 점포 중 227개 소실, 영업중단 53개 - 재난안전대책본부('24.1.23.) 및 통합지원센터(행안부·충남·서천군 등) 운영('24.1.24.) - 임시시장 및 재건축 추진 MOU 체결('24.2.7., 도-서천군-건설사) - 화재 건축물 해체 및 임시특화시장 조성공사 추진('24.2.~4.) - 재건축 기획 용역 추진 및 각종 심의 추진('24.3.~10.)
2025	-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 완료('25.3.) - 서천군 건축심의 완료('25.5.) - 우선 시공 착공 및 실시설계 착수('25.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 (297개 점포 297명)
- 서천군의 지역경제 중심지로 특화시장 재건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 23년말 매출액 410억, 25년 재건축 이후 600억원 이상 기대
 - 23년말 이용객 432만명, 재건축 이후 600만명 이상 이용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4~'27	-	-	85	100	247	-	432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체계	국고보조금 신청	충청남도 → 행정안전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충청남도 →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행정안전부 → 충청남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충청남도 → 서천군
	사후관리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서천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5,000	-	5,000	-	5,000	5,00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100.0%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26)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634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41	312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 법률지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회생· 파산종합 지원센터 구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사업시행주체	대한법률구조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개인회생·파산종합 지원센터 구축	-	1,285	3,885	2,570	2,570	1,285	10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도 이 월 액 계 외		이 월 예산액	불 용 예산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285	3,855	3,855	3,855 [3,885]	3,855	3,855 [3,885]	-	-	2,570
· 개인회생·파산종합 지원센터 구축	-	-	-	-	-	1,285	3,855	3,855	3,855 [3,885]	3,855	3,855 [3,885]	-	-	2,5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시설 조성을 통한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법률지원
- (대상) 다중채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소상공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취약계층
- (목적)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복권기금 지원을 기반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법률구조, 신용회복 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 취약 계층의 경제활동 복귀 및 사회안전망 확보
- (내용) 개인회생·파산종합법률지원센터 구축 후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및 상시 교육, 개인워크아웃, 취업지원, 재무설계 상담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법률구조법, 복권및복권기금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국가부담의무】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호대상아동,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사업)

-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② 추진경위

- 개인회생·파산 구조 활성화 방안 강구 【'05. 국회 국정감사】
- 개인회생·파산 사건 급증에 따른 대책 강구 【'06. 국회 국정감사】
- '09.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08. 12.】
 - “경제회생을 위한 법적 지원(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설치)”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서울) 조기 개소 【'09. 1.】
 - 업무보고 시 대통령 실장 조기 개소 지시, 서초동 소재 전화상담실 임시 개조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제휴 【'09. 4.】
 - 대한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 보건복지가족부(재무설계), 자산관리공사(고금리 사채 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 '10 복권기금 사업 선정,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10. 6】
- '11 복권기금 사업 선정, 부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11. 6】
- '12 복권기금 사업 선정, 광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12. 8】
- '13 복권기금 사업 선정, 대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13. 7】
- 대통령 지시사항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13. 4.】
 -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 필요”
- '14 복권기금 사업 선정, 수원, 울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14. 6.】
- 대통령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 지시 【'23. 11.】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강화
-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25. 7. 개소】
- 의정부·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25. 12. 개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3,855	2,570

- 기타 :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법률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총 10개의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구축·운영, '26년 신규 2개(전주, 제주) 구축 중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 대중채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소상공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
-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보조	대한법률 구조공단	2,570백만원	100	법률구조법 제2조의2, 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70백만원 = ①2개 기관(전주·제주) x ②254㎡ x ③5,058천원
- ① 관할 인구수, 개인회생·파산 사건수, 지역적 형평성 등 고려 선정 기관
 - ② 정부청사관리규정 청사시설 기준표에 따른 소요 면적
 - ③ 법원 주변 구분건물 시세 등 고려한 ㎡당 단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법률지원 수혜자 수 (단위: 건)	목표				8,310	24,997	3년 평균 실적에 센 터 개소 시점 (하반기) 고 려 하 여 가·감	법 른 구 조 건수 + 법 률상담 건 수 + 교육 건수	대한법률구 조공단 전 산통계프로 그램
	실적				9,005	-			
	달성도				108.4	-			
고객만족도 (단위: %)	목표				90.6	92.0	3년 평균 실적에 센 터 개소 고 려하여 0.3 점 가산	직원별 12표본에 대해 10점 척도 만족도 조사 결과 (최고점, 최저점 제외)	대한법률구 조공단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92.3	-			
	달성도				101.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인천, 창원, 의정부 지원센터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주·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시
연간 1,323건*의 법률구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3~'25년 평균 전주·제주지부 개인회생·파산 건수 x 센터 개소 시점(7.1.) 고려하여 50% 가산
= (644건 + 856건 + 1,146건) ÷ 3 x 150% = 1,32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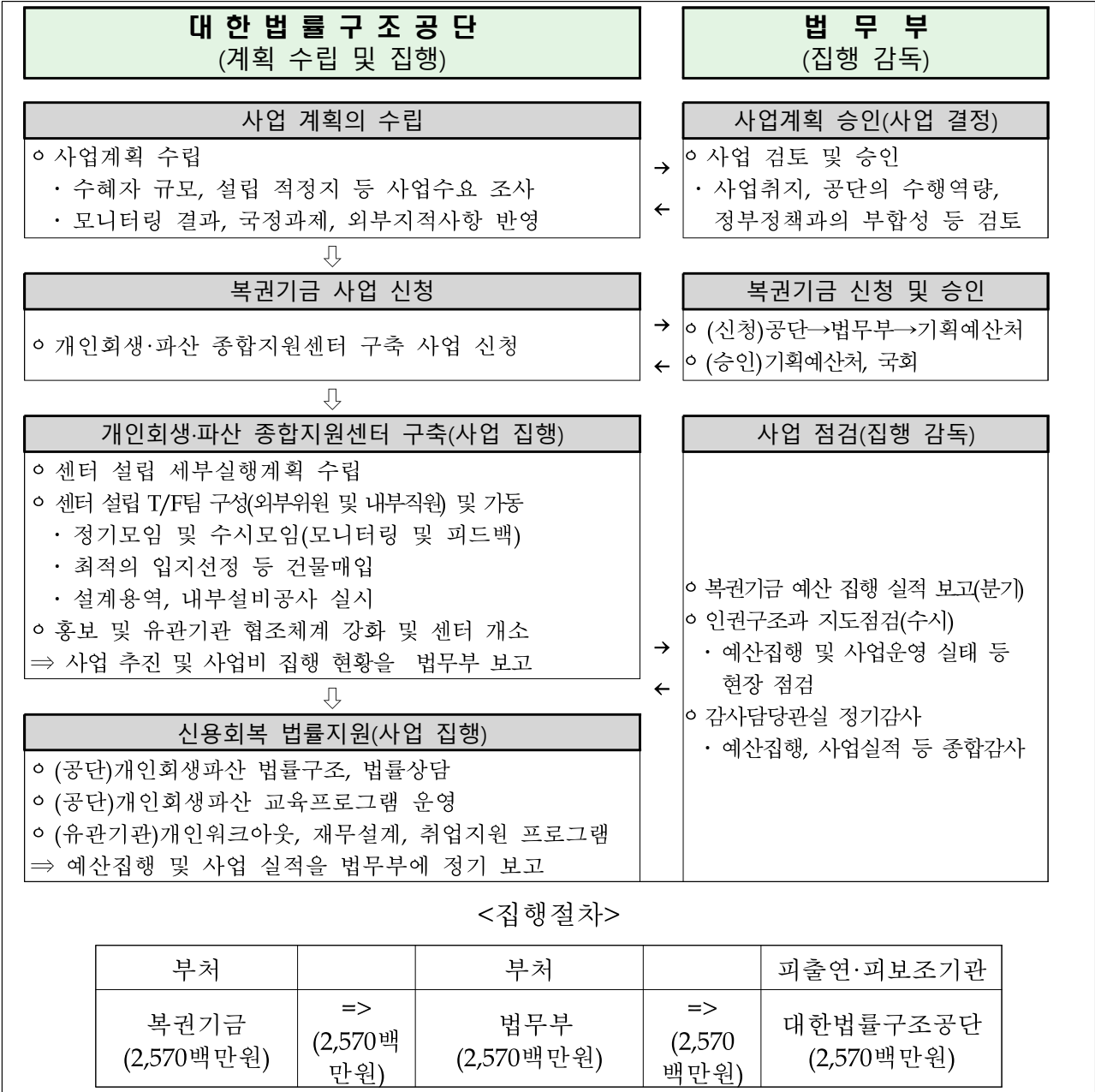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8) 각종 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본 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1,285	2,570	3,855	-	3,855	3,855	100.0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의정부·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추경 예산 2,570백만원 편성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 획 변 경 사 유
국회의결 (2025.7.4)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320	07	2,570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개인 회생·파산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법률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법률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
합 계				2,570	

사 업 명						
(27)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6346-3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46	328
명칭	취약계층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업시행주체	서민금융진흥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66,969	165,738	165,738	350,000	350,000	184,262	1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 월 액 제 외		이 월 예산액	불 용 예산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6,969	166,969	166,969 [166,969]	-	-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	-	350,000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66,969	166,969	166,969 [166,969]	-	-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	-	-
· 햇살론 특례보증	-	-	-	-	-	-	-	-	-	-	-	-	-	303,900
· 햇살론유스	-	-	-	-	-	-	-	-	-	-	-	-	-	46,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공급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
-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2. (생략)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5. (생략)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55조의2제2항제1호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생략)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16. (생략)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8. (생략)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8. (생략)

② 추진경위

- 기존 정부 출연금(복권기금, 일반회계) 및 민간 출연금으로 지원하던 5개의 서민 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일반, 특례, 유스 3개 상품으로 통합 추진
- * (민간+정부)근로자햇살론 + (민간)햇살론뱅크 → (민간)햇살론 일반보증
(민간+정부)햇살론15 + (정부)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정부)햇살론 특례보증
(정부)햇살론유스 → (정부)햇살론유스(현행 유지)
- 정부재정 총 4,797억원(일반회계 1,297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을 출연받아 햇살론 특례보증에 4,336억원(일반회계 1,297억원 + 복권기금 3,039억원), 햇살론유스에 461억원(복권기금) 투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1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0,531	167,484	166,969	165,738	35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서민금융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저소득·저신용층* 및 저소득 청년층**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이하 인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내),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햇살론 특례보증	출연	서민금융 진흥원	303,900	100.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
햇살론유스	출연	서민금융 진흥원	46,100	100.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5조의2제2항제1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년) 165,738 → ('26년) 350,000백만원

- (요구)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을 위한 보증 자원, 햇살론유스 공급 및 사회적 배려대상 이차보전을 위한 자원
- (산출) 350,000백만원 = 햇살론 특례보증 303,900백만원 + 햇살론유스 46,100백만원
 - 햇살론 특례보증 303,900백만원 = 햇살론 특례 보증자원 403,900백만원 - 일반회계로 조달하는 보증자원 100,000백만원
 - 햇살론유스 46,100백만원 = 햇살론유스 공급을 위한 보증자원 441억원 + 사회적배려대상 이차보전 20억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햇살론 특례보증 전체 공급건수 대비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건수 (단위: %)	목표	-	-	-	-	7.3	'25년 상반기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보증료 인하 비중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인하가 이루어진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건수 / 햇살론 특례보증 전체 공급건수 * 사회취약계층대상자 등 보증료 인하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통계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금융애로를 겪던 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층이 불법사금융 대신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를 이용함으로써,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고금리로 인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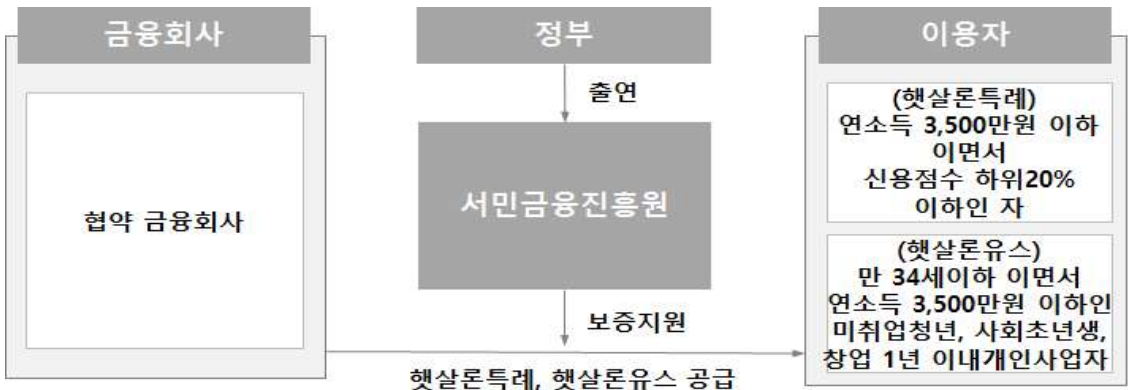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 출연, 서민금융진흥원은 동 재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저신용층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동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

<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 지원 구조 >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70,531	30,000	200,531	-	200,531	200,531	100.0	100.0	-	-
2023	167,484	-	167,484	-	167,484	167,484	100.0	100.0	-	-
2024	166,969	-	166,969	-	166,969	166,969	100.0	100.0	-	-
2025	165,738	-	165,738	-	165,738	165,738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170,531	200,531	200,531	200,531	-	200,531	200,531	-	-	100.0
2023	167,484	167,484	167,484	167,484	-	167,484	167,484	-	-	100.0
2024	166,969	166,969	166,969	166,969	-	166,969	166,969	-	-	100.0
2025	165,738	165,738	165,738	165,738	-	165,738	165,738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근로자햇살론 공급 0.2조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300억원 추가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8)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6352 - 3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52	334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아동복지시설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아동치료·재활 지원 사업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	2,015	2,117	2,117	2,369	2,369	252	11.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합계)	2,015	2,015	2,015	-	-	2,117	2,117	2,117	-	-	2,369
· 양성평등기금 전출	2,015	2,015	2,015	-	-	2,117	2,117	2,117	-	-	2,3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문제행동 또는 정서불안 아동에 대한 각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치료 재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5조

- *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시작년도 : 2012년
- 시설 아동은 민감한 시기에 유기, 부모의 학대, 질병, 빈곤 등으로 분리 경험이 있어 일반 아동보다 문제행동 비율이 높으며 조기 치료 필요
- 국정감사(’09년, ’10년)에서 시설 입소 아동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09	2,371	2,015	2,117	2,369

- 기타: 당해 연도에 심리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 중 시설장이 추천한 아동 1,50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 수혜자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중 정서장애 또는 문제행동 아동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	보조	아동권리 보장원	2,369백만원	복권기금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 2,369백만원

가. 검사비

- 사전검사 2,500부×6,000원 = 15백만원
- 사후검사 1,500부×6,000원 = 9백만원
- 종합검사 750명×300천원 = 225백만원

나. 치료프로그램비

- 재활 1,500명×60천원×20회 = 1,800백만원
- 주양육자 570명×100천원 = 57백만원
- 원가족 150명×600천원 = 90백만원

다. 운영경비

- 인건비 4명×33백만원 = 130백만원
- 운영비 13백만원
- 효과성연구 20백만원
- 간담회 2회×3백만원 = 7백만원
- 종사자교육 2명 X 10회 X 150천원 =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를 (%)	목표	41.5	40.6	42.4	-	-	-	k-CBCL 정상범위 아동수/사업 참여아동수*100	사전-사후 온라인 검사지 배부
	실적	41.6	42.2	52.1	-	-			
	달성도	100.2	103.9	122.9	-	-			
보호아동 심리정서 개선율 (%)	목표	-	-	-	60.7	60.4	최근 4개년 (‘22~’25년)의 실적치 평균	K-CBCL 문제행동 감소 아동수/사업 참여아동수*100	사전-사후 온라인 검사지 배부
	실적	55.2	66.6	60.3	59.5	-			
	달성도	-	-	-	98.0	-			
아동-원가족 관계 개선도 (점)	목표	34.4	37.6	41.3	45.9	42.6	최근 4개년 (‘22~’25년)의 실적치 평균	가족관계증진 척도(가족관계 척도+애착관계 척도)의 사전-사후검사 비교결과 향상점수의 합계 (100점 환산)	사전-사후 평가척도 배부
	실적	42.1	40.8	45.5	42.1	-			
	달성도	122.4	108.5	110.2	91.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아동치료 및 재활 1,513명 지원, 역량강화(종사자 교육·원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2023	아동치료 및 재활 1,686명 지원, 역량강화(종사자 교육·원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2024	아동치료 및 재활 1,601명 지원, 역량강화(종사자 교육·원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2025	아동치료 및 재활 1,500명 지원, 역량강화(종사자 교육·원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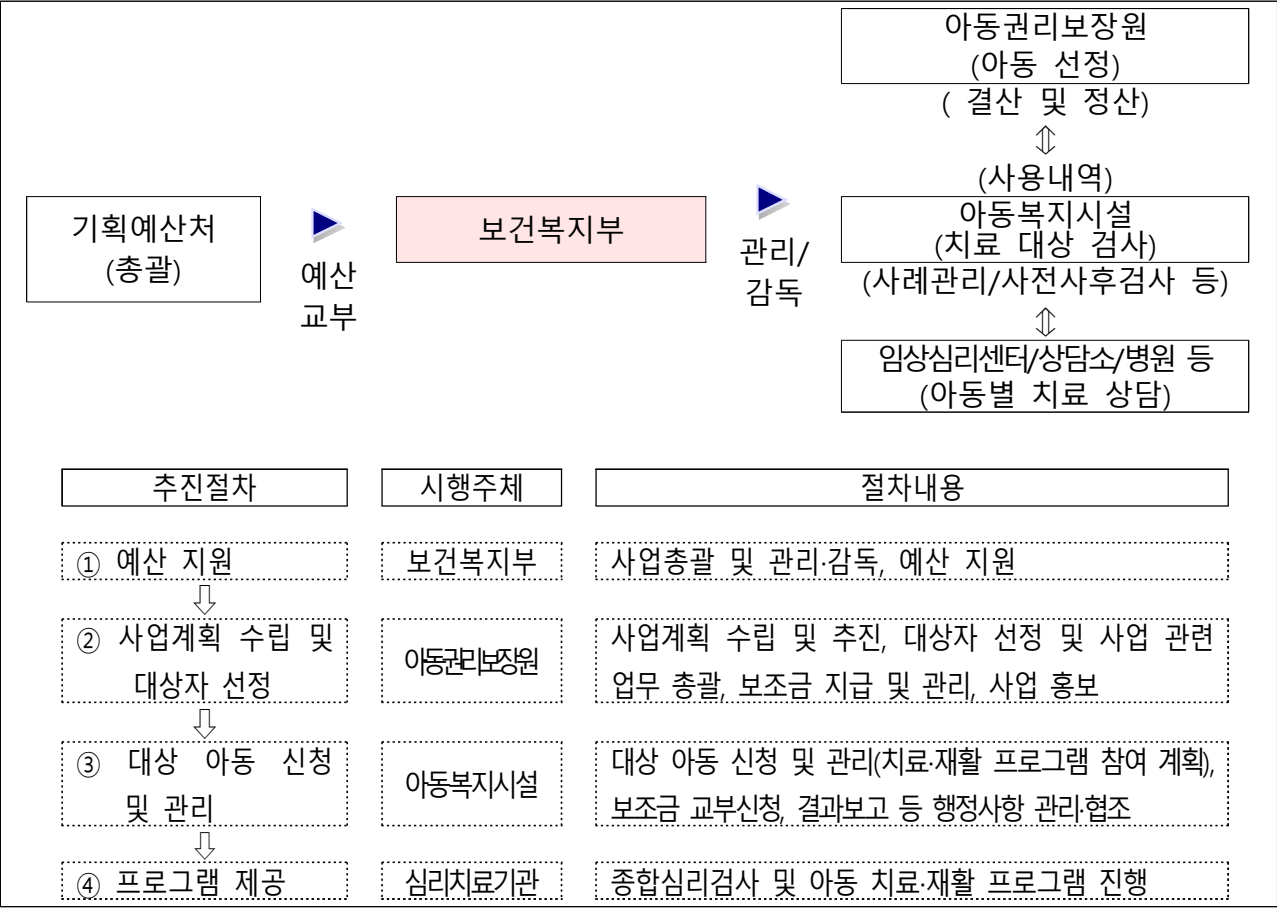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시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에 문제행동 등 심리·정서적 지원하여 아동이 성장하여 성년이 된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 1,500여명 이상의 아동에게 치료재활서비스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자립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2,209	-	2,209	2,209	2,209	100.0	-	-
2023	2,371	-	2,371	2,371	2,371	100.0	-	-
2024	2,015	-	2,015	2,015	2,015	100.0	-	-
2025	2,117	-	2,117	2,117	2,11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29) 재난적의료비 지원 (6362 - 34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62	344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85,769	76,473	114,873	85,769	85,769	9,296	12.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769	85,769	85,769	-	-	76,473	114,873	114,873	-	-	85,769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85,769	85,769	85,769	-	-	76,473	114,873	114,873	-	-	85,7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 및 국민건강 보호 강화

□ 사업내용

- 모든 질환에 대해 소득 하위 50% 중심으로 의료비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경우, 의료비 부담액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② 추진경위

- ('13.8월~'17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시행
 -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한시적('13~'15년)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제도의 지속 시행요구가 높아 '17년까지 연장 운영
- ('17.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로 확대 계획 발표

<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내용 >

③-1.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 확대

- (현행) 4대 중증질환 저소득가구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의료비지원사업 추진('17년 종료)
- (개선)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기준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8.1.16. 공포, '18.7.1. 시행)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화 및 지원 확대 : '18년
 - * 주요 확대내용 : 대상질환(4대 중증질환 입원 중심 → 모든 질환), 지원범위(소득하위 40% → 50%이하 중심), 지원금액, 지원금액 상향 등
-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한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금액 인하*로 지급대상 확대('21.1월~)
 - * ▲(기초·차상위) 100 → 80만원 / ▲(기준중위 ~ 50%) 200 → 160만원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상향(연간 2천만원→3천만원)으로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21.11월~)
 - * (기존) 일괄 50% → (개선) 소득에 따라 50~80% 차등 지원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중위소득 50 ~ 100% : 60%,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 50%
- '22. 12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3.1.1 시행)
 -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재산(기존 5.4억원 이하 → 개편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완화(기존 15% → 개편 10% 초과 시)
- '23. 3월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 확대
- '23. 5월 연간 지원한도 상향(3천만원 → 5천만원)
- '24. 1월 동일질환 합산 → 모든 질환 대상 1인당 발생 의료비 합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975	61,568	85,769	114,873	85,7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소득 하위 50% 가구 중심으로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민간경 상보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85,769백만원	10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재난적의료비 지원 : 85,769백만원 = 50,735건 x 3,120천원 x 64%(기금+일반회계 비율) - 10,464백만원(일반회계 지원) - 5,075백만원('24년 복권기금 지원수준으로 조정) * 지원건수 및 지원단가는 '24년 수준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률 (단위: %)	목표	10.0	11.6	12.2	12.5	12.9	'25년 목표치 달성으로 가정, β 분포 방식 활용한 추정값에 5년 평균증가율을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 총진료비× 100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산출
	실적	11.3	12.1	12.8	-	-			
	달성도	113	104	105	-	-			
재난적의료비 만족도 (단위: %)	목표	83.6	84.3	86.38	88.26	88.30	'25년 목표치 달성으로 가정하고, '만족' 및 '매우 만족' 답변의 3년 (‘23~’25년) 평균 치로 목표치 설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중 '만족' 및 '매우만족' 답변율×100%	국민건강보험공 단을 통하여 산출
	실적	88.24	90.17	86.34	-	-			
	달성도	105	106	99.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해당없음
2023	◦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한도(기존 3천만원→5천만원) 상향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재산(기존5.4억원 이하 → 개편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완화(기존15% → 개편10% 초과 시),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 확대
2024	◦ 재난적의료비 합산 방식 변경 - 동일질환 합산 → 모든 질환 대상 1인당 발생 의료비 합산
2025	◦ 타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인해 지원범위의 금액이 중복차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질환 발병 시 신속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 및 국민건강보호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건복지부) 계획수립 및 총괄, 복권기금 교부계획 수립 및 교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운영, 복권기금 집행 및 관리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지급절차 개요 >						
퇴원후 지급신청 (원칙)	지급신청	자격심사	(개별심사)	지급결정	지급의뢰	지급
	환자	지사	지역별 실무위원회	지사	지사	본부
입원중 지급신청 (예외)	지원신청	자격심사	청구	지급결정	지급의뢰	지급
	환자	지사	환자 (의료기관)	지사	지사	본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39,975	-	39,975	39,975	36,735	91.9	-	3,240
2023	56,754	4,814	61,568	61,568	61,568	100.0	-	-
2024	68,451	17,318	85,769	85,769	85,769	100.0	-	-
2025	76,473	38,400	114,873	114,873	114,87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0) 입양아동 가족지원 (6364-34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	6364	346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서울40, 지방70 (평택시 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입양아동 가족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입양아동 가족지원	20,843	21,347	21,347	19,358	19,358	△1,989	△9.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합계)	20,843	20,843	20,843 [19,824]	-	-	21,347	21,347	21,347 [19,083]	-	-	19,358
·입양아동가족지원	20,843	20,843	20,843 [19,824]	-	-	21,347	21,347	21,347 [19,083]	-	-	19,3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통해 아동의 원 가정 양육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32조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

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 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일반회계>

- 1996년 :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시작
- 2005년 : 입양특례법 개정('05. 3. 31.)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근거 규정 마련
- * 보건복지 상임위('05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입양장려금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
- 2007년 :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추진
-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수수료 지원 사업 도입
- 2008년 :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등 국내보호 강화대책 수립 및 추진
- 2010년 :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차등지원 도입(경증 55.1만원/월, 중증 57만원/월)
- 2011년 : 중증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상향조정(57 → 62.7만원/월)
- 2012년 : 입양아동 양육수당 상향조정(10만원 → 15만원)
- 2013년 : 아동의 원가정 우선보호를 위해 입양철회비용 및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사업 도입

<복권기금 이관('14)>

- 2014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3세 미만 → 만 14세 미만)

- 2015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4세 미만 → 만 15세 미만)
- 2016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5세 미만 → 만 16세 미만)
- 2020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6세 미만 → 만 17세 미만)
- 2021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7세 미만 → 만 18세 미만)
- 2022년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단가 인상(월 15만원→월 20만원) 및 입양축하금 국비 지원 신설(1회, 200만원)
- 2025년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단가 15% 인상(심한 장애 : 62.7 → 72.1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등 : 55.1 → 63.4만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832	22,469	20,222	21,347	19,3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입양을 한 입양가정, 입양아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9,358 백만원	서울40, 지방70 (평택 8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자치단체보조(330-01) : **19,358백만원**

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사업비 17,274백만원

- (서울) 1,588명 × 200천원 × 12개월 × 40%
- (지방) 9,375명 × 200천원 × 12개월 × 70%

②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사업비 1,462백만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사업비 1,335백만원(247명)
 - (서울){(17명×634천원)+(28명×721천원)} × 12개월 × 40%
 - (지방){(51명×634천원)+(151명×721천원)} × 12개월 × 70%

- 의료비 지원 : 사업비 127백만원(130명)
 - (서울) 30명 × 1,550천원 × 40%
 - (지방) 100명 × 1,550천원 × 70%

- ③ 입양비용 : 사업비 179백만원
- (서울) 32명×1,000천원×40%
 - (지방) 238명×1,000천원×70%

- ④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사업비 84백만원
- (서울) 39명×1400천원×40%
 - (지방) 63명×1400천원×70%

- ⑤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비 359백만원
- (서울) 32명×2,000천원×40%
 - (지방) 238명×2,000천원×7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내입양 추진비율 (단위:%)	목표	54.1	54.8	60.4	66.7	67.8	최근 3년 실적치 평균 * 직전연도 가중치 부여	국내입양아동수/ (국내입양아동수+ 국외입양아동수) ×100	전국 입양기관 입양현황 통계
	실적	56.2	65.5	72.6	집계중	-			
	달성도	103.9	119.5	120.2	-	-			
입양양육수당의 아동 양육에 도움 정도 (단위:점)	목표	신규	69.4	70.4	70.7	71	최근 3개년의 실적치* 평균 적용, 직전연도 실적에 가중치** * ('22)72.0 ** 25%, 25%, 50% 적용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	신규	70.1	72.8	집계중	-			
	달성도	신규	103	103.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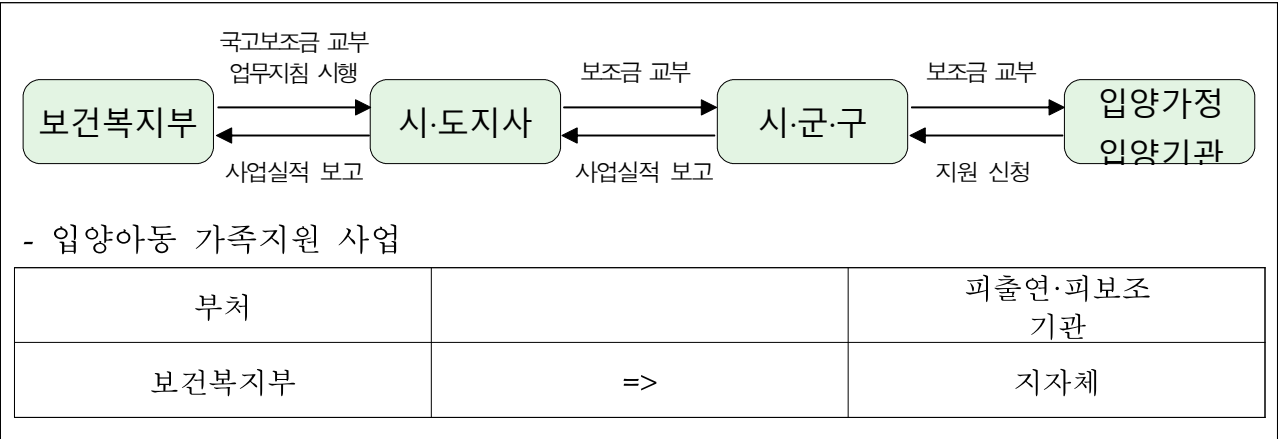
2022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단가 인상 * (~'21년) 월 15만원 → ('22년~) 월 20만원 - 입양축하금 지원 신설 * 200만원, 1회 지급
------	--

2023	-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 및 「국제입양에관한법률」 제정 (’23.7.18 제·개정, ’25.7.19시행)
2024	- 해당없음
2025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단가 15% 인상 * 중증 62.7 → 72.1만원, 경증 등 55.1 → 63.4만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23,832	-	23,832	23,832	23,832	100.0	-	-
2023	22,469	-	22,469	22,469	22,469	100.0	-	-
2024	20,222	-	20,843	20,843	20,843	100.0	-	-
2025	21,347	-	21,347	21,347	21,34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3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365 - 34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65	347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745	4,599	4,599	4,082	4,082	△517	△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70	4,770	4,745	-	25	4,599	4,599	4,299	-	300	4,082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770	4,770	4,745	-	25	4,599	4,599	4,299	-	300	4,0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의 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류) 및 제59조(비용보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② 추진경위
 - 시작년도 : 1990년 ~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아동의 안전,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국가의 지원은 필수적임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0~,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00	5,300	4,770	4,599	4,082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	지자체 보조	4,082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082백만원

가. 개축 : 2,588백만원

- 10개소 × 181.3m² × 2,855천원 × 보조율 50% = 2,588백만원

나. 개보수 : 1,394백만원

- 1식 × 2,788백만원 × 보조율 50% = 1,394백만원

다. 장비보강 : 100백만원

- 20개소 × 10백만원 × 보조율 50% =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아동복지시설 1실당 거주 아동 수 (단위: 명)	목표	3	3	3	2.5	2.3	아동복지법 상 1 실당 거주아동수 기준으로 목표 설정(하향지표) - 1인실 확충 등을 반영 하여 23명으로 목표 상향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수 / 아동복지시설 거주 방 개수	지방자치단체 수합
	실적	2.1	1.8	1.7	-	-			
	달성도	100	100	100	-	-			
환경개선 만족도 (단위: 점)	목표	90	90	90	90	90	아동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어 추세 적용이 어 려운 점 및 만족 도의 일정수준 유지가 필요한 점 등 감안 목표 치 유지	기능보강이 완료된 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90	88	93.6	-	-			
	달성도	100	97.8	10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증·개축(4개소), 개·보수(58개소), 장비보강(12개소)
2023	증·개축(1개소), 개·보수(94개소), 장비보강(15개소)
2024	증·개축(5개소), 개·보수(36개소), 장비보강(6개소)
2025	증·개축(1개소), 개·보수(83개소), 장비보강(50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보강 지원을 통해 시설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실제 수혜자인 아동의 시설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단위 : 백만원)					
부처 (기금관리기관)	사업시행주체	=>	피출연·피보조 기관	=>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보건복지부 (4,599)	(4,599)	지방자치단체 (없음*)	(4,599)	아동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수행 시 피보조기관 직접 집행액이 발생할 수 있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5,300	-	5,300	5,300	5,211	98.3	-	89
2023	5,300	-	5,300	5,300	5,191	97.9	-	109
2024	4,770	-	4,770	4,770	4,745	99.5	-	25
2025	4,599	-	4,599	4,599	4,299	93.5	-	3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불용) 사업 지연, 집행잔액
2023	- (이월/불용) 사업 지연, 집행잔액
2024	- (이월/불용) 사업 지연, 집행잔액
2025	- (이월/불용) 사업 지연,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32)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6372-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72	352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32,413	25,825	25,825	37,097	37,097	11,272	43.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413	32,413	32,413	-	-	25,825	25,825	25,825	25,825	25,825	37,097
·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32,413	32,413	32,413	-	-	25,825	25,825	25,825	25,825	25,825	37,0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층 장학사업지원)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 (선발대상)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 혹은 다문화 가정*** 혹은 긴급구난사유**** 해당 학생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 ※ 대학생은 별도 선발 없이 계속 장학생(고3)이 대학 진학 시 지원
- (지원인원) '26년 신규 장학생 3,000명 선발을 포함 약 11,851명 지원*
 - * '26년 신규 장학생 3,000명 + 기존 장학생 중 계속 지원 장학생 8,851명
- (지원내용) 매월 장학금* 지원 외에 1:1멘토링, 진로 상담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초] 15만 원 [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 45만 원
 - ※ 긴급한 사유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SOS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10개월간(월 30만원) 한시적으로 지원(1,500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8조(장학제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국가의 책무) 등

② 추진경위

- ('18. 8.)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교육부), 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문체부) 등 포함
- ('18.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대학생 → 대+초·중·고)를 통한 사업수행 근거 마련
- ('19. 9.)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 ('20. 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출연 협약식 개최(원금보전성 기금 3,500억 원 출연 협약)
- ('25.7.)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초·중·고·대학생(5,6학년)까지 선발 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신규, 시범사업)~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079	115,386	32,413	25,825	37,0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초·중·고·대학생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출연	한국장학 재단	37,097	100.0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37097백만원 (사업비 36387백만원 +운영비 710백만원)

○ 사업비: 36,387백만원

가. 장학금: 30,840백만원

- 계속장학생(8,851명): 39,060백만원
(초) 15만원×475명×12개월 = 855백만원
(중) 25만원×1,418명×12개월 = 4,254백만원
(고) 35만원×3,019명×12개월 = 12,680백만원
(대) 45만원×3,939명×12개월 = 21,271백만원
- 신규장학생(3,000명): 4,500백만원
(초) 15만원×1,000명×6개월 = 900백만원
(중) 25만원×1,000명×6개월 = 1,500백만원
(고) 35만원×1,000명×6개월 = 2,100백만원
- 원금보전성 기금 운용수익금 차감: △12,720백만원
(운용수익금) '24년 발생한 운용수익금(12,720백만원)은 '26년 사업비(장학금)로 활용
※ 「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 원금보전성 기금관리 업무처리기준('22.1.)」 제6조(기금 운용수익의 활용) 기금운용수익은 차차년도 장학사업에 사용

나. 교육 프로그램: 5,547백만원

- 멘토링 활동지원비: 3,077백만원
(계속) 4,912명×12만원×4회=2,357백만원
(신규) 3,000명×12만원×2회=720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11,851명×20.84만원×1회=2,470백만원

○ 운영비 : 710백만원

가. 전산유지보수: 824만원×2명×12개월=198백만원

나. 심사·위원회 운영: 174백만원

(심사비) 5명×0.5만원×6,500건=163백만원

(위원회) 7명×40만원×4회=11백만원

다. 도급인력: 232만원×7명×12개월=195백만원

라. 연구비. 50백만원

마. 기타운영비(설명회·간담회,(63) 홍보비(30): 9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학생 성장정도 (단위: 점)	목표	3.900	3.884	3.895	3.911	3.965	$Y = \frac{Y_a + 3Y_m + Y_b}{5}$ (Ya: 최근 5년간 최저치, Ym: 직전년도 실적치, Yb: 최근 5년간 최고치)	장학생 성장지수 측정 지표 구성(5점 척도) ※ 인지적 성장, 정의적 성장, 진로 성장	장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실적	3.884	3.902	3.930	3.985	-			
	달성도	99.6%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2,924명 등, 총 4,924명 지원
2023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4,538명 등, 총 6,538명 지원
2024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5,856명 등, 총 7,856명 지원
2025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3,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6,959명 등, 총 9,959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장학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교육 결핍 조기 해소 및 계층이동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7. 교육부)

◆ (교육격차 인식) 응답자의 93.9%가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답했으며, 87%가 과거에 비해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 ◆ (교육격차 원인) 교육비 투자 차이, 부모의 관심과 개입 정도,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를 주된 원인으로 응답 ※ 응답자 모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교육비 투자'를 선택했으며, 두 번째 원인으로 교사는 '부모의 관심과 개입'을 학부모·일반국민은 '지역별 여건'을 선택 ◆ (정책 방향) 기초학력 보장(25.7%), 가난해도 재능 있는 학생 지원(15.6%),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12.9%) 순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

- '18년도 제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19.1.) 및 통과('19.8.)

구분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	'19.01~'19.08	○ (결과) 통과(B) - 경제사회 환경분석(80점), 사업설계 적정성(74.8점), 비용-효과성(76.1점)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기본계획 수립·확정	교육부 재단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 (재단)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
↓		
선발계획 공고	재단	· 각 학교에 장학생 추천 요청 · 복권기금 활용 저소득층 장학제도 홍보
↓		
신청서 접수	학교→재단	· 장학생 추천 신청서류 제출
↓		
장학생 선정·지원·관리	재단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
↓		
사업결과 보고	재단→교육부	· 사업운영결과 보고 제출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본 예산	추 경 증 감 액	추 경					
2022	106,079	-	106,079	106,079	106,079	100.0	-	-
2023	115,386	-	115,386	115,386	115,386	100.0	-	-
2024	32,413	-	32,413	32,413	32,413	100.0	-	-
2025	25,825	-	25,825	25,825	25,82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① 이월사유: 해당 없음 ② 불용사유: 715백만원 - 유사 교육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증서수여식, 멘토링 캠프)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행사 진행으로 예산 절감 - 계속 장학생 자격점검 강화(연 1회→2회,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지원중단 인원 증가 및 자격유예자(대학교 휴학생) 증가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2023	① 이월사유: 7백만원 - (정책연구) 용역 기간이 '23. 8월 ~ '24. 1월로 용역 이행 결과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해 차년도 예산 이월 불가피 ② 불용사유: 888백만원 - 장학생 자격유예자(대학교 휴학생 및 재수생) 증가 및 장학생 자격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카드사용 모니터링 확대 등)에 따른 잔여 예산 발생
2024	① 이월사유: 해당 없음 ② 불용사유: 434백만원 - 계속장학생의 휴학 등에 따른 학적변동으로 잔여 예산 발생
2025	① 이월사유: 해당 없음 ② 불용사유: 1,343백만원 - 계속장학생의 휴학 등에 따른 학적변동으로 잔여 예산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3)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6374-354)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74	354
명칭	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소년자립 생활관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사업시행주체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	876	876	210	210	△666	76.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876	876	876	876 [876]	876	876 [876]
·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 센터 시설공사비	-	-	-	-	-	666	666	666	666 [666]	666	666 [666]
·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 센터 차량교체비	-	-	-	-	-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출원생 자립지원기관 시설 보수 및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위기·소의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필요
-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시설공사)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에게 무료숙식제공,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시설로, 재난 대비 등 입주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 보수 등의 환경개선
-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차량교체)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서 입주생의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병원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노후화로 입주생 안전을 위해 차량 교체
 - ※ 대부분 경유 및 5등급 차량으로 도심 중심가 진입이 불가하므로, 환경평가 개선 차량으로 교체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제1항 및 제3항
 - (1항)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 (3항)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자립기반조성)
 - (77조)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 교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3항 및 3호
 - (3항)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 (3호)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② 추진경위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소외청소년자립지원(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차량교체) 사업 추진을 위한 복권기금 사용 신청
- ‘소외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추진현황
 - 2009년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건립 및 전국청소년자립생활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2010년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 건립
 - 2011년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 증축,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리모델링
 - 2012년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리모델링
 - 2014년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 2016년 부산·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 2018년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물 매입 및 환경조성
 - 2022년-2023년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 2025년 노후 청소년자립생활관 개보수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입주생 및 교육생 이용 차량교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84	-	-	876	21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사업 수혜자 :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소년 자립생활관 및 청소년 창업비전 센터 차량교체	보조	(재)한국 소년보호 협회)	210	10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3호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 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 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 문화가족 지원사업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제1항 및 제3항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 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 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자립기반조성) -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 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10백만원(차량 교체비): 청소년창업비전센터 5개소 × 4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 과 지 표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재범률 (단위: %)	목표	-	-	-	4.47 미만	4.98 미만	▪ 기관별 3년 평균 재범률 기준 대비 환경개선 및 노후차량 교체 후 재범률 비교 <table><tr><th>구 분</th><th>재범률</th></tr><tr><td>‘22</td><td>2.5%</td></tr><tr><td>‘23</td><td>4.0%</td></tr><tr><td>‘24</td><td>7.5%</td></tr><tr><td>3년 평균</td><td>4.7%</td></tr></table>	구 분	재범률	‘22	2.5%	‘23	4.0%	‘24	7.5%	3년 평균	4.7%	▪ 측정산식 <table><tr><th>기준치</th><th>평 가 기 준</th><th>재범률</th><th>평가점수</th></tr><tr><td rowspan="5">4.7%</td><td>~ 95% 미만</td><td>4.98% 미만</td><td>100점</td></tr><tr><td>95%이상 ~ 100%미만</td><td>5.25% 미만</td><td>98점</td></tr><tr><td>95%이상 ~ 105%미만</td><td>5.51% 미만</td><td>96점</td></tr><tr><td>105%이상 ~ 110%미만</td><td>5.77% 미만</td><td>94점</td></tr><tr><td>110%이상</td><td>5.77% 이상</td><td>92점</td></tr></table>	기준치	평 가 기 준	재범률	평가점수	4.7%	~ 95% 미만	4.98% 미만	100점	95%이상 ~ 100%미만	5.25% 미만	98점	95%이상 ~ 105%미만	5.51% 미만	96점	105%이상 ~ 110%미만	5.77% 미만	94점	110%이상	5.77% 이상	92점	한국소년 보호협회 통계자료
	구 분	재범률																																					
	‘22	2.5%																																					
	‘23	4.0%																																					
	‘24	7.5%																																					
	3년 평균	4.7%																																					
	기준치	평 가 기 준	재범률	평가점수																																			
	4.7%	~ 95% 미만	4.98% 미만	100점																																			
		95%이상 ~ 100%미만	5.25% 미만	98점																																			
		95%이상 ~ 105%미만	5.51% 미만	96점																																			
105%이상 ~ 110%미만		5.77% 미만	94점																																				
110%이상		5.77% 이상	92점																																				
실적	100점	100점	92점	100점	-																																		
달성도			-	-	4.25	-																																	
▪ 목표치 최근 3년 재범률 평균의 95%인 4.98%							▪ 평가방법 - 2점 척도																																
지표명: 사회정착 지원율 (단위: %)	목표	-	-	-	-	134% 이상	▪ 기관별 3년 평균 사회정착지원율 기준 대비 차량지원 후 사회정착지원율을 비교 <table><tr><th>구 분</th><th>사회정착 지원율</th></tr><tr><td>‘23</td><td>116%</td></tr><tr><td>‘24</td><td>144%</td></tr><tr><td>‘25</td><td>124%</td></tr><tr><td>3년 평균</td><td>128%</td></tr></table>	구 분	사회정착 지원율	‘23	116%	‘24	144%	‘25	124%	3년 평균	128%	▪ 측정산식 - 사회정착지원 달성도(건) = (A* / B**) * A: 연간 사회정착지원 실적(취업,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상급 학교 진학) 1) 취업: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고정적 근무형태에 취업한 자 2) 자격증 취득: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취득자 3) 검정고시: 중·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4) 상급학교 진학: 중·고등학교 및 대학진학자 **B: 청소년자립생활관(8개)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2개) 이월인원 및 신입주인원	한국소년 보호협회 통계자료																				
	구 분	사회정착 지원율																																					
	‘23	116%																																					
	‘24	144%																																					
	‘25	124%																																					
	3년 평균	128%																																					
	실적	-	-	-	-	-																																	
	달성도			-	-	-	-																																
▪ 목표치 최근 3년 사회정착 지원율 평균의 105%인 1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노후관용 차량 교체를 통한 사회정착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프로그램 활성화로 사회정착지원을 3년평균 128%보다 상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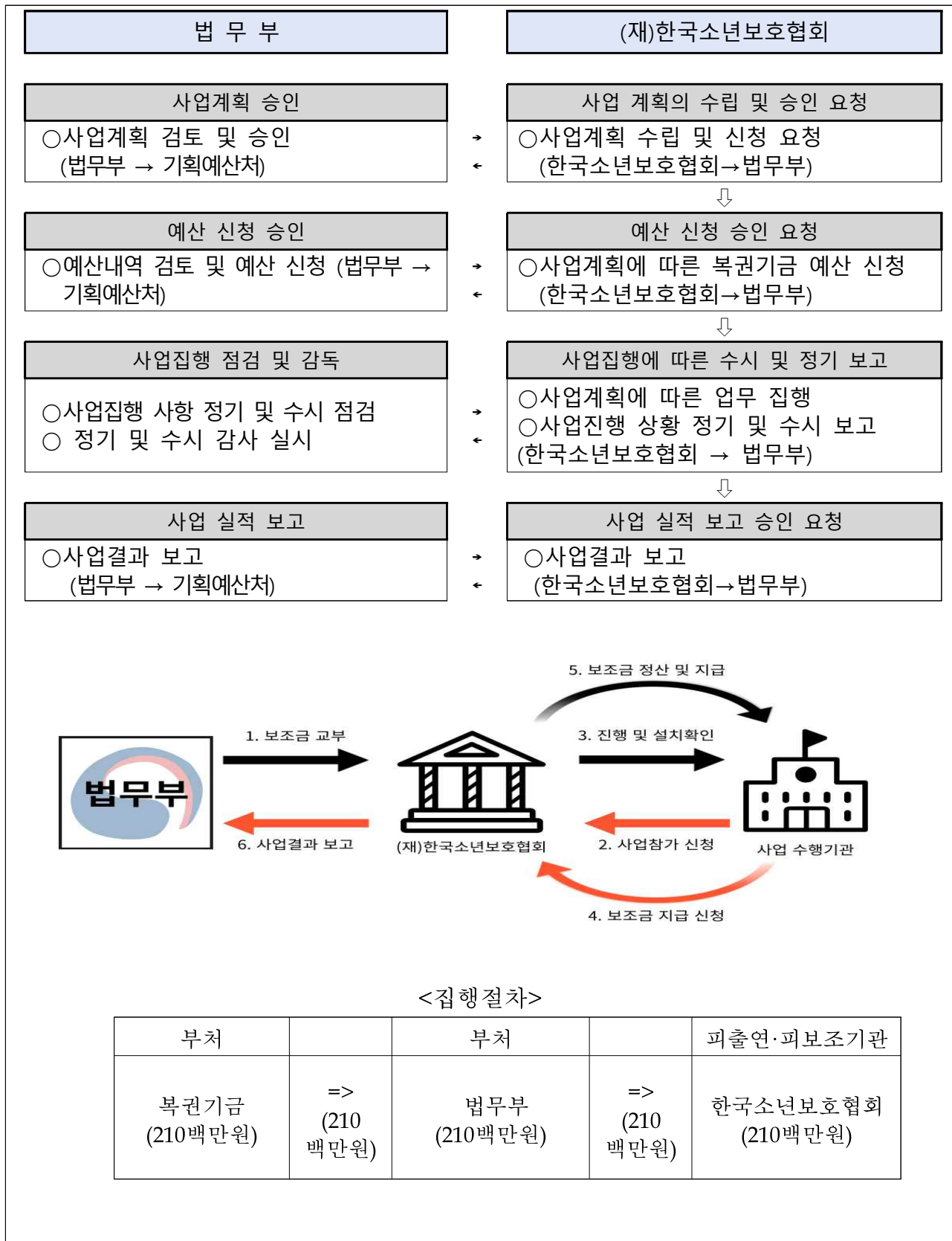
구분	2023	2024	2025	2026 목표
사회정착지원율	116%	144%	124%	134%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지적 국회(22, 23, 24결산) 지적

- 국회(법사위, 22예산)지적 - 출원생 자립지원기관 운영실적 제고 필요
- 국회(법사위, 23예산)지적 -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국회(법사위, 24예산)지적 - 청소년자립지원기관의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률 증가 필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생활관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복권기금 신청
- 시설 규모 및 인력 대비 과도하게 편성된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입주정원을 재조정
- 소년원 등 관계기관 대상 홍보 강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84	-	1,484	-	1,484	1,484	100.0	100.0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876	-	876	-	876	876	100.0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및 이월 사유 최종 사업수행기관(한국소년보호협회)의 책임있는 관리자인 상임이사의 연이은 사임으로 업무 공백 발생 또한, 한국 소년 보호협회 담당자의 증개축 업무 관련 전문성 및 이해 부족으로 관할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집행 지연 ※ '22. 11. 건축 관련 전문성 갖춘 행정사를 활용하고, 협회 본부와 대구 생활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실집행을 가속화하여 '23.11월 실집행 완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100%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6440 - 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400	6440	311
명칭	복권기금운영(보훈복지법정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복지의료국 보훈의료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보훈 복지의료 공단지원	70,138	80,127	80,127	87,519	87,519	7,392	9.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지원	70,138	70,138	70,138	-	-	80,127	80,127	80,127	-	-	87,519
· 보훈의료서비스 선진화	14,254	28,241	28,241	-	-	28,771	28,771	28,771	-	-	41,552
· 보훈의료시설 인프라 강화	28,959	22,129	22,129	-	-	32,883	32,883	32,883	-	-	24,360
· 보훈복지서비스 향상 지원	15,451	19,768	19,768	-	-	18,473	18,473	18,473	-	-	21,6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훈의료서비스 선진화 사업) 보훈병원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을 통해 보훈가족에게 적기에 최상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 (보훈의료시설 인프라 강화 사업) 보훈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 복합질환 및 장기입원 수요 대비와 급성기-재활-요양의 질환별 맞춤형 진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료시설 인프라를 구축
-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지원 사업) 장애·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훈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보훈가족에게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망인과 보훈가족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지원, 무의탁(무주택) 보훈가족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보훈복지타운 운영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11호
- ② 추진경위 :
 - 1981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설립, 국가유공자 진료 수행
 - 2001. 1월 복권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
 - 2001. 5월 플러스복권 발매 개시
 - '04년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 2004년 ~ 2010년 보훈병원 일반위탁진료비 지원사업, 복지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제주국가유공자 휴양시설 건립사업, 국가유공자 특수질환(암) 진료비 사업 등 지원
 - 2011년 ~ 2012년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선진화, 종합재활체육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 2013년 ~ 현재 보훈대상자 의료·복지서비스 선진화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253	58,664	70,138	80,127	87,519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 수혜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지원	보조	보훈복지 의료공단	87,519	6.4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87,519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6.428%인 **73,746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14,061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288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보훈의료서비스 선진화) 보훈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장비 도입, 유지보수, 노후 의료장비의 교체 및 첨단 의료장비의 지속 도입 등

- 매년 200억원 상당의 예산범위 내에서 노후교체-보충-신규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장비 도입

· (노후) 내용년수(7년) 초과된 의료장비 중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비 상승, 정확성 저하 등 평가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한 장비

· (보충) 환자 및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대기해소 위해 추가 도입 필요한 장비

· (신규) 보훈대상자 맞춤 진료 위해 고난도 진료·수술이 가능한 첨단 장비

· (유지보수비) 전국 6개 보훈병원 의료장비의 적절한 컨디션 유지

· (의료전산) 의료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환자 편의 개선 및 환자정보 보호

◦ (보훈의료시설 인프라 강화)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각 종 의료인프라 구축 및 시설 개보수 지원

- (시설재배치) 질환별 연계 배치 및 환자 중심 맞춤형 시설 재배치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공간자원 활용 극대화

- (중증·필수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보훈복지서비스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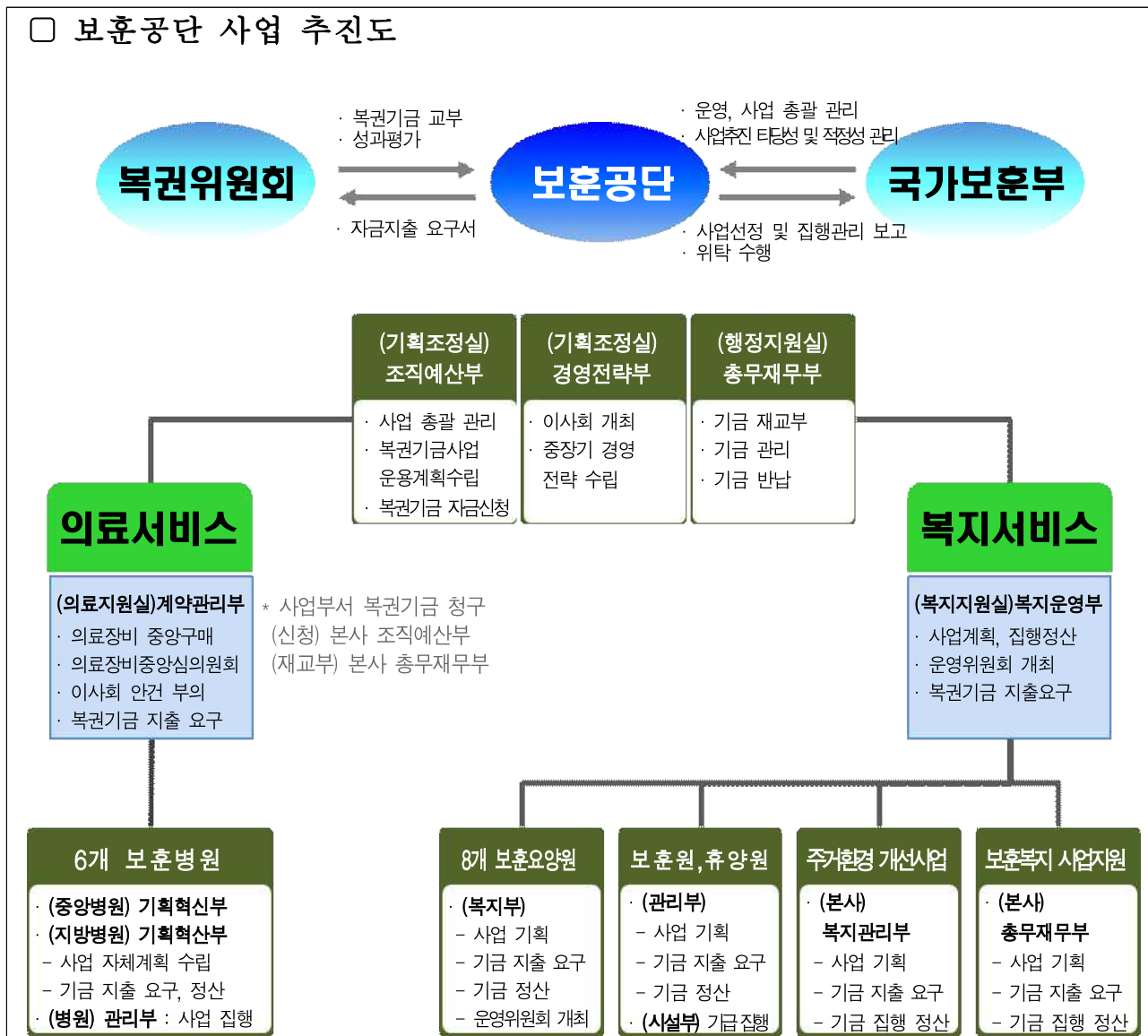
- 보훈대상자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지속
- 주거개선 신규 대상자 발굴 지원 및 사업 지원액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여가 시설 개보수 및 이용료 감면으로 안락한 여가생활 영위토록 지속 지원
- 국가유공자 단체 행사 및 위문비용 등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공단 사업 추진도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55,253	-	55,253	55,253	55,253	100.0	-	-
2023	58,664	-	58,664	58,664	58,664	100.0	-	-
2024	70,138	-	70,138	70,138	70,138	100.0	-	-
2025	80,127	-	80,127	80,127	80,12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3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654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9
명칭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500	6541	312
명칭	복권기금운영 (사회복지법정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41,697	47,401	47,401	47,386	47,386	△15	△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 월 액 제 외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697	41,697	41,697 [40,441]	-	1,256	47,401	47,401	47,401	47,401 [46,298]	-	47,401 [46,298]	-	-	47,386
·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23,397	23,397	23,597 [22,644]	-	753	22,336	22,771	22,771	22,771 [22,220]	-	22,771 [22,220]	-	-	20,302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	3,000	3,000	3,000 [2,838]	-	162	4,000	2,994	2,994	2,994 [2,768]	-	2,994 [2,768]	-	-	3,000
· 경계선 지능 아동 (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	11,650	11,650	11,650 [11,399]	-	251	14,000	14,000	14,000	14,000 [13,750]	-	14,000 [13,750]	-	-	20,584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3,650	3,650	3,450 [3,560]	-	90	3,500	3,652	3,652	3,652 [3,648]	-	3,652 [3,648]	-	-	3,500
· 장애인 아동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	-	-	-	-	-	3,565	3,984	3,984	3,984 [3,912]	-	3,984 [3,912]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 저소득층 야간 및 돌봄공백 기간 방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 보호
- 야간 및 돌봄공백 기간 방임 아동·청소년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야간보호교사 채용 및 지원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

- 아동 지원사업 : 기본생활,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회적 관계 지원 등

- 가족 지원사업 : 가족기능지원, 보호양육지원, 경제적 지원 등
-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 자원 연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 학습 및 적응 속도가 느린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아동(인지, 학습, 사회적 영역), 가정(상담 및 코칭, 자녀의 특성 이해 및 양육방법 교육), 학교(교사, 친구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 석면제거 및 철거를 통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도모
- 전국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석면 진단, 보수, 해체, 제거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추진경위

- 2004년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야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급증 등으로 인한 야간 방임우려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증가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함
- 급증하는 재학대 사례에 비해 현장의 지속적인 전문서비스(사례관리,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제공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및 심리정서지원, 학대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함

-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또래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의 인지·학습능력 향상, 정서 안정 및 자신감·사회성 향상을 위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함
-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진단, 석면 제거 및 보강을 지원하는 **‘저소득 아동·청소년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2022년부터 지원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082	47,205	41,697	47,401	47,3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 수혜자 :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복권기금	보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47,386	법정배분금 총액의 4.2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1항 제9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47,386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5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4.286%인 **49,171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1,614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171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비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야간보호사업 : 343개소 참여 - 저소득 일자리 창출자 수 1,227명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30개소 (아동, 행위자, 가족구성원 전체 3,335명)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3개소 (아동, 보호자 2,207명 참여, 학교 및 사회복지관 지원 영역 확대)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 100개소 공사 진행 완료
2023	- 야간보호사업 : 349개소 참여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19개소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1개 기관 (아동, 보호자 참여자 2,261명)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76개소 공사 진행중완료

2024	· 야간보호사업 : 291개소 참여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25개소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2개 기관 (지역동센터 400개소, 사회복지관 60개소, 학교 40개교 지원中)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78개소 공사 진행중 (8월 중 추가 선정 예정)
2025	· 야간보호사업 : 196개소 참여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25개소 (576가정, 6,948회 서비스 제공)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6개소 (지역아동센터 460개소, 사회복지관 61개소,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23개교 지원中)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74개소 선정 (지역아동센터 70개소, 아동양육시설4개소) ·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 : 84개소 지원 완료 및 실시간 관제서비스 시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 야간보호 200개소, 돌봄강화(방학기간 및 틈새기간) 1,100개소 지원을 통한 약 26,000여 아동·청소년 야간안전 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청소년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 가정 보호자의 근로생활지원
 - 아동 인구수 감소 및 정부 돌봄 정책 확대에 따라 단계적 일몰 진행 예정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가족기능 회복
 -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재학대 위험수준 감소
 - 부모양육 스트레스 완화 및 부모역량 강화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지수 10% 감소
-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 점차적 사업 확대를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에 한정되지 않고, 의심아동 및 일상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조기개입을 통해 학교 적응도 향상
 - 도서·산간 및 농어촌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 2025년 석면안전관리법 전면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석면 조사 및 공사 수요를 파악하여 석면 제거 공사 제공을 통해 아동 안전 확보
 - 석면 제거 외 노후 전기·가스 시설 및 위생 취약 공간 보수 지원 확대를 통해 아동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단계 : 사업주제, 예산확정 - 모금회 이사회 승인, 복권위원회 승인	참여, 공개
↓	
2단계 : 사업수행기관 선정공고 - 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 및 신청 ※ 비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 발송	공평, 윤리
↓	
3단계 :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 - 각 지회 심사위원 심사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면접/현장심사)	공평, 윤리
↓	
4단계 : 기관선정/사업비지원 - 선정공고, 지원계약체결	공평, 윤리
↓	
5단계 : 수행기관 담당인력 채용 - 선정기관 자체선발	-
↓	
6단계 : 수행기관 담당인력 교육 -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담당인력 교육	공유, 협력
↓	
7단계 : 사업수행	-

↓

8단계 : 현장 모니터링/ 중간점검 - 현장 모니터링/ 중간보고제출 /중간점검	공유, 협력 공평, 윤리
--	------------------

↓

9단계 : 사업평가 -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평가	공평, 윤리
--------------------------------	--------

↓

10단계 : 평가결과 feedback	공평, 윤리
----------------------	--------

※ 근거 법령 및 기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 배분규정,배분지침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 (47,386)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47,386백만원)	=> (20,302)	지역아동센터 등 200개소 (공모 예정)
			=> (3,000)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공모 예정)
			=> (20,584)	학교, 복지관, 기타 시설 협회 등 (공모 예정)
			=> (3,500)	배분협력기관 1개소 (공모 예정)

8) 각종 평가

[북권위원회 사업성과 평가결과]				
연도	2021	2022	2023	2024
야간보호사업	82.04 (우수)	81.96 (우수)	84.81 (우수)	81.26 (우수)
가족기능 강화사업	79.61 (보통)	82.84 (우수)	84.28 (우수)	82.86 (우수)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76.96 (보통)	78.66 (보통)	84.27 (우수)	83.96 (우수)
환경개선 사업 (석면 해체 및 보수)	-	73.25 (보통)	78.48 (보통)	76.75 (보통)
○ 평가결과 : 우수 등급(법정배분사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0,082	40,082	40,082	-	40,082	40,082	100.0	100.0	-	-
2023	47,205	47,205	47,205	-	47,205	47,205	100.0	100.0	-	-
2024	41,697	41,697	41,697	-	41,697	41,697	100.0	100.0	-	-
2025	47,401	47,401	47,401	-	47,401	47,401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야간보호사업 공모 잔액, 사업포기, 예산절감, 퇴직금 정책 변경 등에 따른 잔액 1,245백만원 - 가족기능강화사업 수행기관 당해연도 반납금 68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공백기간 발생 등 639백만원 - 환경개선 지원사업 석면 해체 공사 불가 등에 따른 사업포기 446백만원
2023	- 야간보호사업 입찰 및 공모 잔액, 사업포기 등에 따른 잔액 3,113백만원 - 가족기능강화사업 특정지역 아동학대 피해 접수 감소에 따른 잔액 191백만원 -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아동 및 현장교사 중도 이탈 등 사업 공백 발생 등 460백만원 - 석면 해체 참여기관 중도 사업 포기(건물주 미승인 등)에 따른 잔액 210백만원
2024	- 늘봄학교 확대 및 참여아동 감소에 따른 중도 포기 기관 발생 753백만원 - 아동학대 접수 건 중 본 사업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율 감소 162백만원 -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봉사자 활용 및 외부자원 활용에 따른 절감액 251백만원 - 환경개선사업 하반기 공사건적 대비 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 미진행 90백만원
2025	- 공모 선정 이후 또는 사업 중도 포기 등에 따른 잔여액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6642-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600	6642	313
명칭	복권기금운영(산림환경법정지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 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소관부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예산운영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지원	72,967	77,528	77,528	80,183	80,183	2,655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 월 예산액	불 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 월 예산액	불 용 예산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967	72,967 [78,064]	72,967 [69,684]	- [7,254]	- [1,126]	77,528	77,528	77,528 [84,782]	77,528 [70,320]	77,528 [77,528]	77,528 [63,520]	- [7,210]	- [7,252]	80,183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41,165	41,165 [46,262]	41,165 [38,159]	- [7,254]	- [849]	41,507	41,507	41,507 [48,761]	41,507 [37,397]	41,507 [41,507]	41,507 [30,597]	- [7,210]	- [4,154]	39,319		
·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	31,802	31,802 [31,802]	31,802 [31,525]	- -	- [277]	36,021	36,021	36,021 [36,021]	36,021 [32,923]	36,021 [36,021]	36,021 [32,923]	- -	- [3,098]	40,8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식재 및 목재활용 생활환경 개선, 무장애나눔길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 조성으로 취약계층의 산림체험 공간 불평등 해소
-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청소년,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정서안정과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 기능증진자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9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 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제58조(녹색자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사업의 조성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공해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8. 산림복지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07년)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및 “녹색체험 교육사업” 추진
- ('08년) “사회복지시설 녹색복지공간 조성” 및 “숲체험·교육사업” 추진
- ('14년) 사업명을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15년) '24년까지 5개 권역에 “체험교육나눔숲” 조성계획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 추진
- ('16년) “무장애나눔길 조성” 실시
- ('17년) “지역사회나눔숲” 사업 폐지
- ('18년) “수목장림나눔숲 조성·지원” 추진
- ('19년)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을 “나눔숲 조성(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과 “숲체험·교육(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의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23년) 용어순화(「국어기본법」 개정, '21.12월)를 위한 내역사업 명칭 변경

* (당초)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 (변경)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057	72,576	72,967	77,528	80,18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보훈·유공자, 장애인, 노인, 영아, 청소년,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지원	보조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80,183	법정 배분금 5.8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80,183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5.846%인 67,069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13,414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300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8.85㎡/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626천명
2023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9.87㎡/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526천명
2024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10.75㎡/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613천명
2025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11.60㎡/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620천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사업)

-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수목식재 또는 실내 공간(바닥·벽) 등에 목재를 활용하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신체·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
-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층도 안전하게 숲을 보행하거나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체험활동 시설을 설치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기여
- * '29년까지 소외계층 1인당 녹지면적을 일반도심 대비 80% 수준까지 확대, 무장애 나눔길 매년 20km 이상 조성으로 '29년 236.8km 수준까지 확대

-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유아·청소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신체적 건강 증진 도모
- 기존에 조성된 복지시설나눔숲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등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

* 지속적인 수혜확대 및 수혜대상 발굴을 통해 '29년까지 숲체험·교육 취약계층 수혜 집중도 93.6% 이상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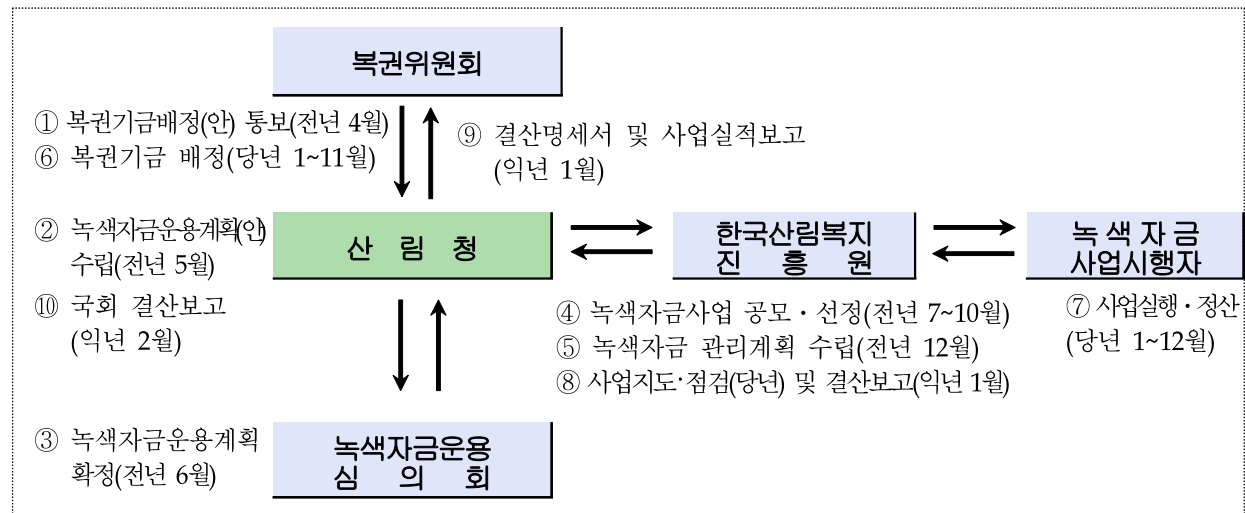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녹색자금사업 추진체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녹색자금 운용심의회 개최	산림청	◦ 녹색자금운용계획 확정·통보
↓		
② 공모사업 공고	진흥원	◦ 공모사업 공고 → 공모설명회 개최 → 공모사업 신청
↓		
③ 공모사업 심사 및 사업시행자 선정	진흥원 산림청	◦ 심사위원회 구성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의결 → 사업시행자 확정 통보
↓		
④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 진흥원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 → 검토확정(진흥원)
↓		
⑤ 사업계획서 확정 통보	진흥원	◦ 사업계획서 확정 통보(진흥원 → 사업시행자)
↓		
⑥ 복권기금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 사업자금 신청 및 배정
↓		
⑦ 사업실적 정산·평가	진흥원	◦ 사업실적 정산·평가(진흥원 → 사업시행자)
↓		
⑧ 복권기금 국회결산	산림청	◦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진흥원 → 복권위원회) ◦ 국회결산 보고(진흥원 → 산림청 → 국회)

나. 녹색자금사업 시행체계



8) 각종 평가

- 1) 국회(상임위, 23결산) 지적
 (지적) 녹색자금의 소관부처 및 운용·관리부처의 불일치 해소 논의 필요 등
 (조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녹색산림기금' 신설 검토
 - 「산림자원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25.下)
- 2) 대외공개 평가
 -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사업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25.4월) 결과
 - 89개 법정배분사업 중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89.05점, 우수),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90.09점, 우수) 달성
 - ('18) 3위/58개 사업 → ('19) 1위(나눔숲·나눔길), 5위(숲체험·교육)/66개 사업 → ('20) 2위(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4위(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61개 사업 → ('21) 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우수(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71개 사업 → ('22) 매우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매우우수(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92개 사업 → ('23) 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우수(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95개 사업 → ('24) 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우수(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89개 사업
 - * '19년 평가부터 세부 내역사업(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숲체험·교육지원) 구분하여 평가 실시
 - * '23년 평가부터 타 회계로 사업이 이관되도 평가등급 활용 가능토록 5단계 → 3단계 조정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9,057	-	69,057	-	69,057	69,057	100.0	100.0	-	-
2023	72,576	-	72,576	-	72,576	72,576	100.0	100.0	-	-
2024	72,967	-	72,967	-	72,967	72,967	100.0	100.0	-	-
2025	77,528	-	77,528	-	77,528	77,528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Ⅲ.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 업 명						
(1) 구상권관리비(2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신용보증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1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구상권관리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구상권관리비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구상권관리비	-	68	68	74	74	6	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주사업인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보증부실기업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경매, 소송 등 법적조치를 위한 소요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3호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3.16	-			
	달성도	100.5	115.4	130.8	10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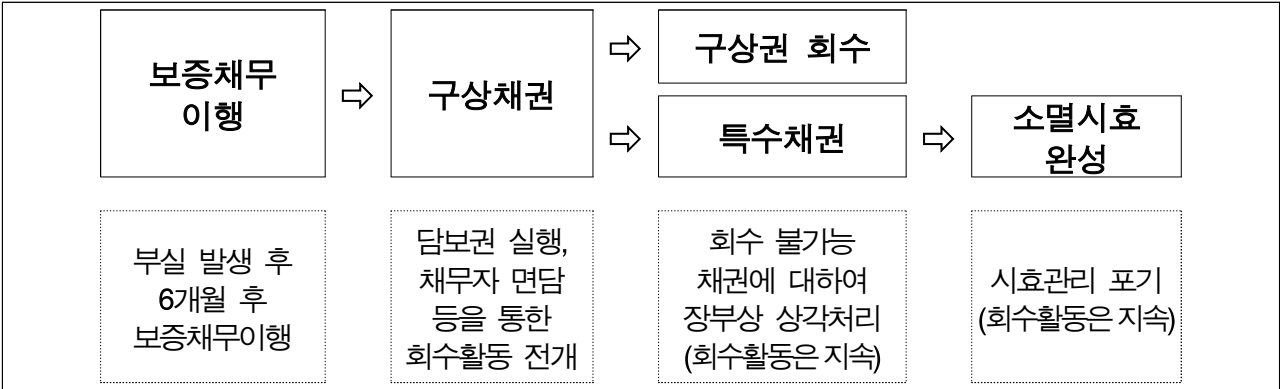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구상권 회수 기반 구축 및 기본재산 확충

4)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5) 사업 집행절차



6)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4	68	74	72	65	
2025~2029		68	74	85	89	93

7)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8)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 수준의 구상권관리비 계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상채권 회수를 통해 기본재산 확충에 기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8	-	78	-	78	-	-	-	-	78
2023	83	-	83	-	83	-	-	-	-	83
2024	76	-	76	-	76	-	-	-	-	76
2025	68	-	68	-	68	13	19.0	19.0	-	5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불용사유 : 부실처리 및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미발생
2023	·불용사유 : 부실처리 및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미발생
2024	·불용사유 : 부실처리 및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미발생
2025	·불용사유 : 부실처리 및 인프라보증 대위변제가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55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2) 인프라보증대위변제(2032-6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신용보증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680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인프라보증대위변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	13,583	13,583	15,613	15,613	2,030	1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이행함으로써 공적보증기관의 역할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8조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가 관련 대출채무 또는 채권의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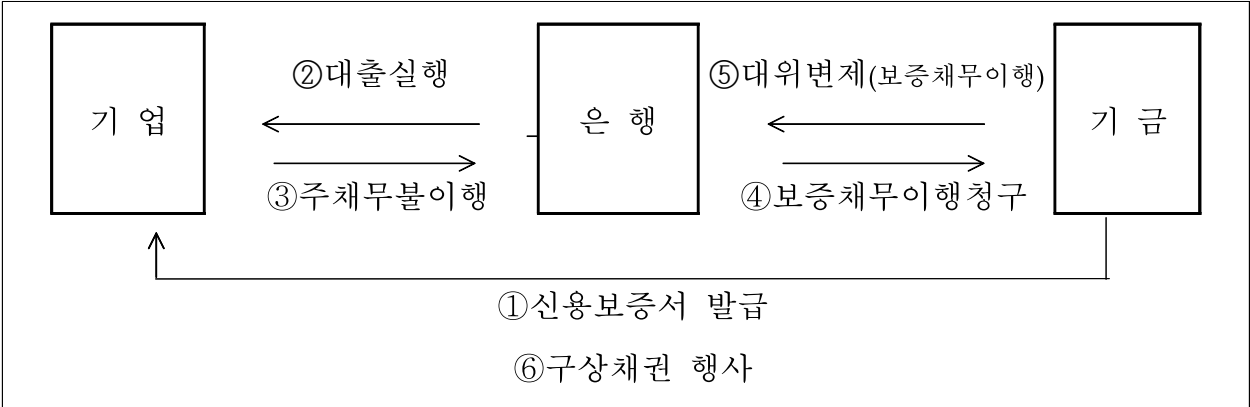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3.16	-			
	달성도	100.5	115.4	130.8	105.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금융기관 등 채권기관의 신용보증에 의한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하여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리스크 증가에 따른 적절한 보증위험을 반영한 대위변제비의 계상으로 적시성있는 변제자금을 확보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4) 사업 집행절차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081	13,583	13,641	13,340	12,932	
2025~2029		13,583	15,613	17,944	18,829	19,714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절한 보증위험을 반영한 대위변제비를 계상하여 적시성 있는 변제자금 확보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4,785	△6	14,779	-	14,779	-	-	-	-	14,779
2023	15,394	-	15,394	-	15,394	-	-	-	-	15,394
2024	14,081	△320	13,761	-	13,761	-	-	-	-	13,761
2025	13,583	-	13,583		13,583	1,823	13.4	13.4	-	11,76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불용사유 :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계획변경 내역 : (1) '22.12월 : 14,785백만원 ⇨ 14,779백만원(△6백만원) - 변경사유 : 면허료및수수료환급 부족분 6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3	·불용사유 : 인프라보증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2024	·불용사유 : 인프라보증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계획변경 내역 : (1) '24.8.8. : 14,081백만원 ⇨ 13,761백만원(△320백만원) - 변경사유 : 면허료및수수료환급 부족분 320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5	· 불용사유 : 인프라보증 대위변제가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11,760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3)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2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신용보증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3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	604	397	397	516	516	119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용보증서 발급시 징수한 보증료수입 중 보증기한 전 대출금 상환에 따라 보증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 수입금을 환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지원 근거

- 산업기반신용보증료기준 제13조

제13조(보증료환급) 보증료를 환급할 경우의 환급보증료율은 해당 보증 건에 대한 보증료 수납 시에 적용한 보증료율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

1. 보증서를 발급한 후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수납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
2. 보증서 발급일과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일이 다른 경우: 신용보증관계 성립일까지의 수납 보증료를 환급. 다만,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은 제외한다
3.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된 경우: 소멸일 다음 날 이후부터의 보증료를 환급
4. 정부의 손실보전대책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료를 환급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인프라보증 만기일 이전에 신용보증이 해지되어 기금의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선취한 보증료 중 보증해지일 이후 분을 민자사업자에게 환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3.16	-			
	달성도	100.5	115.4	130.8	105.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프라 보증부대출의 조기상환에 대비하여 적시성 있는 환급자금을 확보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및 신용보증약정서 등 계약사항의 이행에 따른 공신력 확보

4) 사업 집행절차

보증료징수	… 신용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보증료 수납
↓	
신용보증해지	… 주채무상환기일 이전에 신용보증부 주채무 해지
↓	
보증해지통지서 접수	… 채권기관으로부터 주채무해지 통지서 접수
↓	
보증해지 및 보증료환급	… 보증해지 익일부터 보증기일까지 선취한 보증료 환급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07	397	438	454	425	
2025~2029		397	516	569	624	654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절한 보증상환을 반영한 보증료환급액을 지속적으로 계상하여 적시성 있는 환급자금 확보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30	6	436	-	436	436	99.9	99.9	-	-
2023	430	-	430	-	430	389	90.5	90.5	-	41
2024	407	320	727	-	727	604	83.1	83.1	-	123
2025	397	-	397	-	397	227	57.2	57.2	-	17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내역 : (1) '22.12월 : 430백만원 ⇨ 436백만원(+6백만원) - 변경사유 : 면허료및수수료환급 부족분 6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3	· 불용사유 : 만기 전 보증해지가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41백만원 불용
2024	· 불용사유 : 만기 전 보증해지가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123백만원 불용 · 계획변경 내역 : (1) '24.8.8. : 407백만원 ⇨ 727백만원(+320백만원) - 변경사유 : 면허료및수수료환급 부족분 320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5	· 불용사유 : 만기 전 보증해지가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170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4) 맞춤형컨설팅(20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신용보증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4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맞춤형컨설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맞춤형컨설팅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맞춤형컨설팅	-	300	300	409	409	109	3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자사업 사업 시행자 및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민자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민자사업 활성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7조

제38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 중소기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24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존치평가지 '금융자문'에 대한 역할 확대와 보증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추진계획 수립 요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5.1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민자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3.16	-			
	달성도	100.5	115.4	130.8	105.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자사업 시장참여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활성화 추진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공공성 역할 강화

4) 사업 집행절차

구 분	주요 내용
I. 대상기업 선정	■ 맞춤형 컨설팅 희망 기업 선정
II.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사업 현장조사
IV. 컨설팅 실시	■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조사서 작성
IV. 컨설팅 결과 제출	■ 컨설팅 결과 제출 및 설문조사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300	409	409	409	409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민자사업 시장참여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활성화 추진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공공성 역할 강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300	-	300	-	300	277	92.2	92.2	-	2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5.11.11.)	맞춤형컨설팅	맞춤형컨설팅 (2032-304)	일반용역비 (210-14)	5	일반용역비 부족 해소
	맞춤형컨설팅	맞춤형컨설팅 (2032-304)	일반수용비 (210-01)	△5	일반용역비 부족 해소
합 계				-	

사 업 명						
(5) BTL 특별인프라펀드(2032-4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신용보증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461
명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BTL 특별인프라펀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BTL 특별 인프라펀드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 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BTL 특별인프라펀드	-	-	-	50,000	50,000	50,00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BTL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예정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민자사업 투자 수요기관 감소로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은 출자 자금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민자사업 추진 지연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6.1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BTL 특별 인프라펀드	출자	산은인프라 자산운용	50,000백만원	50%	-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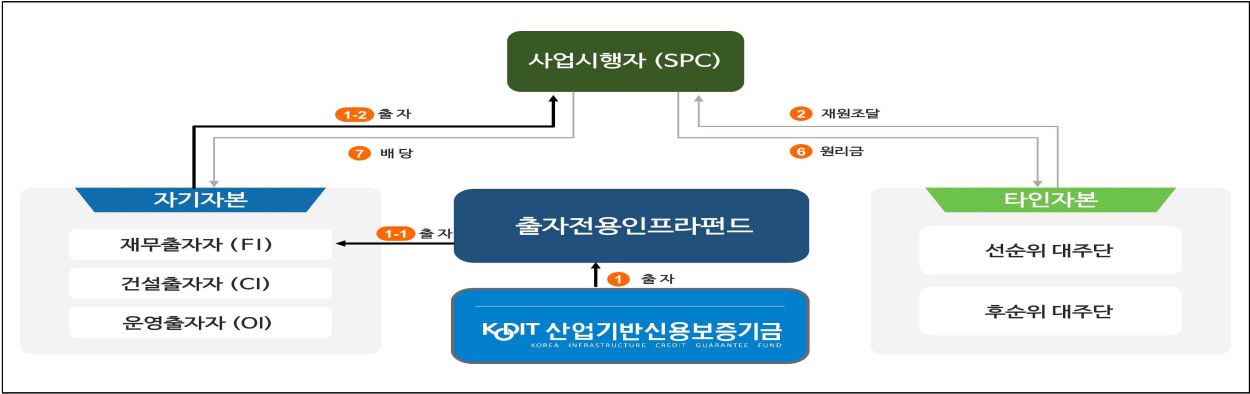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3.16	-			
	달성도	100.5	115.4	130.8	105.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인프라펀드 설립·운용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 및 타 투자자의 시장 참여 유인 확보

4) 사업 집행절차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500	-	-	-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여 BTL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에 기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6) 인건비(2176-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신용보증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76	1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건비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인건비	2,359	2,577	2,577	3,045	3,045	468	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 관리기관 직원에 대한 보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3호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기금 관리직원에 대한 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운용

4)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383	2,577	2,528	2,604	2,682	
2025~2029		2,577	3,045	3,136	3,230	3,327

5)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6)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업무생산성 향상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인건비 증가 최소화

사 업 명						
(7) 기본경비(21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신용보증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76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	1,066	1,120	1,120	1,120	1,071	△49	△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3호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일용임금,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업무용자산취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4) 사업효과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지출

5)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20	1,120	1,120	1,120	1,120	
2025~2029		1,120	1,071	1,071	1,071	1,071

6)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7)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효율적 예산절감 노력으로 경비 증가 최소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99	-	1,199	-	1,199	1,150	95.9	95.9	-	49
2023	1,159	-	1,159	-	1,159	1,091	94.1	94.1	-	68
2024	1,120	-	1,120	-	1,120	1,066	96.9	96.9	-	34
2025	1,120	-	1,120	-	1,120	1,090	97.3	97.3	-	3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 기본경비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49백만원 불용 · 계획변경 내역 : (1) '22.6.21. : 일반연구비 +20백만원, 일반수용비 △10백만원, 국내여비 △10백만원 - 변경사유 : 일반연구비 부족분 20백만원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내 조정
2023	· 불용사유 : 기본경비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68백만원 불용
2024	· 불용사유 : 기본경비 계획 대비 적게 발생하여 34백만원 불용 · 계획변경 내역 : (1) '24.10.22. : 일반용역비 +30백만원, 일반수용비 △30백만원 - 변경사유 : 일반용역비 부족분 30백만원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내 조정 (2) '24.12.17. : 국외업무여비 2.7백만원, 국내여비 △2.7백만원 - 변경사유 :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2.7백만원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내 조정 (3) '24.12.30. : 선급법인세 20백만원, 기본경비(공공요금및제세) △20백만원 - 변경사유 : 선급법인세 부족분 20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5	· 계획변경 내역 : (1) '25.7.15. : 일반용역비 +20백만원, 일반수용비 △20백만원 - 변경사유 : 일반용역비 부족분 20백만원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내 조정 (2) '25.11.11. : 일반수용비 내 연수비 △3백만원, 수수료 +3백만원 - 변경사유 : 일반수용비 내 부족분 3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목 내 조정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5.7.15.)	기본경비	기본경비 (2176-201)	일반수용비 (210-01)	△20	일반용역비 부족 해소
	기본경비	기본경비 (2176-201)	일반용역비 (210-14)	20	일반용역비 부족 해소
자체변경 (‘25.11.11.)	기본경비	기본경비 (2176-201)	일반수용비 (210-01)	-	일반수용비(수수료) 부족 해소 (연수비 △3, 수수료 +3)
합 계				-	

사 업 명						
(8) 선급법인세(2176-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신용보증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76	202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선급법인세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선급법인세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선급법인세	14,854	5,154	15,594	4,901	4,901	△253	△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증료 및 여유자금운용 등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의무적 지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3호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법인세법에 의해 보증료 및 여유자금운용 수입 등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대상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의무적 지출)

4)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190	5,154	5,154	5,154	5,154	
2025~2029		5,154	4,901	4,901	4,901	4,901

5)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6)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법인세법에 의한 의무적 지출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381	-	7,381	-	7,381	5,626	76.2	76.2	-	1,755
2023	6,991	-	6,991	-	6,991	1,750	25.0	25.0	-	5,241
2024	6,190	8,665	14,855	-	14,855	14,854	99.9	99.9	-	1
2025	5,154	10,440	15,594	-	15,594	15,497	99.4	99.4	-	9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2024	· 계획변경 내역 : (1) ‘24.10.22. : 선급법인세 +8,645백만원, 통화금융기관예치 △8,645백만원 - 변경사유 : 선급법인세 부족분 8,645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 ‘24.12.30. : 선급법인세 +20백만원, 기본경비 △20백만원 - 변경사유 : 선급법인세 부족분 20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5	· 계획변경 내역 : (1) ‘25.5.1. : 선급법인세 +10,440백만원, 통화금융기관예치 △10,440백만원 - 변경사유 : 선급법인세 부족분 10,440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협의변경 (‘25.5.1.)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세 (2176-202)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10,440	선급법인세 부족분 해소
	통화금융 기관예치	통화금융 기관예치 (9701-971)	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03)	△10,440	선급법인세 부족분 해소
합 계				-	

사 업 명
(9) 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20	126
명칭	신용보증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화금융 기관예치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 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통화금융 기관예치	218,600	210,444	200,004	189,229	189,229	△21,215	△1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여유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기본재산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3호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CD 및 기타예치금 등에 운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 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유동성,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 여유자금운용을 통해 기금의 수익성 제고

4)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03,499	210,444	339,491	360,950	271,589	
2025~2029		210,444	189,229	190,994	205,647	220,940

5)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6)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효율적 여유자금운용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30,688	-	430,688	-	430,688	300,200	69.7	69.7	-	130,488
2023	470,782	-	470,782	-	470,782	128,800	27.4	27.4	-	341,982
2024	303,499	△8,645	294,854	-	294,854	218,600	74.1	74.1	-	76,254
2025	210,444	△10,440	200,004	-	200,004	166,000	83.0	83.0	-	34,00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2024	· 계획변경 내역 : (1) '24.10.22. : 선급법인세 +8,645백만원, 통화금융기관예치 △8,645백만원 - 변경사유 : 선급법인세 부족분 8,645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2025	· 계획변경 내역 : (1) '25.5.1. : 선급법인세 +10,440백만원, 통화금융기관예치 △10,440백만원 - 변경사유 : 선급법인세 부족분 10,440백만원 확보를 위해 세부사업 간 조정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협의변경 (‘25.5.1.)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세 (2176-202)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10,440	선급법인세 부족분 해소
	통화금융 기관예치	통화금융 기관예치 (9701-971)	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03)	△10,440	선급법인세 부족분 해소
합 계				-	

사 업 명
(10)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120	126
명칭	신용보증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소관부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 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552,432	468,261	468,261	544,988	511,429	43,168	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여유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기본재산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3호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 추진경위

- '94.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5월부터 계속
- 사업내용 : 여유자금의 연기금 투자폴 예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단위: 조원, %)	목표	2.30	2.30	2.40	3.00	3.00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224조원) 대비 34% 증가한 수준의 목표 설정	해당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액 확인
	실적	2.31	2.65	3.14	3.16	-			
	달성도	100.5	115.4	130.8	105.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구상권 회수 기반 구축 및 기본재산 확충

4)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85,510	468,261	535,479	565,781	596,035	
2025~2029		468,261	511,429	578,966	585,715	565,577

5)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6)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효율적 여유자금운용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34,854	-	234,854	-	234,854	892,203	379.9	379.9	-	-
2023	272,975	-	272,975	-	272,975	489,830	179.4	179.4	-	-
2024	485,510	-	485,510	-	485,510	552,432	113.8	113.8	-	-
2025	468,261	-	468,261		468,261	402,887	86.0	86.0	-	65,37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